

월간
재정포럼

2022. November_Vol.317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1

권두칼럼

국민이 체감하는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발전 제언 | 김형환

현안분석

불평등지수 활용 시 유의점 및 개선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의 재분배 효과 추정 예시 | 김정환

정보교환의 차단이 부당행위 방지에 미치는 영향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 배진수

특집

2022년 노벨경제학상: 금융위기와 은행의 역할에 대한 연구 | 김평식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국세청, 2023년도 인플레이션 조정안 발표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국민이 체감하는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발전 제언 | 김형환 02

현안분석

불평등지수 활용 시 유의점 및 개선점 08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의 재분배 효과 추정 예시 | 김정환

정보교환의 차단이 부당행위 방지에 미치는 영향 34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 배진수

특집

2022년 노벨경제학상 58

: 금융위기와 은행의 역할에 대한 연구 | 김평식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국세청, 2023년도 인플레이션 조정안 발표 외 76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발전 제언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청은 1966년 개청한 이후 현재까지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22년 7월 22일 개최된 현 국세청장의 첫 관서장 회의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필자는 2018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하면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기본 신념을 밝힌 바 있다. 국세행정의 변화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거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국세행정의 발전방안을, ‘밝은 세정’, ‘소통하는 세정’,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세정’,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세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해보고자 한다.

밝은 세정으로

국세행정이 바뀌려면 사람의 인식도,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국세청이 권위적이고 비밀스럽다는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종전에는 공개하지 않던 훈령도 공개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훈령은 법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세청 스스로 일부 밝은 세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보다 과감히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쌓아온 국세청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현재 국세행정의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납세순응도를 계량화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면서 잘 된 점, 부족한 점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받는 방법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 예규 등이 나오면 과세관청은 유리한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불리한 것도 내부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지만, 더 나

아가 국민들도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국세청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보다 많이 국민들에게 밝히고 알려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AI를 활용하여 몇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세청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밝히는 방안이라 할 수도 있다.

소통하는 세정으로

과세관청인 국세청과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이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발전된 미래의 국세행정이 가능할 것이다.

국세청 하면 세무조사를 흔히 떠올린다. 필자도 세무조사의 현장에서 실무자와 관리자로서 일한 바 있지만, 국세청의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라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아무리 친절하게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결과가 위법하다면 납세자가 이러한 국세청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세행정의 기본은 과세해야 할 것은 확실히 과세하고, 대신에 과세되지 않아야 할 것은 사전에 제대로 검토해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 불복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사전 소통 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 준수, 범위 확대, 법령상 절차 등을 최근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위법 및 부당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민원에 대해 절차 진행을 제대로 안내해 주고, 납세자보호위원회나 조사담당부서 자체 내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세행정에 대해 납세자의 오해가 있다면 이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여 풀어나가야 하고, 납세자가 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무공무원의 개인적인 잘못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 • • • •
보다 발전된 미래지향적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과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이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다.

.....
납세자에게 성실을
요구하는 현재의
과세행정을 벗어나
국세청이 보유 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돕는 등
납세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과세행정이
필요하다.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세정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를 성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현재는 납세자에게 여러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과세관청 위주의 납세성실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벗어나 납세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과세행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해주는 것과 세무 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관계 정립은 필요하다.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할 부분, 민간의 영역에 남겨둘 부분 등을 구별해서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해나가야 한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무조사 시기나 장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무조사는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건에 따라 조기에 세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자발적 세무조사에 대해 여러 인센티브를 주어 세무조사를 징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 요즘엔 입사 면접을 보러 가면 해당 회사에서 면접 대상자에게 교통비를 주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무조사를 미리 받아볼 만하다고 생각할 만큼 파격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성실한 납세자가 자신이 몰라서 못 지키는 과세 부분에 대해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세정으로

과세관청은 세금을 걷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미래 세정, 감동 세정이다.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다가 코로나19의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때 신고연장, 징수유예 이외에도 납세실적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예로 대출을 받을 때 납세실적과 연계하여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납세실적을 신용도에 적극 반영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또한 국세행정에서 연

부연납 등을 할 때 납세담보를 요구하는데, 종전에 성실하게 세금을 냈던 납세자라면 이 부분을 적극 면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납세포인트가 이러한 역할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낮은 것을 보면 보다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동안의 납세실적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 구축으로 이러한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끝이 아닌 세금을 내었더니 자신의 자산에 대한 상태까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과세행정의 또 다른 진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과세관청이 현재 진행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변화당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세청이 지금보다 더 변화해야 할 때이다. 



과세관청은 세금을 걷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미래 세정이자 감동 세정이다.



| 현안분석 |

■ 불평등지수 활용 시 유의점 및 개선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의 재분배 효과 추정 예시

김정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보교환의 차단이 부당행위 방지에 미치는 영향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배진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불평등지수 활용 시 유의점 및 개선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의 재분배 효과 추정 예시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hkim30@kipf.re.kr)

I. 서론: 불평등지수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가치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학이나 철학적 연구 중에는 그 기저에 ‘차별’이 암시되는 불평등에 관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중립적 의미로서 ‘다름’이라는 뜻을 지닌 용어로 활용됨을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밝힌다.¹⁾ 모든 개개인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평등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거쳐도 부의 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아쉬워하거나, 낙담하거나, 또는 불행한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²⁾ 불평등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야기하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지양하고 싶은 현상이기도 하다.

위에서 설명한 개인적 다양성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도 ‘차별’과 같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요인들로 야기되는 불평등도 존재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인문·사회학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특정 종류의 불평등은 용인하며 다른 종류의 불평등은 지양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다다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길어질 수도 있고 어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많은 가치관의 옳고 그름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극단적으로 항상 옳은 가치관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 최준욱, 『세대간·세대내 불평등과 재분배』, 연구보고서 18-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 22. 기본 개념과 관련 기본 연구에서 가치중립적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논의
2) 흔히 질투와 같은 감정이 여기에 포함되며 경제 모형에서 Envy, Jealousy를 효용함수에 포함하여 불평등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검증되지 못한 용인과 지양 사이의 불평등이 미래에는 지양해야 할 불평등의 속성을 가진 것이라면, 불평등의 정도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불평등 정도가 특정 이상으로 심화된 다음에는 돌이키기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불평등의 정도를 특정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렇게 개발된 지수를 불평등지수라고 부른다.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지수를 개발하여 부와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불평등지수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불평등지수라는 통계량은 표본의 극단적인 분위(Extreme Quantile) 값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어떤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불평등지수로 분석하려고 할 때, 만약 표본의 극단적인 분위 값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재분배 효과 추정값의 통계적 유효성은 신뢰하기 힘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한 불평등지수 통계량을 소개하며, 분석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몇 가지 불평등지수와 그들의 통계적 성질을 소개하고, 제Ⅲ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 설명, 제Ⅳ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불평등지수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에 적용한 예를 들어 불평등지수의 변화를 추정하며, 제Ⅴ장에서는 앞의 유의점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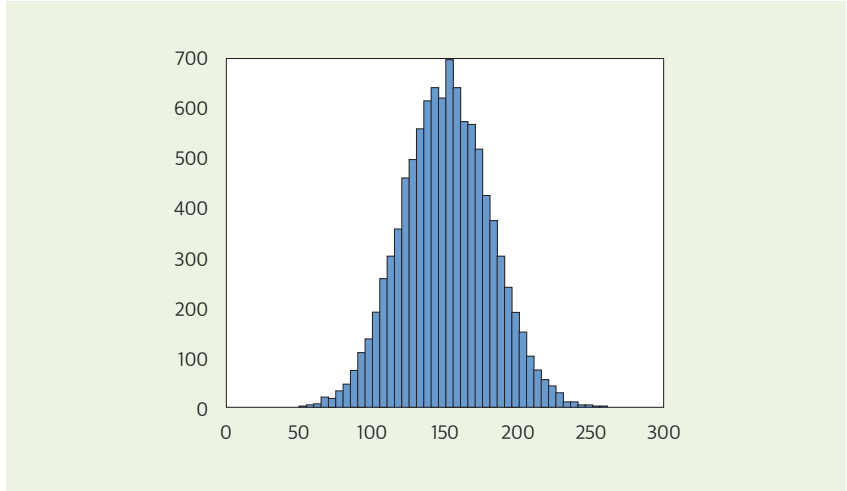
Ⅱ. 불평등지수 소개 및 통계적 성질

한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150만원, 표준편차가 3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림 1]은 저자가 임의로 가정한 소득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히스토그램을 관찰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불평등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는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 명확하게 비교할 기준이 없으며, 어떤 기준으로 불평등을 정의해야 지양해야 할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본고에서는
통계적 유의점을 보완한
불평등지수를 통해
분석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로렌츠에 따르면
 소득에 따라
 줄을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소득 이하의
 노동자들이 보유한
 소득과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소득의 비율로
 불평등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 임의의 소득분포 시뮬레이션 $N(150,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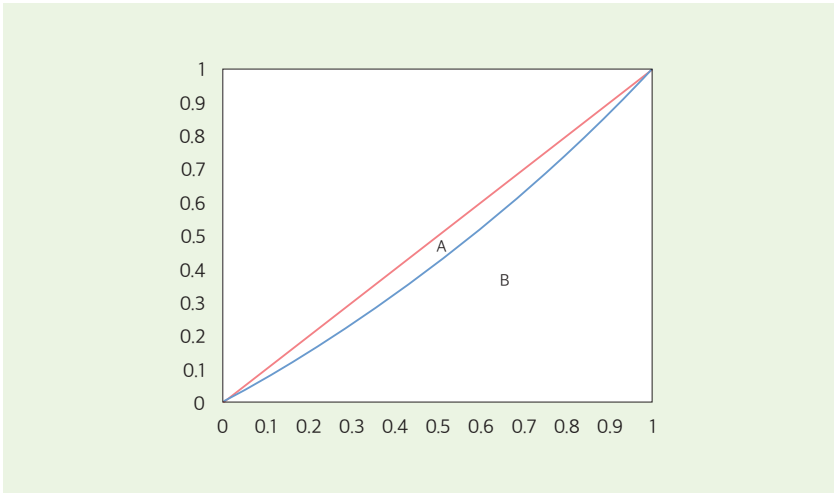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있을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렌츠(Lorenz, 1905)는 불평등을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들까지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소득 이하의 노동자들이 보유한 소득과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소득의 비율로 그 불평등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분석의 예를 들면, ‘상위 20%의 부유한 노동자들이 전체 사회소득의 80%를 가지고 있다’ 혹은 ‘하위 10%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전체 사회 소득의 1%도 가지지 못한다’와 같은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림 1]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림 2]의 x 축은 가계를 소득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일렬로 나열해 둔 상태이다. y 축은 각 가계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누적 합을 나타낸다. [그림 2]의 45도 직선³⁾인 붉은색 선은 모든 가계가 동일한 소득을 가진 상태로 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2]의 45도 직선 아래의 푸른색 곡선이 [그림 1]의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낸다. 분포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푸른색 곡선의 x 축의 값이 약 0.5인 부분의 y 축 값은 0.4 정도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 중 절반 아래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가진 소득의 합은 전체 노동자들의 소득의 합의 약 40%라는 의미이다. 푸른색 곡선은 로렌츠 곡선이라 불리며, 정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곡선이 45도 붉은색 직선과 멀어질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

3) 완전균등선이라고도 한다.

[그림 2] [그림 1] 소득분포의 로렌츠 곡선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의 푸른색 곡선(로렌츠 곡선)이 45도 붉은색 직선과 멀어질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로렌츠 곡선을 활용하여 불평등지수 중 가장 유명한 지니계수를 정의할 수 있다.

하다. 로렌츠 곡선을 활용하여 불평등지수 중 가장 유명한 지니계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두 가지 구분된 영역을 표시하였다. 45도 붉은색 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 부분의 면적을 A 라고 정의하자. 그리고 로렌츠 곡선과 x 축 사이 부분의 면적을 B 라고 정의하자. 경제학자 지니(Gini, 1912)는 불평등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지니계수라 명명하였다. 지니계수는 45도 붉은색 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 부분의 면적인 A 와, 45도 붉은색 직선과 x 축 사이 면적인 $A + B$ 의 비율을 의미한다. 식으로는 $\frac{A}{A+B}$ 로 정의하고, 그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 이후 통계학과 경제학이 발전함에 따라 지니계수 이외에도 다른 불평등지수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불평등지수들은 모두 데이터에서 얻어지는 통계량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불평등지수들을 통계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후의 논의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소득을 확률변수 X 라고 정의하고 그 누적확률밀도함수를 $F(\cdot)$ 라고 가정하자. 로렌츠 곡선을 이와 같은 기호를 활용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식 (1)의 로렌츠 곡선(L)의 수학적 정의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정의하면 식 (2)와 같다. 지니계수 외에 다른 불평등지수로는 Mean Log Deviation, Theil 지수, Coefficient of Variation 등이 있다.

$$L(F(x)) = \frac{1}{\mu} \int_0^x y dF(y) \tag{1}$$

여기서 μ 는 소득의 평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로렌츠 곡선(L)의 수학적 정의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⁴⁾

$$G = 1 - 2 \int_0^1 L(y) dy \tag{2}$$

지니계수 외에도 다른 불평등지수로는 Mean Log Deviation(=MLD), Theil 지수, 그리고 Coefficient of Variation(=CV) 등이 있다. 위의 세 가지 불평등지수는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⁵⁾라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α 가 0과 1이 아닐 때는

$$GE(\alpha) = \frac{1}{N\alpha(\alpha-1)} \sum_{i=1}^N \left[\left(\frac{X_i}{\bar{X}} \right)^\alpha - 1 \right] \tag{3}$$

α 가 0 또는 1이라면,

$$GE(0) = -\frac{1}{N} \sum_{i=1}^N \ln \frac{X_i}{\bar{X}}$$

$$GE(1) = \frac{1}{N} \sum_{i=1}^N \frac{X_i}{\bar{X}} \ln \frac{X_i}{\bar{X}} \tag{4}$$

식 (4)의 $GE(0)$ 는 MLD를, $GE(1)$ 은 Theil 지수를 나타내고, 식 (3)을 이용하여 $GE(2)$ 를 도출하여 이를 CV라고 정의한다. 일반화된 엔트로피를 위에서 소개한 확률변수(X) 및 누적확률함수(F) 기호를 활용하여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4) 식 (1)과 식 (2)는 Davidson(2009)의 식 (1), (2)와 동일하다.

5) AF Shorrocks(1980)

$$GE(\alpha) = \int \frac{1}{\alpha(\alpha-1)} \left[\left(\frac{y}{\mu} \right)^\alpha - 1 \right] dF(y), \quad \alpha \neq 0, 1$$

$$GE(0) = - \int \log\left(\frac{y}{\mu}\right) dF(y)$$

$$GE(1) = \int \frac{y}{\mu} \log\left(\frac{y}{\mu}\right) dF(y)$$

앞서 소개한 네 가지 불평등지수는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불평등지수들이며, 모두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이들이 가지는 통계적인 성질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불평등지수의 통계적 성질을 잘 분석한 연구 중 하나로 Cowell and Victoria-Feser(1996)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위의 불평등지수들이 Decomposability(분해성)⁶⁾라는 성질을 만족한다고 주장하였다. 뒤에서 밝히겠지만, 이 성질을 만족하는 불평등지수들에 한하여 개선된 불평등지수를 만들어낸 것이 이 연구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성질의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떤 불평등지수 $I(F)$ 가 Decomposability를 만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I(F) = \psi(\nu(F, \mu(F)), \mu(F)) \tag{5}$$

여기서 $\nu(F, \mu) = \int \phi(x; \mu) dF(x)$ 그리고 ϕ, ψ 는 각각 $R^2 \rightarrow R$ 함수이며 ψ 는 첫 번째 인수(argument)에 대해서 단조 증가하는 함수이다. 이후의 또 다른 연구인 Cowell and Flachaire(2007)에서 위의 Decomposability 성질을 만족하는 불평등지수들의 극단적인 분위의 데이터 값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보여주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론적인 논의는 Hampel(1974)의 연구에서 시작된 영향 함수(Influence function)를 활용하였다. 영향 함수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불평등지수를 주어진 소득분포 데이

앞서 소개한 네 가지 불평등지수는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불평등지수들이며, 모두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6) 일반화된 엔트로피 외에도 이 성질을 만족하는 지수들에는 Gibrat (1931)의 로그 소득의 분산, Hirschman(1945)의 Hirschman's index, Atkinson(1970)의 Atkinson's index, Kolm (1976)의 Kolm's index 등이 있다. 앞의 지니계수는 이 성질을 만족하지는 않는다.

기존 데이터 부분과
오염된 데이터 부분,
혹은 데이터 값이 변하는
부분의 혼합 분포를
정의하면 식 (6)과 같다.

터에서 계산한다고 가정할 때, 데이터 일부분의 값이 변한다면, 불평등지수의 값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계산하여 보여줄 수 있는 이론적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통계량에 데이터 오염(Data contamination)이 일어났을 경우의 강건성을 분석한다고도 한다. 기존 데이터 부분과 오염된 데이터 부분, 혹은 데이터 값이 변하는 부분의 혼합 분포(Mixture distribution)를 식 (6)과 같이 정의한다.

$$G_\epsilon = (1 - \epsilon)F + \epsilon H \tag{6}$$

여기서 $H(y) = 1(y \geq z)$ 으로 정의하고, z 를 데이터 오염이 일어난 값이라고 해석한다. 이때 불평등지수 $I(F)$ 의 영향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F(x) = \lim_{\epsilon \rightarrow 0} \frac{I((1 - \epsilon)F + \epsilon H) - I(F)}{\epsilon} \tag{7}$$

위의 식 (7)은 Gateaux 미분(differentiability)이라고 불리며, 연쇄 법칙(Chain rule)을 만족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분자는 데이터의 분포 중 ϵ 만큼의 비율이 기존 소득분포인 F 에서 오지 않고 H 라는 새로운 분포에서 온다고 가정할 때의 변화량을 의미하며, 분모를 함께 고려하여 불평등지수의 순간변화율을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식 (5)에서 정의된 ψ 를 두 함수 ν, μ 에 대하여 Gateaux 미분(differentiability) 연쇄 법칙을 활용하여 영향 함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IF(z; I, F) = \left. \frac{\partial \psi}{\partial \nu_{G_\epsilon}} \frac{\partial \nu_{G_\epsilon}}{\partial \epsilon} \right|_{\epsilon=0} + \left. \frac{\partial \psi}{\partial \mu_{G_\epsilon}} \frac{\partial \mu_{G_\epsilon}}{\partial \epsilon} \right|_{\epsilon=0} \tag{8}$$

식 (5)의 μ, ν 의 정의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된다.

$$IF(z; I, F) = \frac{\partial \psi}{\partial \nu_F} (\phi(z) - \nu_F) + \frac{\partial \psi}{\partial \mu_F} (z - \mu_F) \tag{9}$$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위에서 네 가지의 불평등지수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불평등지수들의 공통적인 성질로 Decomposability라는 것을 소개하였으며, 그 성질을 만족하는 불평등지수들은 위의 식 (9)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식 (9)는 불평등지수의 영향 함수를 나타낸 것으로 z 라는 특정 데이터 오염 값, 혹은 특정 데이터 값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좋은 통계량이 가지는 성질 중에 일치성(Consistency)이라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을 만족하려면 수학적으로 Glivinko-Cantelli 법칙(Theorem)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그 가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영향 함수가 유계(Bounded) 함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 (9)에서 관측할 수 있듯이 영향 함수가 데이터 오염 값인 z 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 z 가 충분히 크거나, 작은 값을 가진다면, 불평등지수가 일치성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⁷⁾ 즉 데이터의 극단 분포 부분에서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지니계수는 Decomposability 성질을 만족하지 않지만 영향 함수를 분석하면 비슷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유사한 문제를 공유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III. 불평등지수 개선 대안

앞서 불평등지수가 왜 데이터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며, 특히 극단 값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위의 사실과 더불어 흥미로운 것은 경제학 연구에서 소득과 재산의 분포를 적절한 가정들을 활용하면 파레토 분포(Pareto distribution)를 가진다는 이론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⁸⁾ 소득이라는 확률 변수 X 가 파레토 분포를 가진다는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우측 꼬리(Right tail) 분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P(X > x) \sim x^{-\theta} \tag{10}$$

이 경우 확률누적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영향 함수가
데이터 오염 값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극단 분포
부분에서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7) 자세한 내용은 Cowell and Flachaire(2007)의 부록 부분을 참고

8) Wold and Whittle(1957), Gabaix(2009), Benhabib and Bisin(2018) 등을 참고

Cowell and
Flachaire(2007)는
기존의 불평등지수의
아이디어를 유지하되
경제학 이론에서 도출된
파레토 분포의 성질 또한
반영할 수 있는
준모수적 불평등지수
추정량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F(x) = 1 - (x/x_0)^{-\theta} \text{ 이 때 } x \geq x_0$$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파레토 분포는 정규분포보다 극단 값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분포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경제학 모형에서 도출한 결론인,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확률 변수는 극단 값 부분의 출몰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통계량으로서 불평등지수의 수학적 성질인 극단 값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작용하여 기존의 불평등지수가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Cowell and Flachaire(2007)의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 불평등지수의 아이디어를 유지하되 경제학 이론에서 도출된 파레토 분포의 성질 또한 반영할 수 있는 준모수적(Semiparametric) 불평등지수 추정량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모의실험의 결과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위의 방법을 활용할 때는 파레토 분포가 잘 정의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용 시 유의하여야 한다.

기존의 방법론은 불평등지수를 비모수적으로(Nonparametric) 추정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값에 민감하다. 새로 제시된 방법은 분포의 우측 꼬리 부분을 파레토 분포를 활용하여 모수화한 다음 준모수적 추정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우선 주어진 소득 데이터가 파레토 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경제학 이론 가정하에 파레토 분포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표본을 크기 순서로 나열한 다음, 전체 소득자 N 명 중에 적절한 고소득자인 $k \leq N$ 를 정한다. k 번째 고소득자보다 높은 소득을 수령하는 소득분포의 우측 꼬리 부분의 표본만을 활용하여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파레토 분포의 모수를 추정한다. 실제 수학 공식을 통해 추정치를 도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식을 활용한다.

$$H_{k,N} = \frac{1}{k} \sum_{i=0}^{k-1} \log X_{(N-i)} - \log X_{(N-k+1)}, \text{ 추정치는 } \hat{\theta} = \frac{1}{H_{k,N}}$$

다음 순서는 파레토 분포 부분의 모수를 추정하여 비모수적 추정을 활용한 기존의 불평등지수와 함께 활용하기 위해 가중 평균을 활용한다. 분포 우측 꼬리를 제외한 부분은 기존의 비모수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불평등지수를 구한 다음

$(1 - p_{tail})$ 의 가중치를 곱하고, 위의 모수적 방법론을 활용한 불평등지수는 파레토 분포를 활용하여 불평등지수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한 다음 p_{tail} 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불평등지수를 보정한다. 보정을 거치면 각 분포의 주요 성질을 나타내는 Moment 값들이 뒤에 따로 더해진 파레토 분포에서 비롯된 p_{tail} 부분과 함께 결합되어 값들이 보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u^* = \frac{1}{N} \sum_{i=1}^{N^*} X_{(i)} + p_{tail} \frac{\hat{\theta} x_0}{\hat{\theta} - 1}, \quad \nu_\alpha^* = \frac{1}{N} \sum_{i=1}^{N^*} X_{(i)}^\alpha + p_{tail} \frac{\hat{\theta} x_0^\alpha}{\hat{\theta} - \alpha}$$

여기서 $N^* = (1 - p_{tail})N$. 이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엔트로피, $GE(\alpha)$ 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GE^*(\alpha) = [\nu_\alpha^* / (\mu^*)^\alpha - 1] / (\alpha^2 - \alpha)$$

단 $\hat{\theta} \geq \alpha$ 일 때 파레토 분포가 잘 정의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위의 p_{tail} 값, k 값을 적절히 조절하여 이 조건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일반적인 엔트로피 지수와 유사하게 Theil 지수와 MLD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hat{\theta} \geq 1$ 를 만족하여야 한다.

$$GE^*(1) = \nu_1^* / \mu^* - \log \mu^*$$

$$GE^*(0) = \log \mu^* - \nu_0^*$$

$$\nu_1^* = \frac{1}{N} \sum_{i=1}^{N^*} X_{(i)} \log X_{(i)} + p_{tail} \frac{\hat{\theta} x_0}{\hat{\theta} - 1} \left[\log x_0 + \frac{1}{\hat{\theta} - 1} \right]$$

$$\nu_0^* = \frac{1}{N} \sum_{i=1}^{N^*} \log X_{(i)} + p_{tail} \left[\log x_0 + \frac{1}{\hat{\theta}} \right]$$

앞에서 소개한 보정된 불평등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k 와 p_{tail} 을 결정해야 하는데 실증연구자들을 위해 Davidson and Flachaire(2007)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하여 $k = N/10$, x_0 는 $N(1 - p_{tail})$ 번째 표본을 선택,

파레토 분포 부분의 모수를 추정하여 비모수적 추정을 활용한 기존의 불평등지수와 가중 평균을 함께 활용하여 불평등지수를 보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간단한 경제모형을 통해
불평등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다.

$p_{tail} = 0.04N^{-1/2}$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한다.

앞서 불평등지수가 어떤 잠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보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소개하고 보정된 불평등지수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아주 단순한 경제 모형을 활용한 예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분배 효과 추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해 보고자 한다.

IV. 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다. 저소득 계층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불평등지수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사실 불평등지수의 극적인 변화, 즉 재분배 효과를 관찰하기에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을 정책 목표로 하는 상황이 효과가 쉽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기존 불평등지수를 활용해도 보정된 불평등지수와 별 차이가 없이 강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유

<표 1>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¹⁾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주: 1) 2022년도는 46%로 변동

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0.

<표 2>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0.

의할 점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지금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간단한 경제모형을 통해 불평등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표 1>은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만약 가구원의 한 달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이는 생계급여 기준인 52만 7,158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으로 선정된다. 소득인정액의 산출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개념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를 소득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 경제 전반적인 변수와 지표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중위소득을 미리 예상하여 발표하며, 각 급여의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에 연동되어 결정되고 있다. <표 2>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중위소득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위소득은 가구의 크기에 따라 따로 관리한다.

8인 이상 가구는 가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보다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생계급여를 제외하면 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최소로 만족해야 할 선정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의료, 주거, 교육 급여는 다양한 각도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하여야 하며 각 분야에서 더 필요로 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조금 더 상세한 제도의 이해를 위해 주요 용어 및 산식들을 알아보자.

우선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알아보자.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현재 가진 소득과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조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합으로 나타난다.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을 이루고 있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 중 소득평가액은 실제 가구소득에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부분과 근로소득공제 부분을 제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현재 가진 소득과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조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의 합으로 나타난다.

- 9)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 공제
- 10) 상시근로자 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 소득
- 11) 농업소득 + 임업소득 + 어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12)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13) 사적이전소득 + 부양비 + 공적이전소득
- 1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재활보조금 +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 15)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 16)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소년소녀가장 부가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피부양보조금 + 양육보조금 + 놓여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 17)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한 부분을 의미한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부분은 평소에 세금납부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는 다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노동의욕 감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소득에 부양비 등의 항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가구원들이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음과 동시에 정부를 제외하고는 도움받을 곳이 없는 가구를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평가액에서 제하는 두 가지 중 하나인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아보면 장애, 질병, 양육, 국가유공 등의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지출비용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게 되어 있다. 다음의 계산식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소득평가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⁹⁾
- 실제소득 = 근로소득¹⁰⁾ + 사업소득¹¹⁾ + 재산소득¹²⁾ + 이전소득¹³⁾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요인으로 인한 금품¹⁴⁾ + 질병요인으로 인한 금품¹⁵⁾ +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¹⁶⁾ +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¹⁷⁾

앞서 소개한 소득평가액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하나 소개한다.

예시 1) 소득평가액 계산

- 어떤 가구의 근로소득이 2천만원, 사업소득이 500만원, 재산소득이 50만원, 이전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하자. 만약 이 가구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이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2,650만원(2,000+500+50+100)에서 근로소득공제((2,000+500)×(0.3))를 제외한 1,900만원이다.

앞에서 소득인정액의 첫 번째 부분인 소득평가액의 개념과 산출방법을 알아

보았다. 이제는 재산소득환산액의 개념과 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소득 환산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주거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각각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부분, 두 번째로 가계부채 총차감액 부분과 마지막으로 자동차 재산가액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재산소득환산 부분에 부채를 차감하고 자동차 재산가액은 그 자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하게 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식

$$\bullet \text{ 재산소득환산액} = \text{주거재산} \times \text{주거재산소득환산율} + \text{일반재산} \times \text{일반재산소득환산율} + \text{금융재산} \times \text{금융재산소득환산율} - \text{부채 총차감액} + \text{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소득환산액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주거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각각의 환산액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재산 산출에 있어 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재산에 대한 공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거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가 이루어질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유무이다. 만약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전체를 고려하고,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95%의 금액만 고려된다. 주거재산은 그 성격이 기본적인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주거재산 소득환산율은 타 소득환산율에 비해 낮게 산정된다. 또한 주거지역별로 주거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고가의 사치스러운 주택에 대하여 높은 재산 값을 산출하게 하였다. 만약 고가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특정 상한선까지의 금액은 주거재산으로 산정되지만, 그 외의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된다. <표 3>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주거재산 한도액을 보여준다.

재산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표 3>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단위: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2,000	9,000	5,200
의료급여	10,000	6,800	3,800

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0.

재산소득환산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재산에 대한 공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재산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거주지별로 정한 공제금액을 기본재산 공제제도라고 한다.

<표 4> 거주지별 기본재산(공제)액

(단위: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	4,200	3,500
의료급여	5,400	3,400	2,900

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0.

거주지별로 정한 공제금액을 기본재산 공제제도라고 한다. <표 4>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재산에서 공제되는 액수를 의미한다.

또한 금융재산 중 일부는 생활준비금 명목과 장기금융저축 명목으로 공제가 적용된다. 생활준비금이란 의료비, 관혼상제비 등을 의미하며 가구당 500만원을 공제하며, 장기금융저축은 최대 연간 500만원, 총한도는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위의 재산 공제제도는 순차적으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적용된다. 이는 부채가 존재할 경우 부채 차감 순서로도 적용된다. 그리고 자동차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 재산을 조사하여 공제제도와 부채 차감을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환산율을 각각 곱하고 더하여 최종 재산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소득환산율은 2020년 기준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 적용한다. 복잡한 산출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소개한다.

예시 2) 재산소득환산액

- 어떤 가구가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전세보증금이 1억 3천만원, 일반재산이 2천만원, 금융재산이 5천만원, 장기금융저축은 없으며, 부채가 1천만원, 자동차 차량가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가구의 재산소득환산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임대보증금 1억 3천만원 중 95%인 12,350만원이 주거용 재산한도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초과한 350만원은 일반재산에 더해진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재산 2천만원에 주거용 재산한도액 초과분 350만원을 더한 2,350만원으로 산출된다. 기본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공제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재산 한도액인 1억 2천만원에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을 제외한 5,100만원이 주거용 재산으로 재산출된다. 금융재산의 경우 5천만원에서 생활준비금 명목 500만원을 공제한 4,500만원으로 계산된다. 부채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차감 1순위인 주거용 재산에서 1천만원이 차감되어 주거용 재산이 4,100만원으로 계산된다. 자동차 차량가액 500만원은 그대로 더해진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재산소득환산액은 $\{(4,100\text{만원} \times 0.0104) + (2,350\text{만원} \times 0.0417) + (4,500\text{만원} \times 0.0626) + 500\text{만원} = 9,223,350\text{원}\}$ 이다.

<표 5>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종류	내용	비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근로능력: 2020년 기준 18세 이상(2002년생)부터 64세(1956년생)까지 1종 ¹⁾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주: 1)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병·부상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3급 이상 등에 해당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산출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 다음으로 많은 재정지출 비율을 차지하는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이를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빈곤층의 노동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잠재적 문제점이 존재하여 사회의 사중손실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제도 개편에서 중대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를 제외한 타 급여는 소득이 아닌 각각도의 빈곤 형태의 문제점을 가진 가구를 돕기 위해 활용된다. 해당 급여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으며 특히 의료, 주거, 교육 급여는 앞에서 소개한 중위소득에 연관된 수급 조건이 별도로 존재한다. <표 5>에 급여 종류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생계급여는 빈곤층의 노동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잠재적 문제점이 존재하여 사회의 사중손실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V.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불평등지수 적용 사례

1. 데이터, 가정 및 모형

앞서 서술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수많은 수급 특례가 존재하지만 현재

**본고의 분석 내용은
불평등지수의 민감도와
보정에 대한
실증적 응용에
목적이 있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추정에 다소 한계가
많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활용하는 데이터로 관찰이 불가능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셋에서 관찰 가능한 부분들만 최대한 반영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다음의 분석 내용은 불평등지수의 민감도와 보정에 대한 실증적 응용에 목적이 있기에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추정에 다소 한계가 많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의 2020년도 데이터로 관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가구는 대도시에 거주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차량의 경우 일반형으로 소유하여 생계형 소유는 없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생계형으로 소유할 경우에 자동차 자산의 공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산정할 때, 임대인 경우에는 1급지(서울)로 적용하였으며, 자가의 경우에는 3년에 1회 지급하는 경보수 금액인 457만원의 3분의 1을 적용하였다.

위의 가정들은 최소한의 미시적인 데이터 정보가 주어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한 가정이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어떤 가구가 수급하였는지에 대한 수급 자료가 부족하여 「2020년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 예산안 현황」(국회예산정책처, 2019) 자료를 참고하여 생계급여(4조 3천억원)와 의료급여(7조원)의 비율을 표본의 생계급여비의 총합에 곱한 다음, 표본의 의료급여 대상의 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 대상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였다.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데이터의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과 전체 인구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의 비율이 데이터에서 의료급여 수급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대상과 전체 인구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의 비율이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추가적인 가정을 적용하였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미시적인 데이터로 수급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급여와 유사한 가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20) 자료를 참고하여 생계급여(4조 3천억원)와 교육급여(1,016억원)의 비율을 표본의 생계급여비의 총합에 곱한 다음, 표본 중 교육지출이 있는 동시에 교육급여 대상을 만족하는 표본의 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 대상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였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본고에서는 우선 배제하였으며, 금리(= r)는 2020년 기준금리 0.5%를 가정하였다. 분석에 활용할 소득세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식 (11)의 Benabou(2002), Heathcote et al.(2017) 모형을 가정한다. 모수(λ, τ)는 실제소득에 누진세율을 가정하고 최소자승법으

로 추정하도록 한다.

$$\log D(y_i) = \log \lambda + (1 - \tau) \log y_i \quad \text{식 (11)}$$

여기서 y_i 는 소득, $D(y_i)$ 는 가처분소득, λ 는 평균적인 세금의 크기, τ 는 누진세를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소득세율을 구한 후에는 간단한 2기간 모형을 상정하여 각 가계 i 는 다음과 같은 최적화문제를 푼다고 가정한다.

$$\begin{aligned} & \max_{C_{i,1}, C_{i,2}} \log C_{i,1} + \beta \log C_{i,2} \\ & \text{subject to } C_{i,2} = (1 + r)(y_i - t(\phi_i) - C_{i,1} + \phi_i) + (y_i - t(\phi_i)) \end{aligned}$$

여기서 ϕ_i 는 기초수급지원액, y_i 는 경상소득, $t(\phi_i) = \pi \lambda y_i^{(1-\tau)}$, π 는 총 기초수급지원금액과 총 세금추정액의 비율로서 총 기초수급지원액과 총 세금추정액을 같게 만들어준다. 시간에 대한 할인율은 $\beta = 0.95$ 를 적용하였다. 만약 기초수급정책이 없다고 가정하면 각 가계 i 는 다음과 같은 최적화문제를 풀게 된다.

$$\begin{aligned} & \max_{C_{i,1}, C_{i,2}} \log C_{i,1} + \beta \log C_{i,2} \\ & \text{subject to } C_{i,2} = (1 + r)(y_i - C_{i,1}) + y_i \end{aligned}$$

기초수급정책 시행하의 1기 소비와 기초수급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시 1기 소비의 불평등지수 변화를 분석 시도하였다. 또한 불평등지수가 표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 데이터 오염 값을 추가하여 불평등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아래에서 분석 결과에 대해 표를 활용하여 소개하겠다.

2. 분석 결과

가. 데이터 기초통계량 vs 2020년 실제 현황

<표 6>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패널데이터의 기초통계량과 위의 가정을 활용하여 표본 중 잠재적으로 급여를 수급했을 가구의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대략 전체 표본 중 약 3.6%가 생계급여를 수급했음을 알 수 있다. 표본 중 잠재

식 (11)에서 y_i 는 소득,
 $D(y_i)$ 는 가처분소득,
 λ 는 평균적인
세금의 크기,
 τ 는 누진세를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불평등지수는
재분배 효과를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수치화한 지수로,
정책을 시행할 때나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할 때는 그 한계가
명확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표 6> 데이터 기초통계량

표본수(N)	평균 가구실제소득	평균 가구금융재산	생계급여 수급가구	의료급여 수급가구
18,064가구	5,494만원	7,284만원	646가구(3.58%)	1,691가구(9.36%)
주거급여 수급가구	교육급여 수급가구	생계급여 총금액	평균 가처분소득	추정세수
2,333가구(12.92%)	2,863가구(15.85%)	13억 4,710만원	4,482만원	8,091억원

주: 생계급여 총금액과 추정세수의 2020년 가구수(2,148만가구)비율로 보정하면 생계급여 총 금액보정액은 약 1조 6천억원, 추정세수 보정액은 약 965조원임

출처: 저자 작성

<표 7> 2020년 실제 현황

총가구수	생계급여 수급가구	의료급여 수급가구
약 2,148만가구	약 100만가구(4.1%)	약 109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교육급여 수급가구	2020년 세수
약 137만가구	약 21만가구	약 285조원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0.

적으로 지급된 생계급여 총금액은 약 13억 5천만원으로 도출되었다.

<표 7>은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생계급여 기준에 대한 자료 이외에는 추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와 통계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소비, 세금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통계량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분석은 이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불평등지수에 대한 논의와 실제 제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위의 가정들을 추가하였으며 아래에서 불평등지수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불평등지수를 활용한 분석에 앞서 해석의 유의점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불평등지수는 재분배 효과를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수치화한 지수로 정책을 시행할 때나,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할 때는 그 한계가 명확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정책 A와 B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두 정책의 시행으로 지니계수가 각각 0.02씩 변했다고 가정하자. A를 시행하였을 경우 지니계수는 0.3에서 0.28로 변하였고, B를 시행하였을 경우 지니계수는 0.28에서

0.26으로 변했다고 가정하자. 연구자에 따라서는 B정책의 효과가 더 큰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각 경제주체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는 관심이 없다. 다만 부와 재산, 소득 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만 나타낼 뿐이다. 정책 A와 B의 지니계수의 차이가 0.02로 같으므로 두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또한 지니계수의 정의가 수학적으로 복잡하기에 단순히 지니계수의 비율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재분배 효과로 보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만약 완벽하게 동일한 두 세계에 다른 정책을 시행하여 불평등지수의 차이를 본다면, 재분배 효과의 크기 비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정도를 분석,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음 분석을 해석할 때에는 위의 유의점을 염두에 두되 통계량이 어떤 변화를 가진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분석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나. 불평등지수별 변화: 제도를 시행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표 8>은 기존의 불평등지수의 정의를 활용하여 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확인한 내용이다. 제도를 시행하였을 경우의 불평등지수가 제도가 없을 때보다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OECD에 보고된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418에서 2020년 0.40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지니계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MLD, Theil 지표, CV의 경우에는 위에서 소개한 통계적 성질인 Decomposability를 만족하는 불평등지수로서 보정된 불평등지수를 따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뒤에서 데이터 오염에 따른 차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지니계수는 본 연구자가 아는 한 보정된 통계량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경제학자들이 풀어야 할 흥미로운 연구과제로 사료된다.

<표 8> 1기의 추정 소비 값의 불평등지수

불평등지수	지니계수	MLD(=GE(0))	Theil(=GE(1))	CV(=GE(2))
제도 시행 X	0.4445	0.3807	0.3450	0.5126
제도 시행 O	0.4394	0.3562	0.3366	0.5054

출처: 저자 작성

기존의 불평등지수의 정의를 활용하여 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확인한 결과, 제도를 시행하였을 경우의 불평등지수가 제도가 없을 때보다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에서 가장 낮은 소비를 한 표본을 제거하였을 경우 지니계수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한 표본을 제거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니계수가 많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불평등지수별 변화: 제도 시행 유무와 극단 표본 1개를 제거할 때
 다음으로는 데이터 오염에 대한 민감도를 살펴보자. <표 9>의 표본 중에 가장 낮은 소비를 한 표본을 제거하였을 경우 지니계수가 아주 미세하게 변함을 알 수 있다. 그와 비교하여 소비가 가장 많은 표본을 제거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니계수가 많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일반적인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불평등지수인 MLD, Theil, CV 모두 지니계수와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데이터 오염에 대한 실험을 설계하여 데이터 오염이 하나의 표본에서만 일어나되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 오염된 데이터의 값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실증데이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실험해 보았다.

<표 9> 표본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제거할 때 1기의 추정 소비 값의 불평등지수

불평등지수		지니계수	MLD(=GE(0))	Theil(=GE(1))	CV(=GE(2))
최솟값 제거	제도 X	0.4445	0.3790	0.3450	0.5125
	제도 O	0.4394	0.3558	0.3366	0.5054
최댓값 제거	제도 X	0.4433	0.3787	0.3396	0.4705
	제도 O	0.4382	0.3542	0.3312	0.4636

출처: 저자 작성

라. 불평등지수별 변화: 제도를 시행할 경우 데이터 오염 값이 분포의 우측 꼬리에 1개 존재하는 경우

<표 10>은 데이터의 최댓값을 표본에 추가한 경우와 최댓값에 표준편차만큼 더 큰 숫자를 표본에 추가한 경우 등을 실험한 결과이다. 오염된 데이터가 현재

<표 10> 표본의 최댓값과 표본 표준편차를 더한 데이터 오염 값이 존재할 때 불평등지수

불평등지수	지니계수	MLD(=GE(0))	Theil(=GE(1))	CV(=GE(2))
max	0.4406	0.3581	0.3420	0.5469
max+ σ	0.4406	0.3582	0.3422	0.5491
max+2 σ	0.4407	0.3582	0.3424	0.5513
max+3 σ	0.4407	0.3583	0.3426	0.5536

출처: 저자 작성

주어진 표본의 최댓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오염된 데이터의 개수가 적다면 불평등지수는 대체로 강건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보정된 불평등지수에 대한 실험 결과를 관찰해보자.

마. 준모수 방법론을 활용한 불평등지수

1) 불평등지수별 변화: 제도 시행 유무와 극단 표본 1개를 제거할 때

<표 11>은 지니계수를 제외한 다른 불평등지수들을 보정된 불평등지수 값으로 대체한 결과이다. <표 9>와 비교하면 최솟값을 제거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평등지수의 값들이 더 많이 상승한 사실과, 최댓값을 제거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평등지수의 값이 유사하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솟값을 제거할 경우에 기존 불평등지수와 보정된 불평등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자. 기존 불평등지수에서는 오른쪽 꼬리 부분의 파레토 분포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른쪽 꼬리 부분을 포함한 모든 표본이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평등지수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보정된 불평등지수의 경우에는 우측 꼬리 표본 부분은 따로 분리되어 파레토 분포의 모수를 추정하는 데 활용되고 나머지 남은 표본이 보정된 불평등지수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존 불평등지수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을 주며, 우측 꼬리 표본 부분의 파레토 분포 모수 추정 영향으로 더욱 불평등도가 큰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다.

<표 11> 표본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제거할 때 1기의 추정 소비 값의 준모수적 불평등지수

불평등지수		MLD(=GE(0))	Theil(=GE(1))	CV(=GE(2))
최솟값 제거	제도 X	0.3775	0.3407	0.4858
	제도 O	0.3542	0.3323	0.4788
최댓값 제거	제도 X	0.3785	0.3394	0.4784
	제도 O	0.3539	0.3310	0.4715

출처: 저자 작성

바. 불평등지수별 변화: 제도를 시행할 경우 데이터 오염 값이 분포의 우측 꼬리에 1개 존재하는 경우

<표 10>의 내용과 유사하게 <표 12>는 데이터 오염 값이 한 개 존재할 때, 그

<표 11>은 지니계수를 제외한 다른 불평등지수들을 보정된 불평등지수 값으로 대체한 결과로, <표 9>와 비교하면 최댓값을 제거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평등지수의 값이 유사하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평등지수 활용에 있어
연구자가 특히
주의할 사항은
불평등지수가
통계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12> 표본의 최댓값과 표본 표준편차를 더한 데이터 오염 값이 존재할 때
준모수적 불평등지수

불평등지수	MLD(=GE(0))	Theil(=GE(1))	CV(=GE(2))
max	0.3561	0.3363	0.5091
max+σ	0.3561	0.3363	0.5091
max+2σ	0.3561	0.3363	0.5091
max+3σ	0.3561	0.3363	0.5091


출처: 저자 작성

크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리하였다. 보정된 불평등지수를 활용할 때, 불평등도가 더 크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2>의 내용을 해석하면 고소득층의 데이터 오염에 대하여 보정된 불평등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여 강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파레토 분포의 극단 값에 의해 고소득층이 불평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경제학 이론을 반영한 통계적 논리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다음은 Cowell and Flachaire(2007)에서 발췌한 몇 가지 이론적 결과이며 실증적으로 보정된 불평등지수를 활용할 경우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GE(\alpha)$ 만약 $\alpha > 1$ 이라면 분포의 우측 꼬리 데이터 오염 값에 민감
- $GE(\alpha)$ 만약 $\alpha < 0$ 이라면 분포의 좌측 꼬리 데이터 오염 값에 민감
- 지니계수는 GE 지수들보다 분포 우측 꼬리 데이터 오염 값에 덜 민감
- $GE(\alpha)$ 의 α 가 작을수록 데이터 오염 값에 덜 민감

VI. 결론: 유의점 및 권장사항

본고에서는 재분배 효과를 추정할 때 중요한 불평등지수의 잠재적인 한계점 및 개선점과 그 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자가 특히 주의할 사항은 불평등지수가 통계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구간 등에 대한 논의 없이 통계량만 제시하는 경우 독자들에게 편향성 있는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더욱 편향이 최소화된 양질의 불평등지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불평등지수가 극단적인 분위 값이나 데이터 오염 값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분석하는 경우와 보정된 불평등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평등지수를 활용할 때의 권장사항으로는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전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극단 분위 값의 민감성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우측 꼬리 극단에서 발생하는 표본이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발생한 파레토 분포라 할지라도 모든 표본을 관찰할 수 있다면 연구자는 전체 분포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둘째, 표본을 활용한 연구 시에는 가능하면 극단 분위의 표본이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불평등지수뿐만 아니라 보정된 불평등지수를 활용할 때에도 만약 극단 분위의 표본이 충분하다면 데이터 오염에 대하여 강건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앞의 경우들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들다면 위에서 소개된 준모수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데이터 오염 값에 덜 민감한 보정된 불평등지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불평등지수를
활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표본을
관찰할 수 있다면
연구자는 전체 분포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019.

_____,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2020.

최준욱, 『세대간·세대내 불평등과 재분배』, 연구보고서 18-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0.

_____,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0.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00.

- Atkinson, Anthony B.,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3), 1970, pp. 244~263.
- Benabou, Roland, "Tax and education policy in a heterogeneous-agent economy: What levels of redistribution maximize growth and efficiency?," *Econometrica*, 70(2), 2002, pp. 481~517.
- Benhabib, Jess and Alberto Bisin, "Skewed wealth distributions: Theory and empir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6(4), 2018, pp. 1261~1291.
- Cowell, Frank A. and Emmanuel Flachaire, "Income distribution and inequality measurement: The problem of extreme values," *Journal of Econometrics*, 141(2) 2007, pp. 1044~1072.
- Cowell, Frank A. and Maria-Pia Victoria-Feser, "Robustness properties of inequality measure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64(1), 1996, pp. 77~101.
- Davidson, R. and Flachaire, E., "Asymptotic and bootstrap inference for inequality and poverty measures," *Journal of Econometrics*, 141(1), 2007, pp. 141~166.
- Davidson, Russell, "Reliable inference for the Gini index," *Journal of econometrics*, 150(1), 2009, pp. 30~40.
- Dupor, Bill and Wen-Fang Liu, "Jealousy and equilibrium overconsump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2003, pp. 423~428.
- Gabaix, Xavier, "Power laws in economics and finance," *The Annual Review of Economics*, 1(1), 2009, pp. 255~294.
- Gibrat, R., *Les Inégalités Economiques*, Paris: Librairie du Recueil Sirey, 1931.
- Gini, Corrado, *Variabilità e mutabilità*, Reprinted in *Memorie di metodologica statistica*(Eds. Pizetti E. et al.), 1912.
- Hampel, Frank R., "The influence curve and its role in robust estim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9(346), 1974, pp. 383~393.

Heathcote, Jonathan, Kjetil Storesletten, and Giovanni L. Violante, "Optimal tax progressivity: An analytical framework,"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2(4), 2017, pp. 1693~1754.

Hirschman, Albert O.,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Univ of California Press, 1980.

Kolm, Serge-Christophe, "Unequal inequalities. I," *Journal of Economic Theory*, 12(3), 1976, pp. 416~442.

_____, Serge-Christophe, "Unequal inequalities. II," *Journal of Economic Theory*, 13(1), 1976, pp. 82~111.

Lorenz, Max O., "Methods of measuring the concentration of wealth,"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70), 1905, pp. 209~219.

Shorrocks, Anthony F., "The class of additively decomposable inequality measure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980, pp. 613~625.

Wold, Herman OA, and Peter Whittle, "A model explaining the Pareto distribution of wealth,"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957, pp. 591~595.

정보교환의 차단이 부당행위 방지에 미치는 영향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sbae@kipf.re.kr)

I. 서론

이해관계자들의 정보교환이 경제주체들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사회 후생을 증가시킬지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부당행위를 촉진하여 사회 후생을 감소시킬지에 관한 논쟁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논쟁은 경쟁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기업들이 정보교환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정보교환을 통해서 경쟁사 간의 수량이나 생산량을 통제하는 부당 공동행위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된다(Coccoresse, 2010; Goltsman and Pavlov, 2014; 국회입법조사처, 2015).

정보교환 및 공개에 관한 논쟁은 법의 개정이나 제도 변화와도 밀접한 영향을 지닌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부당한 주식거래를 줄일 수 있지만, 애널리스트들과 기업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의 정보 생성 활동을 저해하여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투자를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다(조수지·양철원, 2018). 또 다른 예로 공공입찰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의 경우, 참여업체의 수를 공개하면 입찰자들이 경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반면에 참여업체를 추론하기 쉬워지므로 입찰 담합을 하기 쉬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한범희, 2020).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공기관과 주간사업자¹⁾의 직접적인 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정보교환을 차단한 정책 변화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주요업무를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는 주간사 회사(主幹事 會社)를 의미하며 기획재정부의 입찰공고 등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한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국민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표로 반영되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유인을 가지며, 이러한 유인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경영혁신 및 고객만족경영이 공공기관에 확산되어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호, 20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이러한 순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사의 형평성과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사가 매년 특정한 시기에 반복됨으로써 조사 시기에 대한 예측이 쉬워졌으며, 일부 공공기관들은 고객만족도 조사 시기에 부당한 방법을 통해 높은 점수를 취득하려는 행태를 보여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김지영, 2012).

이에 기획재정부는 부정행위 발생 차단 및 조사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편」을 발표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 주간사업자에 직접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탁하는 계약방식을 금지하고 공공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주간사업자로 이어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기획재정부, 2020). 이는 공공기관이 주간사업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조사 시기 또는 장소 등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통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할 수도 있으나, 계약을 두 번 체결하게 되는 불필요한 행정소모와 만족도 조사 대상 명단 전달 지연과 같은 조사 품질의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실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선행연구

본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의 문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교환의 허가 혹은 차단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공기관과
주간사업자의 직접적인
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정보교환을 차단한
정책 변화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부정행위 방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Novsheck and Sonnenschein(1982), Li(1985), Shaprio(1986), Fried(1984)는 기업들이 시장 규모나 비용정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면 적정생산 규모를 잘 설정하여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들이다.²⁾ 이들은 정보의 교환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와 부당행위 가능성의 증가라는 상충관계를 연구한다. 두 번째는 Forensic economics라고 불리는 문헌에 관한 것으로, 이는 부당행위라는 숨겨진 행위(hidden action)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론들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1. 정보교환과 사회 후생

정보교환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문들은 경쟁정책 문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³⁾ 기업 간의 정보교환이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대표적인 이론 논문들은 Novsheck and Sonnenschein(1982), Li(1985), Shaprio(1986), Fried(1984)가 있으며, 이 논문들에서는 기업들이 시장 규모나 비용정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면 적정 생산 규모를 잘 설정하여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Green and Porter(1984)는 기업들이 생산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담합에서 이탈하는 기업들을 쉽게 탐지하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는 담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보교환에 관한 실증연구는 이론 연구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나⁴⁾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제시할 수 있다. Doyle and Snyder(1999)는 미국 자동차 생산자들의 월별 생산계획 발표가 경쟁사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65~1995년 기간 동안 구축된 패널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자동차 생산자들이 생산계획을 높게 잡거나 큰 수치로 수정하여 발표하는 경우 경쟁사들도 이에 대응하여 생산계획을 늘리고, 실제 생산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행태는 생산계획 발표를 통해 시장수요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 다른 기업들이 여기에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담합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yrne and Roos(2019)는 호주 퍼스(Perth) 지역의 2001~2015년 사이의 휘발유 가격을 분석하여 정보교환이 가격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당시 주유소들은 휘발유 가격을 하루 전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Fulewatch)⁵⁾에 올려야 했는데, 이 웹사이트를 통해 BP가 가격을 인상하면 Caltex가 가격 인상을 추종하는 담합적인 가격 책정을 촉진하였음을 보였다.

한편 국내의 법 제도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 정보교환이 차단되는 사례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도 존재한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2) 제II장 제1절의 내용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의 분석 결과에 주된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해당 절을 생략해도 분석결과의 이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종합적인 survey를 위해서는 Sakai, Y., & Sasaki, K.(2021)를 참고할 수 있다.
4) 이는 부정행위라는 것이 숨겨진 행위이므로 관측하기 어렵고 효율성 증진 또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5) 이 웹사이트의 목표는 휘발유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었다.

관한 법률」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를 강화하여 애널리스트들이 기업과의 사적 유대관계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애널리스트들의 기업탐방 행위를 위축시켜 자본시장의 정보 생성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정수, 2015). 조수지·양철원(2018)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제도 시행 전후 4년간의 애널리스트들의 정보 생성 활동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 이후 애널리스트의 기업에 대한 EPS 추정 수가 감소하고, EPS 예측오차는 증가하였음을 보여 해당 조항이 애널리스트들의 정보 생성 활동을 위축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공공입찰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의 경우 조달청에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정해 주는데, 참여업체의 수를 공개하면 입찰자들이 경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반면에 참여 업체를 추론하기 쉬워져 입찰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한범희(2020)에 의하면 2016년 7월 이후 조달청은 참여업체 수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이후 연구 대상 제품에 대한 평균 가격 제안율은 95.36%에서 90.62%로 하락하고 낙찰업체 가격 제안율도 93.75%에서 90.29%로 하락하여 업체 수 공개 금지를 통해 담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정보교환과 사회 후생에 관한 논문들은 분석 대상이나 분석자료에 따라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며, 정보교환을 통한 효율성 증진과 잠재적 부당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하나의 분석 틀에 담아서 종합적으로 실익을 비교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효율성 증진이나 부정행위에 따른 손실 등을 화폐가치로 변환하는 작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 또한 이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공기관과 주간사업자 사이의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정책이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Forensic economics

Forensic economics라고 불리는 문헌들은 숨겨진 행위의 증거를 밝혀내는

정보교환과 사회 후생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보교환을 통한 효율성 증진과 잠재적 부당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실익의 측정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숨겨진 행위의 증거를
 밝혀내는 데 있어
 본고와 관련된
 접근방법은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부당행위가 아니었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변화를
 포착하거나,
 경제학 모형이나
 통계적 모형의 예측과
 매우 다른 이상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연구들을 포함한다(Zitzewitz, 2012). 예를 들면 시험 성적 조작, 스포츠 승부 조작, 입찰 담합, 과잉 진료, 탈세 등의 증거를 찾아내는 연구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Zitzewitz(2012)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들의 접근방식은 다섯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당행위의 직접적인 관찰이다. 두 번째는 부당행위가 아니었다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개의 지표를 비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부당행위가 아니었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경제학 모형이나 통계적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과 매우 다른 이상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발견하는 것이다.

본고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접근방법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접근방법이다.

세 번째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을 분류하여,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을 부정행위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을 유인이 강한 기관들로,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들을 부정행위의 유인이 약한 기관들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 두 유형의 기관들의 획득점수가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정책 시행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만일 정책 시행 이후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의 점수가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들의 점수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면 정보교환의 차단이 부정행위를 방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접근방법은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만일 정책 시행 이후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하락) 이상치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면 이는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방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고와 가장 유사한 접근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로는 Di Tella and Schargrotsky(2003)가 있다. 해당 연구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집중적인 부패 단속을 시작하자 공공병원이 조달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15% 하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부패의 증거로 보았다. 특히 부패가 적발되면 더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고소득 임직원들이 조달을 맡은 경우에 가격 하락 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저자들은 부패행위 적발의 위험을 느낀 임직원들이 부패행위를 중단하고 조달 가격을 낮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III.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개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1999년 정부투자기관⁶⁾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매년 수행되었다. 이후 조사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2004년에는 정부산하기관까지, 2005년에는 각 부처 자율혁신기관까지로 늘어났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1999년에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었고, 조사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2004년에는 정부산하기관까지, 2005년에는 각 부처 자율혁신기관까지로 늘어났다.

<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현장의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발췌

<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발췌

6) 현재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부분 공기업에 해당함

고객만족도 조사의
기본설계자는
공공기관 수행사업 중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고객 정의 및
조사방식 등을 결정한다.
주간사업자는 실사업체가
조사한 결과를 검증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통합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은 공기업 25개, 준정부기관 92개, 기타공공기관 128개로 총 245개 기관이며, 고객만족도 점수는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된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표 3>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업체별 업무내용

업무단계	기본설계	실사	
실사업체	기본설계자	주간사업자	실사업체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고객 정의 표본 크기 설정 목표 점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사업체 선정 및 관리 조사결과 검증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원 교육 조사 실시

출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21.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3>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들의 구성과 실시업체별 업무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설계자⁷⁾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고객만족도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조사를 받을 고객을 정의하며, 조사 방식(전화/현장/이메일) 등을 결정한다. 주간사업자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주요업무를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며, 조사를 실제로 수행할 실사업체를 선정 및 관리하며, 실사업체가 수행한 결과를 검증한다. 실사업체들은 실제로 조사를 수행한다.⁸⁾

2019년도까지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 및 계약관계는 [그림 1]과 같다.⁹⁾ 기획재정부는 기본설계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이들이 조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이때 공공기관은 주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며, 조사에 필요한 고객리스트를 제출하는 등 공공기관과 주간사업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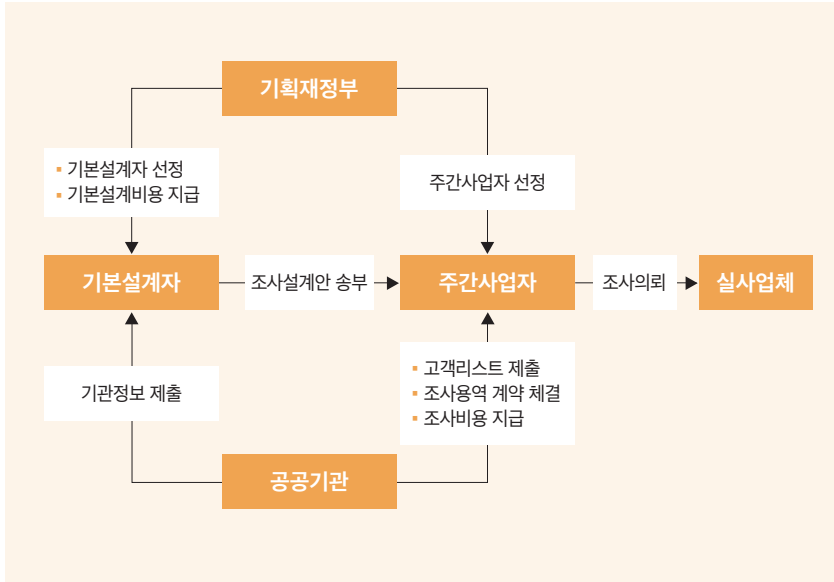
하지만 2019년도 조사 이후 기획재정부는 부정행위 발생 차단 및 조사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부터 공공기관과 주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기본설계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조사 방식

7) 2016년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기본설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8) 매년 주간사업자는 2~3개 업체가 선정되며 실사업체는 10개 내외의 업체가 선정된다.

9) 해당 모식도는 2009년부터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진행 과정을 보여준다. 2008년도까지는 주간사업자가 기본설계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기획재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주간사업자를 선정하였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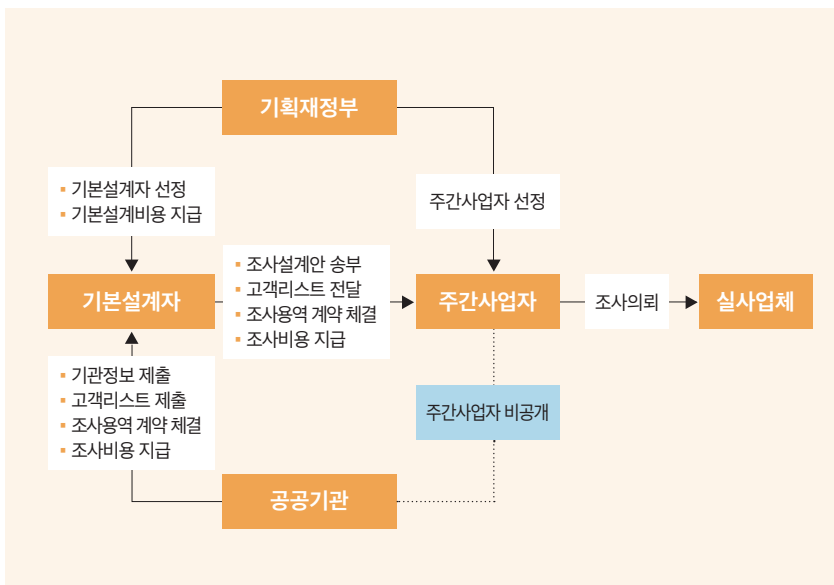
[그림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진행 과정 및 계약관계(2009~2019년)



출처: 기획재정부(202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0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a)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정행위 발생
차단 및 조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부터 공공기관과
주간사업자의
직접 계약이 금지되고
기본설계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조사 방식이 변경되었다.

[그림 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진행 과정 및 계약관계(2020~2021년)



출처: 기획재정부(202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0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a)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주간사업자 비공개 정책이 부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없다면 해당 정책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효율에 비해 실익은 미미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정행위 방지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을 변경 하였다(기획재정부, 2020).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사 시기 또는 장소 등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 이후의 고객만족도 조사 진행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사 방식의 변화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의 고객을 조사하는 주간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공공기관과 주간사업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도 차단되었다. 만일 이러한 변화 이전에 공공기관과 주간사업자 간 의사소통으로 인해 조사 시기나 조사 장소와 같은 정보가 교환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계약 방식의 변화는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일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또한 주간사업자에 비해 조사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본설계자가 공공기관을 직접 응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수행 과정에서 소통 지연 및 저하로 인해 고객만족도 조사의 품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 주간사업자를 비공개하는 정책이 부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없다면 해당 정책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효율성에 비해 정책의 실익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부정행위 방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V. 데이터 및 분석 결과

1.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얻어진 패널 구조의 자료이다. 분석자료의 구체적인 구성은 <표 4>와 같다. 우선 각각의 관측치는 연도, 기관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고용·복지, 문화 등의 그룹 구분이 존재한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세부사업별로 이루어

<표 4> 분석자료의 변수구성

변수명	변수내용
연도	2017, 2018, 2019, 2020
기관명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그룹 분류	고용·복지, 문화, 교육, 연구, 금융, 산업, 에너지, SOC, 의료, 공공안전
사업 부문	사업 부문명
세부사업 부문	세부사업 부문명
조사방법	이메일조사, 전화조사, 현장조사
모집단 크기	세부사업의 고객모집단 크기
조사표본 크기	세부사업의 조사표본 크기
획득점수	세부사업의 획득점수
부정행위 적발 이력	있음, 없음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a)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분석의 주요 관심변수는 획득점수인데, 만일 정보교환 차단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실제로 방지되었다면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점수의 상당한 하락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며 각 세부사업의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방법, 모집단 크기, 조사표본 크기에 관한 정보, 획득점수에 관한 정보가 있다. 이에 본고의 분석 목적을 위해 각 기관이 한 번이라도 부정행위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지의 변수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분석의 주요 관심변수는 획득점수인데, 만일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실제로 방지되었다면 부정행위를 통해 얻게 되었던 점수에서 상당한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4개 연도 패널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수는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137개이며, 데이터에 포함된 총 세부사업의 개수는 2,182개이다.

2. 적발 이력 유무에 따른 분석

중간사업자 비공개 정책 시행이 부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기관들과 적발 이력이 전혀 없었던 기관들의 획득점수가 정책 시행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은 부정행위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을 유인이 강한 기관이고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유인이 없는 기관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정책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방지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들의
 세부사업 평균점수는
 4개 년도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지만,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의
 세부사업들은
 정보교환이 차단된
 2020년에 평균적으로
 상당한 점수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표 5> 부정행위 적발 이력에 따른 획득점수 평균

(단위: 점)

획득점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적발 이력 존재 기관 사업	94.09 (0.77)	91.59 (1.75)	93.17 (2.00)	81.49 (1.95)
적발 이력 미존재 기관 사업	85.65 (0.26)	85.61 (0.25)	86.74 (0.22)	86.18 (0.21)

주: () 안은 평균에 대한 표준오차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업무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했을 때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의 획득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⁰⁾

<표 5>는 부정행위 적발 이력에 따른 획득점수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는 기관들의 세부사업 평균점수는 85~86점 수준으로 4개 년도에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는 기관들의 세부사업들은 정보교환이 차단된 2020년에 평균적으로 상당한 점수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는 표준오차 대비 매우 큰 변화이므로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방지됨에 따라 점수가 하락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식 (1)과 같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모형을 만들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¹¹⁾

$$y_{it} = \beta_0 + \beta_1 C_i + \beta_2 D_t + \delta C_i D_t + X_{it} \gamma + \epsilon_{it} \quad \text{식 (1)}$$

우선 C_i 는 부정행위 적발 이력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만일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해서 획득점수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해당 더미변수의 계수를 통해 그 본질적인 차이가 포착된다. D_t 의 경우 2020년을 0으로 하고 이전 기간을 1로 하는 더미변수이다.¹²⁾ 이는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전체 기관들의 획득점수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화를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C_i D_t$ 는 위 두 더미변수의 교차항이며 만일 주간사업자 비공개 원칙이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의 점수를 하락시키고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의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해당 교차항의 계수 δ 에서 그 차이가 포착될 것이므로 δ 의 계수에 대한 추정치가 해당 분석의 주된 관심

10)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의 경우라도 해당 기관들이 영위하는 모든 세부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관이 하나의 세부사업에서라도 부정행위를 수행하였다면 다른 세부사업에서도 부정행위를 수행할 유인이 높다고 가정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해당 분석에서는 4개년 동안 모두 획득점수가 있는 표본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총 2,182개 세부사업 중 687개 사업이 4개년 점수가 모두 존재하였다.

12) 일반적인 모형에서는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 기간을 1로 잡는 경우가 많으나, 본고에서는 정보교환이 차단되기 이전의 적발 기관들의 $C_i D_t$ 가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정보교환 차단 이후에는 모든 기관이 0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렇게 설정하였다. D_t 를 반대로 설정하더라도 계수의 방향만 바뀔 뿐 분석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사가 된다. X_{it} 는 세부사업에 대한 조사방법, 기관 유형 등과 같이 획득점수에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통제변수들을 의미한다. 모형 (1)은 모든 통제변수를 넣은 모형이며, 모형 (2)~(4)의 경우에는 일부 통제변수를 모형에 넣지 않은 모형을 의미한다.

<표 6>은 이중차분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의 선택과는 크게 관계없이 주된 관심 계수인 δ 는 유의미하게 양(+)의 값을 가지며 그 크기는 모든 통제변수를 넣은 모형에서 9.4점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간사업자 비공개 정책 시행 이후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이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들에 비해 더 많은 점수의 하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 점수 하락의 이유가 실제로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정책의 시행이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된 관심 계수가
유의미하게 양(+)의 값을
가지는 점은
주간사업자 비공개 정책
시행 이후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이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들에 비해
점수 하락이 컸음을
의미한다.

<표 6> 이중차분 모형 결과

주요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적발기관 x D_t (δ)	9.409*** (2.135)	9.244*** (2.192)	11.68*** (2.088)	9.237*** (2.125)
D_t	-0.574** (0.249)	-0.599** (0.265)	-0.222 (0.248)	-0.575** (0.254)
적발기관	-7.227* (1.170)	-6.687** (1.218)	-7.338*** (1.116)	-6.455** (1.095)
전화조사	-3.531*** (1.207)	-4.019*** (1.123)		-1.906 (1.244)
현장조사	0.612 (1.364)	0.429 (1.285)		2.511* (1.317)
기타공공기관	-2.949*** (0.589)		-3.162*** (0.575)	-4.717*** (0.460)
준정부기관	0.0746 (0.574)		-0.0435 (0.559)	-1.172*** (0.452)
Constant	92.31*** (1.364)	91.67*** (1.232)	89.24*** (0.616)	90.23*** (1.312)
공공기관 그룹분류	Yes	Yes	Yes	No
Observations	2,748	2,748	2,748	2,748
R-squared	0.175	0.135	0.156	0.12

주: 1. 더미변수의 경우 조사방식의 생략된 참조 범주는 이메일조사 방식이며 공공기관 유형의 참조 범주는 공기영업 공공기관 그룹분류는 더미변수의 개수가 많아 표에서 결과를 생략함

2. ()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업무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고정효과 모형 역시 이중차분 모형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은 주간사업자 비공개 정책 시행 이후 적발 이력이 없었던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점수 하락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사 방법을 통제변수로 넣지 않은 모형 (3)에서는 δ 추정치의 절댓값이 다른 모형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의 사업 점수 하락의 일부 원인이 조사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통제변수들의 추정을 통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조사 방식에 따라서 획득점수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메일조사 방식에 비해서 전화조사 방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5점 정도의 낮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현장조사 방법은 이메일조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의 사업인 경우에는 공기업의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9점 정도 낮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준정부기관의 사업인 경우에는 공기업의 사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패널 데이터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정효과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정해 보았다.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유형과 공공기관 그룹 분류와 같이 세부사업별로 매년 똑같은 값을 가지는 변수들은 그 계수를 추정할 수 없었다. 조사 방식의 경우에는 똑같은 세부사업이라고 해도 연도별로 조사 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조사 방식이 획득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었다. 식 (2)에서 y_{it} 는 t 년도의 세부사업 i 의 획득점수이며, α_i 는 세부사업별 고정효과, λ_t 는 시간고정효과, w_{it} 는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의 경우 2019년까지 1의 변수를 가지는 값이며 이외에는 전부 0의 값을 가지는 변수이다. X_{it} 는 통제변수들을 의미한다.

$$y_{it} = \alpha_i + \lambda_t + \delta w_{it} + X_{it}\gamma + \epsilon_{it} \quad \text{식 (2)}$$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우선 주된 관심 계수인 δ 는 유의미하게 양(+)의 값을 보여 정보교환 차단 전후로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이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들에 비해 더 많은 점수의 하락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준다. 추정치의 크기는 7.5점 정도로, 이상의 이중차분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보다는 다소 작은 값을 보였다.

조사 방식에 따른 점수의 차이는 이메일조사 방식과 전화조사 방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조사는 이메일조사보다 통

<표 7>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주요변수	획득점수
$w_{it}(\delta)$	7.526*** (1.425)
2018년	-0.0215 (0.185)
2019년	1.168*** (0.177)
2020년	1.167*** (0.203)
전화조사	-1.027 (0.941)
현장조사	6.428*** (1.192)
Constant	91.83*** (1.580)
Observations	2,748
R-squared	0.789

주: 1. 다미변수의 경우 조사 방식의 생략된 참조 범주는 이메일조사 방식임

2. ()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실계 업무」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계적으로 6.4점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차분 모형에 비해 약간 상이한 패턴을 보이지만, 두 모형 모두 전화조사에 비해 현장조사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는 것에는 차이점이 없었다.

두 가지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은 주 간사업자 비공개 정책 시행 이후 적발 이력이 없었던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점수 하락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적발 이력이 있던 기관들이 정보교환의 금지 이후 부정행위를 하기 어렵게 되자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며, 주간사업자 비공개 정책이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를 억제했을 것이라는 간접적 증거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의 한계점은 명확히 존재한다. 우선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은 시기이다. 만일 일부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유독 심하게 받았다면 본 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영

두 모형의 분석 결과는 적발 이력이 있던 기관들이 정보교환 금지 이후 부정행위를 하기 어렵게 되자 발생한 결과일 수 있으며, 주간사업자 비공개 정책이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를 억제했다는 간접적 증거로 볼 수 있다.

정보교환 차단 외에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다른 정책 변화가 있었을 경우 본고에서 발견한 효과가 모두 정보교환 차단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분석의 결과는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이 주간사 비공개 원칙을 통해 부정행위가 방지되어 점수가 하락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적발 이력 자체가 언론 등에 보도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져서 자연스럽게 점수가 하락했을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정보교환의 차단 이외에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다른 정책 변화가 있었을 경우 본고에서 발견한 효과가 모두 정보교환 차단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¹³⁾

부가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의 획득점수는 조사 방법, 공공기관 유형, 공공기관 그룹 분류 등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 세부사업의 조사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경영평가 반영 시 조사 방법 변화에 따른 점수 변화를 감안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형 구분이나 그룹 분류에 따라서도 획득점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경영평가 반영 시에 유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적발 이력 미존재 기관 분석

앞서 부정행위로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들은 부정행위의 유인이 작거나 없는 기관으로 간주하고 이들과 대조하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의 점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한 모든 기관이 적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 중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공공기관이 존재할 확률이 있다. 본 절에서는 정보교환의 차단이 미적발 기관들의 잠재적인 부정행위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라는 것은 관측되지 않는 숨겨진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식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정보교환의 차단이 잠재적인 부정행위의 차단 근거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Ⅱ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만약 정보교환의 차단이 미적발 기관들의 부정행위를 억제하였다면 이는 획득점수의 예상 밖의 하락(이상치)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예상 밖의 하락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점수가 하락하였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부정행위의 차단으로 인한 것인지는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13) 예를 들어 정부가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할 것으로 예고하였다면 정보교환의 차단 유무와는 관계없이 기관들의 행태가 변할 수는 있다.

우선 개별 사업의 획득점수의 이상치를 발견하기 전에 전체적인 획득점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림 3]은 미적발 기관들의 점수 분포를 기업유형별로 나누어서 그린 것이다.¹⁴⁾ 공기업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017년 이후 점수의 분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보교환이 차단된 2020년의 경우에 점수 분포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2017년 이후 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 사이 눈에 띄는 상승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0년의 분포는 2019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낮은 점수를 획득하는 사업의 빈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사업의 빈도가 높아지는 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8>은 연도별 획득점수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분포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하는 데는 Wilcoxon의 Rank-sum test¹⁵⁾나 Kolmogorov-Smirnov test(K-S test)가 주로 쓰인다. Rank-sum test는 두 분포가 만일 같다면 두 분포에서 각각 하나의 숫자를 임의로 뽑았을 때 한 분포에서 나온 숫자가 다른 한 분포에서 나온 숫자보다 클 확률이 반반이어야 된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테스트이다. 한편 K-S test의 경우에는 두 분포가 같다면 누적확률 분포에서의 높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한 테스트이다. 원론적으로는 두 테스트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분포에서는 두 테스트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며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된다.

<표 8> 획득점수의 분포 테스트

사업주체	H0	2017=2018	2018=2019	2019=2020
공기업	rank-sum test	= (p=0.21)	= (p=0.71)	-** (p=0.01)
	K-S test	= (p=0.38)	= (p=0.86)	-* (p=0.06)
준정부기관	rank-sum test	+* (p=0.09)	+** (p=0.02)	= (p=0.42)
	K-S test	= (p=0.13)	+** (p=0.02)	= (p=0.67)
기타공공기관	rank-sum test	= (p=0.71)	+** (p=0.02)	+* (p=0.06)
	K-S test	= (p=0.56)	+*** (p=0.00)	+* (p=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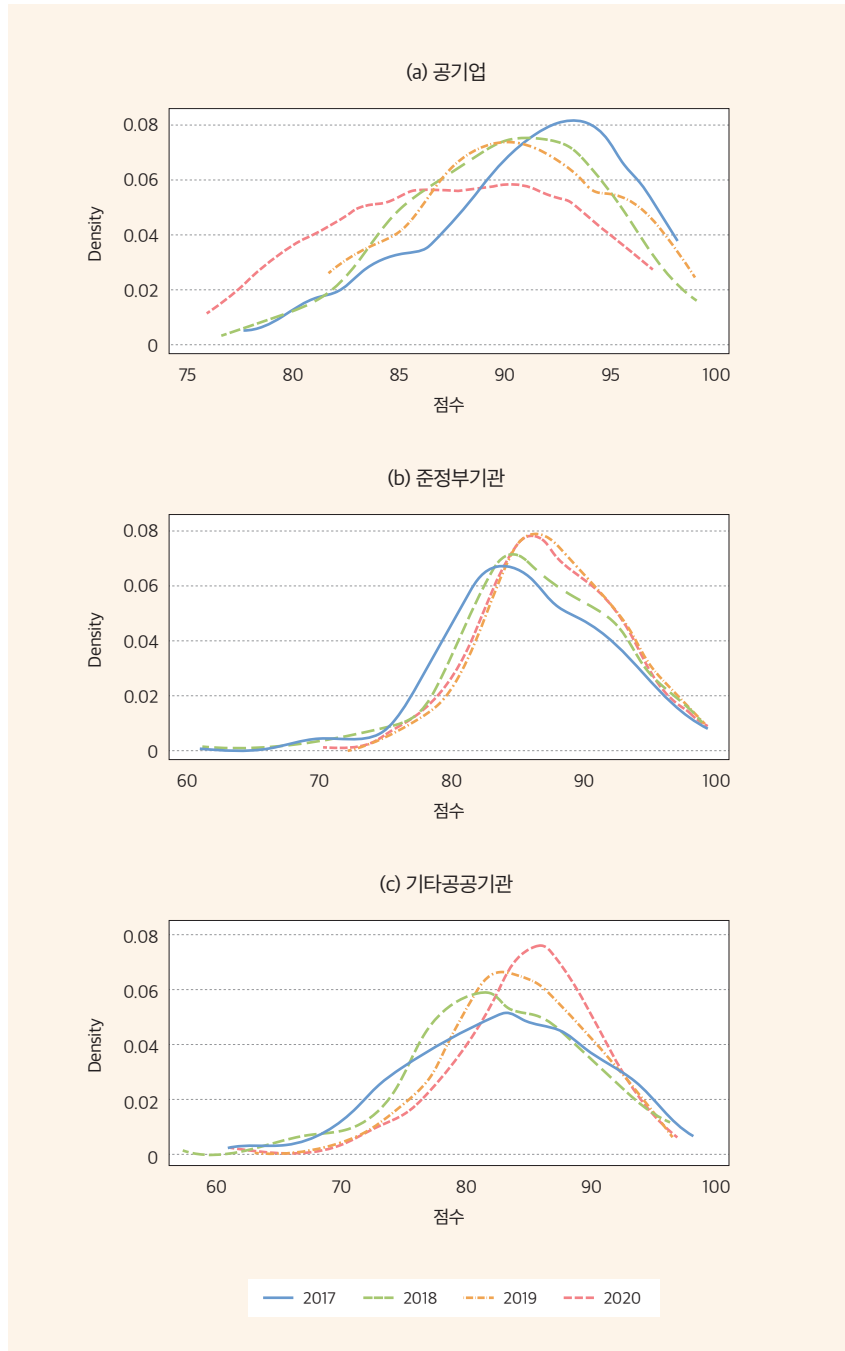
주: () 안 숫자는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업무」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적발 이력이 없는
준정부기관 세부사업은
2017년 이후
점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2019년 사이
눈에 띄게 상승하였고,
2020년의 분포는
2019년과 유사하다.**

14) 해당 분포는 4개년 동안 모든 획득점수가 있는 표본만을 선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조사 방식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표본들만 선택하여 그린 것이다.
15) 엄밀히 말하면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paired-data이므로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Signed-rank test의 결과는 Rank-sum test 결과와 거의 유사했다.

적발 이력이 없는
공기업을 세부사업은
2017년 이후
점수의 분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보교환이 차단된
2020년의 경우
점수 분포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기관유형별 세부사업 획득점수 분포(2017~2020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업무」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분포 테스트 결과, 공기업의 경우 2020년의 분포가 2019년의 분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보여주며, 두 테스트 모두 같은 방향의 결과를 보여준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8~2019년 사이에 점수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18~2019년 사이 그리고 2019~2020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상승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할 때 공기업의 경우 2020년에 전반적인 점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인 영향이었을 수도 있지만, 중간사업자 비공개 원칙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기관들의 부정행위가 억제되어 생긴 변화일 수도 있다.¹⁶⁾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20년에도 전체적인 분포의 하락이 없었다. 하지만 만일 개별 사업의 급격한 점수 하락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는 부정행위 차단으로 인한 점수 변화임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사업의 획득점수의 이상치를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다음의 분석에서는 급격한 점수 하락이라는 이상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단순한 지표를 사용해 보고자 한다. 본 데이터 셋에서는 각 세부사업의 표본의 크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오차를 구할 수가 있다. 만일 매년 모집단이 동일하고 모집단의 응답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가정한다면 점수의 변화는 오직 표본의 선정에 따른 표본오차에 의해서만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획득한 점수가 작년의 점수보다 표본오차 밖에 존재하는 경우를 이상치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

<표 9>는 획득점수가 작년에 획득한 점수의 표본오차를 벗어난 점수의 빈도를 나타낸다. 2020년 점수의 변화를 보면 우선 점수가 급격히 하락한 세부사업이 점수가 급격히 상승한 세부사업보다 불균형적으로 많다. 공기업의 경우 점수가 표본오차 밖으로 하락한 세부사업이 7배 정도 많으며,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점수가 하락한 기관이 약 2배 이상 많은데 이러한 패턴은 2018년이나 2019년의 변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패턴이므로 2020년에 급격한 점수 하락을 야기한 어떠한 요소가 존재했을 것임을 추론하게 된다. 특히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앞서 전체 표본의 분석에서는 점수 분포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별 기관의 분석에서는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몇몇 개별 기관의 경우에 부정행위를 차단 당해서 점수가

공기업은 2020년에 전반적인 점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20년에 전체적인 점수 분포의 하락은 없었다.

16) 공기업의 전체 사업 개수는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소수 몇몇 사업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책 시행 이후
예상 밖의 급격한
점수 하락이 발생한
기관들의 세부사업이
상당수 확인된 점은
정보교환 금지 정책이
부정행위를 방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9> 표본오차 이상 점수 변화 빈도 수

구분	변화방향	2017→2018	2018→2019	2019→2020
공기업	+	6(12.2%)	8(16.3%)	3(6.1%)
	-	15(30.6%)	8(16.3%)	23(46.9%)
준정부기관	+	42(13.7%)	33(10.8%)	23(7.5%)
	-	43(14.1%)	30(9.8%)	42(13.7%)
기타공공기관	+	20(7.6%)	25(9.5%)	19(7.3%)
	-	33(12.6%)	16(6.1%)	41(15.6%)

주: () 안은 전체 사업 수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본오차는 신뢰도는 95%로 설정하였음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업무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급격히 하락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 획득점수 분포의 변화와 이상치의 발견 빈도를 분석한 결과, 주간사 비공개 정책이 시행된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점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한 기관들의 세부사업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정책이 부정행위를 방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는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 변화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져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점수가 낮아졌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정책 시행 후 많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해소되었을 시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상(하락)치를 발견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시사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조사로서 조사의 형평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19년까지는 공공기관이 주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해 조사 장소나 시기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본설계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중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부정행위 차단 가능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위탁계약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성과 조사 수행과정에서 소통 지연 및 저하로 인해 고객만족도 조사의 품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변화에 대한 실익은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중간사업자 비공개 정책 변화 이후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들에 비해 획득점수가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수 변화는 부정행위의 가능성과 정보교환의 금지로 인해 부정행위 가 억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 중에서도 부정행위 억제의 근거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의 점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점수가 급격히 하락한 기관들이 전년도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았다. 특히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점수의 전체 분포는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였으나 급격한 점수 하락을 경험한 사업들이 전년도보다 불균형적으로 많았으므로 이러한 변화는 정보공개 차단 정책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억제되어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급격한 하락은 코로나19와 외생적인 충격의 결과였을 가능성도 크므로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이 해소되었을 때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2020년에 도입된 중간사업자 비공개 원칙의 경우 부정행위를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탁계약 방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성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비효율성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행위의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들의 경우에도 고객만족도 점수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포착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론의 연구 및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사기업의 연구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국책연구원과 같이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내 전담조직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유사한 조사제도인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나 종합청렴도 조사의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국가권익위원회의 전담팀의 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간사업자 비공개를 유지하더라도 위탁계약의 비효율성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가 급격히 변화하면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21.
- 국회입법조사처,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2015.
- 기획재정부, 「조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편」, 보도자료, 2020. 7. 22.
- 김지영,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상승요인 분석」, 『재정포럼』, 2012년 2월호, 2012, pp. 8~25.
- 이명호,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및 지표개선 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8.
- 이정수,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들」, 『증권법연구』, 16(2), 2015, pp. 1~24.
- 조수지·양철원,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애널리스트 정보 생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47(2), 2018, pp. 295~32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제도의 변천 및 개편방안』, 2021.
- _____,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2022a.
- _____,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2022b.
- 한범희, 「공공입찰에서 정보의 불완전성 증가가 업체의 담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20.
- 허경선, 『고객만족도 조사 간소화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Byrne, D. P., and De Roos, N., “Learning to coordinate: A study in retail gasoline,” *American Economic Review*, 109(2), 2019, pp. 591~619.
- Clarke, R. N., “Collusion and the incentives for information sharing,”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14(2), 1983, pp. 383~394.
- Coccorese, P., “Information exchange as a means of collusion: The case

- of the Italian car insurance market,” *Journal of Industry, Competition and Trade*, 10(1), 2010, pp. 55~70.
- Di Tella, R., and Schargrodsky, E., “The role of wages and auditing during a crackdown on corruption in the city of Buenos Aires,”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6(1), 2003, pp. 269~292.
- Dov Fried, “Incentives for Information Production and Disclosure in a Duoplistic Environ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2), 1984, pp. 367~381.
- Doyle, M. P., and Snyder, C. M., “Information sharing and competition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7(6), 1999, pp. 1326~1364.
- Goltsman, M., and Pavlov, G., “Communication in Cournot oligopoly,” *Journal of Economic Theory*, 153, 2014, pp. 152~176.
- Green, E. J., and Porter, R. H., “Noncooperative collusion under imperfect price information,” *Econometrica*, 52(1), 1984, pp. 87~100.
- Li, L., “Cournot oligopoly with information sharing,”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16(4), 1985, pp. 521~536.
- Novshek, W., and Sonnenschein, H., “Fulfilled expectations Cournot duopoly with information acquisition and release,”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13(1), 1982, pp. 214~218.
- Sakai, Y., and Sasaki, K., “Information Exchanges among Firms and Their Welfare Implications(Part I): The Dual Relations between the Cournot and Bertrand Models,” In *Information and Distribution*, Springer, Singapore, 2021, pp. 67~82.
- Shapiro, C., “Exchange of cost information in oligopol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3(3), 1986, pp. 433~446.
- Zitzewitz, E., “Forensic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0(3), 2012, pp. 731~769.





2022년 노벨경제학상

■ 2022년 노벨경제학상: 금융위기와 은행의 역할에 대한 연구

김평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2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수상자인 벤 버냉키 (Ben S. Bernanke) 전 연준의장, 더글러스 다이아몬드(Douglas W. Diamond) 교수, 필립 디비그(Philip H. Dybvig) 교수의 업적을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주>

2022년 노벨경제학상 : 금융위기와 은행의 역할에 대한 연구¹⁾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pskim@kipf.re.kr)

I. 서론

스웨덴 왕립과학원(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은 은행과 금융위기 연구에 기여한 공로(for research on banks and financial crises)로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전 연준의장(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더글러스 다이아몬드(Douglas W. Diamond)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그리고 필립 디비그(Philip H. Dybvig)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교수를 202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수상자들은 은행의 다양한 역할을 분석하고, 금융위기 시 은행을 덜 취약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과거 데이비드 흄과 아담스미스 등의 경제학자들은 은행이 예금을 통해 정부가 주조하는 통화의 양보다 시장에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에 더 주목하였다. 그들은 모든 예금이 동시에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통화 발행량보다 유동성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다이아몬드와 디비그의 연구 이전에는, 대다수 연구가 은행이 단기예금을 장기투자로 바꾸어 경제 내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에 도움을 주는 경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²⁾ 다이아몬드와 디비그는 은행이 어떻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지를 밝히고, 은행을 통해 금융불안정이 발생하는 동학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다이아몬드-디비그 모형’(Diamond-Dybvig

1) 본고의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동익 박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 비록 엄밀한 모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스펀터 등 극히 소수의 경제학자는 은행이 사업 가치를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였다.

model)을 고안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금자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여 예금을 즉시 인출하기를 원할 수 있고, 기업은 장기투자를 위해 예금자들이 조기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기를 바란다. 모형은 은행이 예금자 다수와의 거래를 통해 대출자에게는 장기로 대출해주고, 예금자에게는 예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다만, 수상자들은 시장의 루머로 뱅크런(bank run) 사태가 갑자기 발생하여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³⁾ 그들은 정부가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하거나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 위와 같은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⁴⁾ 추가적으로 다이아몬드르는 은행이 다양한 차용인과의 거래를 통해 차용인의 신용을 보다 잘 평가하고 그들의 사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시(monitoring)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은행은 대부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으고 차용인 간에 대출을 분산함으로써 차용인이 부담해야 하는 총 감시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은 예금자들을 대신해 대출자를 더 잘 감시할 수 있음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존재는 대출이 건전한 투자로 이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짚었다. 이후 수상자들은 자신들의 모형을 확장하며, 은행은 가계의 저축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강조

했다. 이러한 모형의 확장을 통해, 금융 안정을 위한 최적 금융 규제 및 관련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주었다.

버냉키의 연구 이전에 은행의 역할과 관련된 거시경제학 논의는 진성어음주의(real bill doctrine)와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 중 어떠한 이론이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 편중되어 있었다.⁵⁾ 전자의 경우 민간 은행에 자유롭게 통화를 발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시장이 과도한 신용창출을 억제할 것이라 주장했다. 후자는 그렇게 된다면 물가에 과도한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Friedman and Schwartz(1963) 등의 연구는 은행의 위기로 통화 공급량과 통화승수가 급감하였고, 미국 중앙은행이 충분한 양의 통화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냉키는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경기침체에 기여했을 수는 있지만, 이 위기가 왜 그렇게 깊고 오래 지속되었는지까지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버냉키는 대공황을 야기하고 지속하게 한 주요 동인이 대규모 뱅크런 사태에 따른 은행 시스템의 붕괴였음을 연구를 통해 보였다. 특히 은행이 파산하면 대출자에 대한 값진 정보가 사라지고 이러한 정보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버냉키는 은행의 부

3) 뱅크런은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의미한다.

4) Bagehot(1873)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통해 갑작스러운 인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다만 해당 문 역시 엄격한 모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5) 진성어음주의는 실제적인 상품 생산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성어음이 담보로 이루어진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화폐수량설은 통화 공급은 담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이론이다.

실이 장기화될수록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커져 금융중개기관이 대출을 할 때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요인들은 금융중개기관이 기업, 가계에 신용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며 통화시장의 충격을 강화하게 된다. 위와 같은 요소들은 신용시장에서 저축을 가치 있는 투자로 전환시키는 경로를 망가뜨리고, 결국 금융위기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버냉키의 연구는 앞에 소개했던 다이아몬드와 디비그의 연구와도 서로 보완된다. 구체적으로, 그는 Diamond and Dybvig(1983)에서와 같이 뱅크런 사태가 금융위기를 야기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은행의 부실은 Dybvig(1984)에 등장했던 은행의 가치 있는 대리감시기능을 마비시켜 금융위기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버냉키의 연구는 단순히 은행이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학에서 은행, 기업, 가계 간에 신용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도왔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그의 연구는 전통적인 통화량뿐 아니라 가용한 은행대출 총액의 변동으로도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통화정책 신용경로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는 데 주춧돌이 되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전쟁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듯, 다양한 금융위기는 경제학의 발전을 가져다줬다. 금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역시 마찬가지다. 수상자들의 연구는 과거 1930년 대공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이론적 밑바탕이 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러운 경기침체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경기침체가 대공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시장참여자들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가지게 하고, 유동성이 건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상자들이 우리가 은행과 금융위기를 과거보다 더 깊게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그들의 주요 선행연구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II. 은행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연구

1. 만기전환 기능

Diamond and Dybvig(1983) 논문을 통해 다이아몬드와 디비그는 은행의 만기전환 역할(maturity transformation)을 모형화하였고, 이를 통해 뱅크런으로 금융위기가 올 수 있음을 보였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운용하는 만기전환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으로 단기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한 후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만기가 길고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을 취급하면 이는 만기전환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투자 기회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투자자들이 필요할 때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 있게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때 채권자가 대규모 예금상환을 요구할 경우 은행은 즉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금융회

사가 파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가 연쇄적으로 파산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까지 확산될 수 있다.

위의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의 핵심 모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⁶⁾ 먼저, 위험 기피적인 효용함수를 지닌 사람(risk-averse agent)이 미래의 소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가정한다. 시간은 세 기간($T=1,2,3$)이 존재하며, 첫 번째 기간($T=1$)에는 부존자원을 가지고 다음 2기, 3기에 어느 정도 소비(C_T)할지 고민한다. 두 번째 기간이 되면 λ 의 확률로 유동성 위기가 와서 오직 현재의 소비만을 가치 있게 여기며, $1-\lambda$ 의 확률로 다음 기와 현재의 소비를 동시에 고려한다. 이러한 사람의 효용함수는 식 (1)처럼 나타낼 수 있다.

$$u(C_2, C_3) = \begin{cases} u(C_2) & w.p \ \lambda \\ u(C_2 + C_3) & w.p \ 1-\lambda \end{cases} \quad \text{식 (1)}$$

첫 번째 기간($T=1$)에 투자한 사업은 세 번째 기간($T=3$)에 $R > 1$ 의 수익률을 가져오지만, 두 번째 기간에 급히 유동화를 할 경우 겨우 1의 수익률만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번째 기간($T=2$)에 유동성 위기가 있는 λ 만큼의 사람들은 사업을 중지시키고 당기에 1의 수익만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다. 비슷하게 경제에 $1-\lambda$ 만큼 존재하는 유

동성 위기가 없는 사람들은 투자를 지속하여 다음 기에 R 의 수익을 소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기대치로 나타내면 한 개인의 기대효용함수는 $Eu(C_2, C_3) = \lambda u(1) + (1-\lambda)u(R)$ 로 표현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 소비 값(C_2^*, C_3^*)을 구하게 되면, 두 번째 기간에 1보다 많은 소비를 하고, 마지막 기간에 R 보다 적은 소비를 하는 것이 최적이다(즉, $C_2^* > 1$ 과 $C_3^* < R$). 이때 유동성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를 줄이고,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한다. 하지만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험 기피적인 개인은 λ 로 표현되는 유동성 위험 가능성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예금자가 존재하고, 그들이 일정 수준의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은행은 개인들이 사회적 최적 소비수준을 달성토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예금자들은 2기에 예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은 예금자들은 3기까지 기다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은행 덕분에 예금자는 유동성 위기 여부에 따라 예금 인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1 \leq C_2^* \leq C_3^* \leq R$ 에 해당하는 소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다만, 모형에 따르면 뱅크런 사태 또한 균형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각 개인은 다른 예금자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지 관측할 수 없다. 또한

6) 원래 모형은 다수의 순수전략 내쉬균형(pure strategy Nash Equilibrium)을 도출하는 게임이론 모형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각 경제주체의 전략적 행동에 대해서는 모형에 자세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Diamond and Dybvig(1983)를 참고할 수 있다.

은행은 잔고가 남아 있는 한 상환을 요구하는 예금자들의 요구에 순차적으로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sequential service constraint). 그렇기에 각 개인의 입장에서 다른 예금자들이 모두 2기에 예금을 인출해서 은행이 3기에 위기에 빠질 것이라 예측한다면, 유동성 위기 여부에 상관없이 2기에 인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때 은행은 예금 잔고 규모에 상관없이 예금자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수상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과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후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으므로, 예금보험을 통해 예금상환을 보증할 경우 민간 보험보다 신용을 구축하는 데 적합하다. 심지어 예금보험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예금지불을 보증한다는 약속만으로도 뱅크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모형은 보였다. 또한 모형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위기가 예상될 경우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통해 뱅크런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

2. 은행의 대리감시 기능

다이아몬드 디비그 모형은 장기 프로젝트가 현금으로 쉽게 유동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다만 그들의 모형은 은행을 금융중개기관으로 만드는지, 은행 대출에서 부채계약의 특징은 무엇인지, 자산 다각화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았다. 은행이 투자한 사업은 일반적인 불확실성과 차용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 이때 차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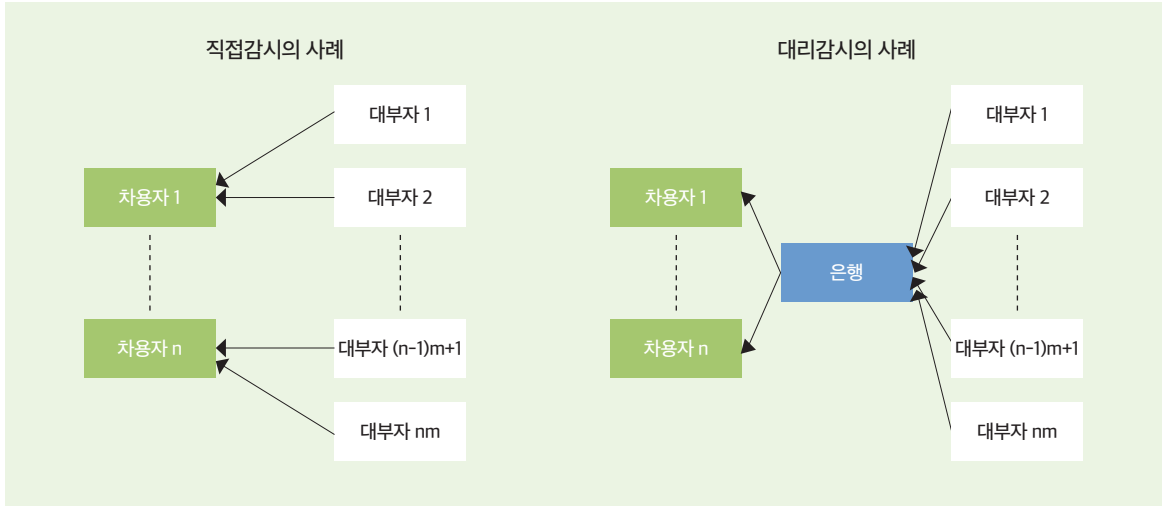
들은 기회주의적으로 위험한 사업이 파산하여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처럼 정보의 편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로 건전한 차용인마저 피해를 입게 된다. 다이아몬드는 그의 Diamond(1984) 논문에서 은행은 차용인들이 빚을 잘 갚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개별 예금자들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이아몬드는 투자자들이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에 감시를 대리시키는 메커니즘(delegated monitoring)을 다음과 같이 모형화했다. 먼저, 그의 모형에는 괜찮은 사업에 투자받기를 원하는 사업가와 그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있는 대부자가 존재한다. n 개의 기업들이 각자 1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투자할 경우 다음 기에 \tilde{y} 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래 수익 \tilde{y} 는 시장에서 사업가만 정확히 관찰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마찰(financial friction)이 존재한다. 경제 내 이자율은 R 로 가정한다. 1개의 기업이 차입을 위해서는 m 명의 대부자가 필요하며, 시장 전체적으로는 nm 의 대부자가 필요하다. 이때 1인의 대부자는 각자 $\frac{1}{m}$ 만큼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가정한다.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말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고 미래 수익 \tilde{y} 를 독차지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 경우 대부자 역시 투자를 통해 미래에 적당한 양의 수익 R 을 얻지 못할 것을 알기에 사전적으로(ex-ante) 수익성 있는 사업에도 투자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전적으로 관찰 불가능한 \tilde{y} 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차용자와 대부자 간

[그림 1] 직접감시와 대리감시 비교



자료: 저자 작성

에 다음과 같은 부채계약(debt contract) 체결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차용자는 대부자에게 투자자금을 빌린 후, 고정된 D 만큼의 금액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만약 D 만큼의 금액을 기업이 갚지 못한다면 기업은 충분한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후적으로도 사업 수익을 정직하게 보고할 동기가 부여된다. 하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수입이 D 보다 적게 실현될 가능성은 존재하며($y \leq D$), 이로 인해 기업이 건전하게 사업을 운영해도 비효율적인 벌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각 대부자가 K 의 감시비용(monitoring costs)을 지불하고 사업을 직접 감시하는 방법이 있다. 각 사업의 기대수입값이 다음과 같은 양(+)의 순현재가치 $E(y) \geq K + R \geq 0$ 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한 사업에 투자하는 대부자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와 연계된 감시비용 K 는 비례하

여 증가한다. 그렇기에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직접 금융시장이라면, m 명의 대부자가 n 개의 기업활동을 감시해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총 nmK 의 비용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큰 투자금액이 요구되는 사업에 모든 대부자가 각자 $\frac{1}{m}$ 만큼 참여할 경우 $mK \geq E(y)$ 로 사업의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어떠한 사업은 양(+)의 순현재가치를 가졌음에도 대출을 받는 데 실패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없다면 다수의 대부자들은 투자를 위해 자산평가, 회사의 자본구조에 대한 조사, 경영진과의 회의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감시비용을 중복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때 다이아몬드는 다수의 개별 대부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들을 대신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사업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은행 역시 소수의 사업에만 투자한다면 운이 나쁠 경우 파산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은 다수의 대출(대차대

조표상의 자산항목)과 예금(대차대조표상의 부채 항목)을 다각화하여, 덜 위험하고 유동화가 쉬운 저축을 위험하고, 유동화가 쉽지 않은 투자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개수 n 이 커질수록 대출포트폴리오가 분산되고, 대수의 법칙으로 인해 각 기업 투자안의 현금흐름 \tilde{y} 이 기대수익 $E(y) \geq K+R$ 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은행은 각 사업이 가진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며, 감시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얻어 예금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대부자가 직접 차용자를 감시하는 상황과 은행을 통해 감시를 대리하는 상황은 [그림 1]에 묘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대리감시 기능 덕분에 은행은 위험성이 있는 다수의 대출을 다각화하여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의 평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은행 덕분에 사업에 대한 총 감시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대부자들에게 안전한 예금을 제공하여 사회 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

3. 모형의 발전과 이를 통한 금융정책 제언

후속 연구들은 기존 모형들이 세웠던 다소 강한 가정들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모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통해 수상자들은 금융안정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먼저, 다이아몬드 디비그 모형은 예금보험의 도입으로 은행이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상자들은 Diamond and Dybvig(1986)와 Dybvig(1993) 등을 통해 은행이 무보험 예금을 유

동성 제공과 상관없는 투기적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은행이 큰 대출 손실을 경험하거나 예금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경우 예금보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들은뱅크런 사태와 은행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이아몬드의 대리감시 모형도 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은행뿐 아니라 채권시장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Diamond(1989)는 기업이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이 가지고 있는 감시수단이 없을 때, 어떻게 그동안 쌓아온 신용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보였다. 장기적으로 기업은 신용을 쌓을 수 있고, 이는 대부자와 차용인 간에 자금 조달비용을 낮춰 현금흐름이 원활해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후 Diamond(1991)는 동적 모형에서 축적된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신용상태에 따라 자신을 감시하는 은행이나 그렇지 않은 대출기관을 통해 차입할 수 있음을 보였다. 관찰 가능한 신용 품질 등으로 대표되는 신용등급이 중간 수준인 기업은 은행 차입에 의존하게 된다. 기업 중 신용등급이 높은 곳은 이미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과거부터 쌓아온 신용을 상실하게 되는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기에 굳이 은행이 아니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저렴하게 직접대출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감시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비싸게 대출을 받아야 하고, 오랜 기간 신용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다이아몬드는 성공적인 기업의 신용 축적은 해당 기업의 도덕적 위

해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 금융시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다이아몬드는 Diamond and Rajan(2001)을 통해 대리감시 모형과 요구불 예금(demand deposits)을 결합하여 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창출하는 경로를 밝혔다. 그들의 모형은 은행이 정보를 덜 가진 일부 대부자들을 대신하여 차용인에게 대출하는 위임 대리인(delegated agent)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또 다른 채널을 제시했다. 대부자의 대출은 시장에서 공정한 가치로 평가되기 어렵고, 그렇기에 유동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자가 신규 사업을 하거나 추가적인 소비를 위해 대출을 유동화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대부자가 자신의 대출을 판매하거나, 대출을 담보로 돈을 더 빌린다면, 그가 차용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대부자가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상환을 요구할 경우 그들의 대출은 비유동적(illiquid)이게 되며, 이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이 발생할 수 있다. 불량한 신용을 능숙하게 회수할 수 있는 은행이 존재하고, 이들이 예금자에게 매력적인 이율을 제공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설령 그러한 대출 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대출을 유동화한 뒤에는 차용인들에게서 상환을 끌어내기 위해 은행이 자신의 능력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Diamond and Rajan(2001)은 오히려 취약한 은행의 자본구조가 은행이 차용인을 선별하고 차용인이 채무 불이행 시 그들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을 보였다. 은행이 차용인

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대출한 자산에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요구불 예금의 존재와 예금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자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되고 예금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되어 파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금자가 은행을 감시할 필요 없이 차용인을 정직하게 감시하는 것은 은행 자체의 이익이 된다. 은행의 자본구조가 뱅크런 사태에 취약하다는 특성 때문에, 대리감시 모형처럼 은행은 정보가 덜 알려진 일부 대출기관을 대신하여 차용자에게 대출하는 위임 대리인(delegated agent)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는 또한 최적 금융 규제와 은행의 거시적 특성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주었다. 예를 들어, Diamond and Rajan(2000) 연구를 통해 은행의 자본요건의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은행의 대출 자금이 투입된 투자사업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대출 다각화를 통해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예금자들은 사업의 수익성이 낮을 때 비효율적으로 뱅크런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은 예금 용자의 일부분을 주식이나 장기 부채 또는 자본으로 대체하게 된다. 다만 자본은 예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 최적 금융 규제가 된다. 추가적으로 Diamond and Rajan(2005)은 경쟁적인 은행 부문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모형화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은행이 대출해 준 일부 사업이 특정한 확률로 지연되며 경제에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야기하는 상황을 연구했다. 모형은 유동성 충격이 클 경우 이 충격이 은행 간에 전염되고, 은행 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다이하몬드는 Diamond and Rajan(2006; 2012) 등을 통해 만약 금융위기가 지급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문제라면 은행 구제금융 정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들은 실패한 은행을 무조건 구제해줄 경우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을 만들어 내고, 결국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경기가 좋을 때 미리 은행에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 대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경기가 안 좋아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내릴 때 발생하는 비효율이 완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명목 예금의 가치를 낮출 경우, 유동성 부족이 은행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III. 금융위기와 신용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1. 대공황 당시 신용의 중요성

버냉키에 따르면 은행의 부실이 장기화될수록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은행 유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의 거래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는 신용 공급을 감소시키며 통화시장의 충격을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부실로 신용 경로에서 악순환이 지속되어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버냉키는 신용중개 비용(cost of

credit intermediation) 개념을 구체화시켜 부실 은행이 1930년대 대공황에서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피력했다.

그는 Bernanke(1983)를 통해 대공황의 주요 원인은 은행 시스템의 붕괴로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은행의 신용중개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GDP 구성요소 중 부실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경기침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당시 은행 실패의 현황과 통화량 및 국민순생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1933년 말에는 1929년도에 비해 도산과 합병으로 인해 은행의 숫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통화량은 33%, 국민순생산은 53% 하락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은행, 통화량, 그리고 총생산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버냉키는 대공황의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신용중개 비용을 최종 대부자로부터 건전한 차입자에게 자금이 전달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대출심사, 회계비용, 또는 불량한 차입자를 만났을 때의 예상되는 손실 등을 포괄한다. 대공황 당시 예금자들은 은행의 생존을 우려하며 बैं크런 사태를 야기했고, 상당수의 은행이 예금 부족으로 모든 인출을 처리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을 내며 가지고 있던 자산을 급하게 매각했다. 또한 बैं크런 사태는 신용중개 비용을 급증시켜 상당수의 은행이 새로운 대출을 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인출에 대비해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는 자산에 대출을 제공했다. 상당수의 은행이 파산하는 가운데 대출 금리마저 상승하였고, 현금 여력이 좋지 않은 많은 기업

과 가계는 투자 또는 소비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가 크게 악화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대공황이 순수한 통화 효과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원인을 밝히려 노력했다. 은행이 붕괴할 경우, 은행이 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 자본이 사라진다. 지식 자본의 예로는 차용인이 대출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다는 정보와 이러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등의 정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식 자본을 축적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축적된 지식을 쉽게 다른 은행에 이전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은행 시스템이 고장 나면 그것을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버냉키는 이처럼 통화정책이 단순히 통화량뿐만 아니라 신용 경로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확산되는 경로를 짚었다.

2. 신용경로를 통한 경기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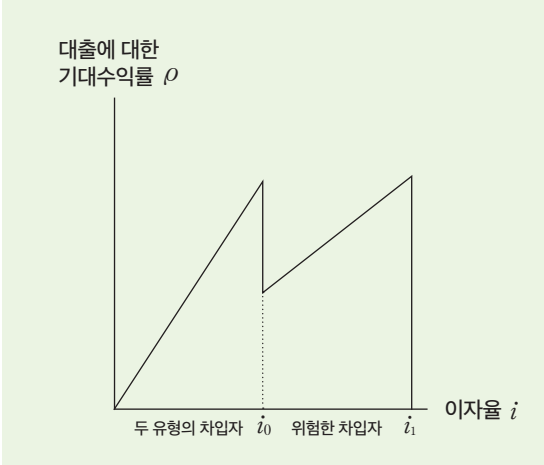
대공황이 어떻게 오래 지속되었는지 설명하면서 Bernanke(1983)는 두 가지 경로를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부실한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기 때문에 신용 공급이 감소한다. 또한 신용중개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과 가계가 더 적은 양의 부채를 요구함으로써 신용 수요 역시 감소한다. 이러한 신용 경로를 통해 신용의 총량이 감소하여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다는 것을 밝힌 것이 Bernanke(1983)의 중요한 공헌이다. 다만 관련 논문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ies) 문제가 어떻게 금융

마찰(financial frictions)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해서는 모형화하지 않았다.

간접금융시장에서 사업의 수익성은 은행과 같은 대부자는 관찰할 수 없고, 차입자인 기업만 관찰할 수 있다. 즉, 대부자와 차입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은행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사업을 선별(screening)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차입자가 대출을 받은 후에 고위험 사업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사후에 감시비용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 마찰이 어떻게 은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Stiglitz and Weiss(1981)를 통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경제에 위험한 투자계획을 가진 차입자들과 위험하지 않은 투자계획을 가진 차입자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은행은 차입자들에게 낮은 이자율 i_0 과 높은 이자율 i_1 을 제시(즉, $i_0 \leq i_1$)할 수 있다. 위험하지 않은 투자계획을 지닌 차입자들은 이자율이 i_0 보다 낮은 경우에만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사업에 성공할 경우 수익률이 매우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위험한 계획을 지닌 차입자들은 이자율이 i_0 보다 높고 i_1 보다 낮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고자 한다. 위험한 사업인 만큼 성공할 경우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은행이 이자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은행의 대출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이자율을 i_0 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위험한 투자계획을 가진 차입자들도 대출을 받

[그림 2] 이자율에 따른 대출에 대한 은행의 기대수익률



출처: Stiglitz and Weiss(1981)

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게 되고, 은행의 기대수익률은 i_0 보다 높아지면 순간 그들의 존재로 급감하게 된다. 차입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위험한 사업을 할수록 은행의 기대수익률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행은 이자율을 높여 수익률을 높이고 싶지만, 무작정 높일 경우 위험한 사업을 하려는 차입자들만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때, 은행은 높은 이자율 i_1 을 책정해 고위험 차입자들을 대상으로만 대출을 제공하거나, i_0 의 낮은 이자율을 책정하여 두 유형의 차입자들 모두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은행은 너무 위험한 투자계획을 지닌 차용자들을 골라내기 위해 선별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차용자 모두에게 낮은 이자율 수준 i_1 을 제공하고, 적은 양만큼만 대출해줄 수 있다. 이자율의 경직성을 수용하는 대신, 기존 신용거래 내역, 대출에 대한 담보의 가치 등 비가격 대출 조건(non-price terms of lending)을 고려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마찰의 존재로 적

은 양의 신용이 시장에 공급되고, 이로 인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한다.

버냉키는 Bernanke and Gertler(1989), Bernanke et al.(1999) 등을 통해서 위와 같은 금융 마찰 요소를 거시경제학 모형에 본격적으로 반영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불황일 때는 차입자가 대출금을 건전하게 쓰는지 은행이 감시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에 비례하여 경제에 자손손실 비용이 커지고, 이는 금융 마찰 요소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더 큰 폭으로 투자를 감소시킨다. 이처럼 버냉키는 차입 주체의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적인 충격으로 증폭되는 소위 금융 가속 경로(financial propagation mechanism)를 구체화시켰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중소기업이 비대칭적인 정보 문제로 더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경기침체에 경제활동이 더 크게 감소함을 예측했다. 이후 이러한 예측은 Bernank et al.(1996) 등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3.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와 효과

버냉키는 금융 가속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서 신용 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차용인의 외부 자금 조달비용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는 은행대출 경로(bank lending channel)와 대차대조표 경로(balance sheet)를 통해 발생한다. 은행대출 경로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축소할 경우, 은행은 예금이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은행 대출 총액을 감소시킨다. 물론 자기신용으로 자

본시장에서 기업어음이나 주식 등을 발행하여 상환되는 대출금만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실물경제는 해당 경로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자기신용이 취약하여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이나 가계의 경우 은행대출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이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투자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⁷⁾ 대차대조표 경로는 통화정책이 기업이나 가계 등 자금수요자의 대차대조표에 변화를 가져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가 있다.⁸⁾ 예를 들어 긴축 통화정책에 의해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은 미래 매출과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대차대조표상에 순 자산가치가 감소한다. 이 경우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기업투자 감소로 실물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이와 유사한 경로로 가계의 내구재 및 주택구입 같은 소비지출도 감소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기업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경제주체들의 재무상태 역시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는 현재도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평가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버냉키는 Bermanke and Mihov(1998)와 Bermanke

and Kuttner(2005) 등의 연구를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효과와 그 크기를 측정하는 문제는 다양한 거시경제변수가 얽혀 있어 전통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는 Bermanke and Mihov(1998)를 통해 VAR 모형(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발전시켜 통화정책의 효과를 측정했다. 특히, 해당 모형은 다른 단순한 지표와는 달리 다른 국가나 기간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Bermanke and Kuttner(2005)를 통해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했다. 그는 추정치를 통해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반응과 그 반응의 경제적 원인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실행된 통화정책의 경우 미래의 주식 또는 배당금 수익에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였다. 위기는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절정에 달했고, 이는 미국 금융시장에 금융 공황(financial panics)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공포심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

7) 해당 경로는 금융자유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예금이 감소해도, 은행이 CD 등을 발행해 자금을 무리 없이 조달할 경우 은행 대출여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8) 한국은행(2005), 정운찬·김홍범(200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게 확산되었고, 주요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과 그들에 대한 정부 구제로 이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금융 공황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 공황은 신용중개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버냉키 전 의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내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유발된 대침체(Great Recession)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다. 그는 미국의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고, 국채 등을 사들여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QE) 정책을 펼쳤다. 거기에 더해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을 팔아 만기 6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매입하는 소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실시했다. 이는 급격한 통화량 증가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조달금리를 낮춰 산업계의 자금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버냉키는 이처럼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융위기에 맞서 정책을 집행했던 정책가의 역할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Bernanke(2018)는 다양한 금융 경로가 공황의 심각성에 미친 이질적인 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이로 인해 공황이 발생하며 신용 공급 감소를 초래

했다. 또한 가계 대차대조표가 악화되며 부채 축소(deleveraging)와 가계 지출 감소를 초래했다.⁹⁾ 특히 버냉키는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경기침체의 주요 동력이 금융 공황이었다고 결론 지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른 수상자들의 연구와도 연결되어 있다. Diamond and Dybvig(1983)는 예금보험이나 최종 대부자의 부채 시 저축이 투자로 전환되는 과정은 공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실현적인 공황은 기초 경제지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에 의해 촉발됨을 보였다. 이와 맞물려 Bernanke(2018)는 금융위기를 촉발한 근본적인 충격은 주택 부문의 부진이었지만, 금융시장에 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극적인 경기침체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즉, 다이아몬드와 디비그 모형이 예측했듯, 자기실현적인 공황이 금융위기를 악화시켰다. 또한 대출자들이 다른 자금원으로 쉽게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면 은행이 신용 공급을 줄여도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Bernanke(1983)와 Diamond(1984)에서 보았듯이, 은행은 그들이 대출자들을 선별 또는 감시를 통해 대출자에 대해 독특한 정보를 얻는다. 그러므로 금융위기 당시에도 기업들은 은행을 새로운 대출기관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었고, 이는 상당수 기업들이 자금 경색에 처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9)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은 가계나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디레버리징은 자금난을 겪는 민간부문이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들에게는 손실을 야기한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문에서 2022년 노벨 수상자들의 연구를 통해 은행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금융위기의 확산과 방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다이아몬드와 디비그의 업적을 요약하자면 은행은 위험한 사업을 예금자를 대신하여 감시하며 가치 있는 정보생산을 하고, 이를 통해 저축과 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은행은 만기 전환 기능을 통해 요구불 예금과 같은 유동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대출 등의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행은 시장에 유동성을 창출(liquidity creation)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만기 전환 기능이 예금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다 보니뱅크런 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비그는 은행이 대부자들을 대리하여 차입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덕분에 시장에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들의 모형은 뱅크런 외에 여러 형태의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위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버냉키는 건전한 은행의 존재가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이전하는 비용(신용중개 비용)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설명했다. 이로써 이러한 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이 조달될 수 있음을 보였다.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이 많은 은행이 동시에 파산하면 신용중개 비용이 극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의 상당 부분이 작동을 멈추게 된다. 이때, 은행이 대부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축적된 지식이 필요하며, 이 지식을 다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은행 파산의 결과는 시장에 매우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장기적이다. 그는 은행의 중요성과 은행 고유의 취약성에 대한 수상자들의 이론적 통찰력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현대 은행 규제 토대를 제공했다.

물론 수상자들의 연구 또는 정책 조언이 최종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 부의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저축이 생산적인 투자로 원활하게 전환되도록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방법은 오늘에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올해 수상자들의 기초 작업과 이후 후속 연구는 우리 사회가 금융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장참여자들이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영진, 「금융기관의 존재이론에 대한 고찰」, 『경영논집』, 제45권, 2011, pp. 49~71.
- 정운찬·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제4판)』, 울국출판사, 2007.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2005.

- Bagehot, Walter, *Lombard Street: A description of the money market*, John Wiley and Sons(1999 edition), 1873.
- Bernanke, Ben S., “The real effects of disrupted credit: Evidenc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Fall*, 2018, pp. 251-322.
- Bernanke, Ben S., and Kenneth N. Kuttner, “What Explains the Stock Market’s Reaction to Federal Reserve Policy?,” *The Journal of Finance*, 3, 2005, pp. 1221-1257.
- Bernanke, Ben S., and Kevin Carey, “Nominal wage stickiness and aggregate supply in the Great Depress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1(3), 1996, pp. 853-883.
- Bernanke, Ben S., and Mark Gertler, “Agency costs, net worth, and business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79(1), 1989, pp. 14-31.
- _____, “Financial fragility and economic performa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 1990, pp. 87-114.
- Bernanke, Ben S., Mark Gertler, and Simon Gilchrist, “The financial accelerator in a quantitative business cycle framework. In: John Taylor and Michael Woodford(eds),” *Handbook of Macroeconomics*, Volume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p. 1341-1393.
- Bernanke, Ben S., and Mihov Ilian, “Measuring Monetary Polic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3), 1998, pp. 869-902.
- Diamond, D. W., “Monitoring and Reputation: The Choice between Bank Loans and Directly Placed Deb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 1991, pp. 698-721.
- _____, “Monitoring and Reputation: The Choice between Bank Loans and Directly Placed Deb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4), 1991, pp. 689-721.
- _____, “Seniority and maturity of debt contrac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3(3), 1993, pp. 341-368.
- Diamond, D. W., and P. H. Dybvig, “Bank runs, deposit insurance, and liquid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1, 1983, pp. 401-419.
- Diamond, D. W., and Raghuram G. Rajan, “A theory of bank capital,” *Journal of Finance*, 55, 2000, pp. 2431-2465.
- _____, “Liquidity risk, liquidity creation and financial fragility: A theory of bank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9, 2001, pp. 287-327.

_____, “Liquidity shortages and banking crises,” *Journal of Finance*, 60, 2005, pp. 615-647.

_____, “Money in a theory of bank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6, 2006, pp. 30-53.

_____, “Fear of fire sales, illiquidity seeking, and credit freez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 2011, pp. 557-591.

_____, “Illiquid banks, financial stability, and interest rate poli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0, 2012, pp. 552-591.

Dybvig, Philip H., “Remarks on banking and deposit insurance,” *Federal Reserve Bank of Saint Louis Review*, January/February 1993, 1993, pp. 21-24.

_____, “Remarks on banking and deposit insurance,” *Federal Reserve Bank of Saint Louis Review*, January/February 1993, 1993, pp. 21-24.

Friedman, Milton, and Anna Schwartz,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pp. 1867-1960.

Stiglitz, Joseph E. and Weiss, Andrew,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1, 1981, pp. 393-410.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국세청, 2023년도 인플레이션 조정안 발표]

금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한 인플레이션 조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Revenue Procedure 2022-38을 공개함^{1), 2), 3)}

- 이번에 공개한 인플레이션 조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미국 국세청(IRS)은 2022년 10월 18일, 2023년 세

■ 2023년 조정되는 과세소득 구간은 <표 1>과 같음

<표 1> 2023년 과세소득 구간

(단위: 달러, %)

구분	2022년 기준 과세소득 구간(달러)	2023년 조정되는 과세소득 구간(달러)	세율(%)
공동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개인	20,550 미만	22,000 미만	10
	20,551 ~ 83,550	22,001 ~ 89,450	12
	83,551 ~ 178,150	89,451 ~ 190,750	22
	178,151 ~ 340,100	190,751 ~ 364,200	24
	340,101 ~ 431,900	364,201 ~ 462,500	32
	431,901 ~ 647,850	462,501 ~ 693,750	35
	647,850 초과	693,750 초과	37
미혼 개인	10,275 미만	11,000 미만	10
	10,276 ~ 41,775	11,001 ~ 44,725	12
	41,776 ~ 89,075	44,726 ~ 95,375	22
	89,076 ~ 170,050	95,376 ~ 182,100	24
	170,051 ~ 215,950	182,101 ~ 231,250	32
	215,951 ~ 539,900	231,251 ~ 578,125	35
	539,900 초과	578,125 초과	37
부동산 및 신탁	2,750 미만	2,900 미만	10
	2,751 ~ 9,850	2,901 ~ 10,550	24
	9,851 ~ 13,450	10,551 ~ 14,450	35
	13,450 초과	14,450 초과	37

출처: IBFD, "IR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3-Part I,"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9_us_4.html

1)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3,"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3>, 검색일자: 2022. 10. 20.
 2) IRS, "Revenue Procedure 2022-38," <https://www.irs.gov/pub/irs-drop/rp-22-38.pdf>, 검색일자: 2022. 10. 20.
 3)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2,"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2>, 검색일자: 2022. 11. 8.

<표 2> 2023년 AMT 면제금액

(단위: 달러)

구분	AMT 면제금액		28% 세율의 AMT가 적용되는 기준금액	
	2022년 면제금액	2023년 조정되는 면제금액	2022년 과세초과금액	2023년 조정되는 과세초과금액
공동신고서류제출하는 기혼 개인	118,100	126,500	206,100	220,700
미혼 개인	75,900	81,300	206,100	220,700
부동산 및 신탁	26,500	28,400	206,100	220,700

출처: IBFD, "IR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3-Part I,"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9_us_4.html

■ 2023년 조정되는 대체 최저세(AMT) 면제금액을 공시함

- 저소득 및 중간소득 납세자에게 AMT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면제금액 구간을 공시함
 - 면제금액을 초과하였으나 지정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26% 세율로 AMT를 부과하고, 지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8% 세율로 AMT를 부과함
- 아동세(kiddie tax) 대상 아동에 대한 2023년 AMT 면제금액은 ① 아동의 근로소득에, 2022년 보다 600달러⁴⁾ 늘어난 8,800달러⁵⁾를 더한 금액 또는 ② 독신 납세자의 일반 AMT 면제금액 중 적은 금액임

■ 2023년 아동세(kiddie tax)가 적용되는 불로소득 기준액이 공시됨

-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이자, 배당금 및 기타 불로소득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동세 부과 대상임

- 2023년 아동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1,250달러 또는 자녀의 불로소득에 적용되는 항목별 공제액 중 큰 금액임
- 자녀에게 불로소득 외 근로소득이 없고, 자녀의 불로소득이 1만 2,500달러 미만인 경우 부모는 부모의 납세신고서에 자녀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캐나다 - 국세청, SR&ED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지침 공시]

■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2년 10월 14일, 과학 연구 및 실험개발(SR&ED)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 지침을 공시함⁶⁾

4) 2022년 11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3만원임

5) 2022년 11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19만원임

6) CRA, "Recapture of SR&ED Investment Tax Credit Policy,"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recapture-investment-tax-credit-policy.html#s6_0, 검색일자: 2022. 10. 20.



■ 이번 지침을 통해 SR&ED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 동안 실제 용도로 사용된 투자에 관해서만 세금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함

- SR&ED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수행자가 전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장비를 취득하여 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를 받았으나 이후 장비를 미사용·폐기하거나 또는 SR&ED를 위해 임차한 사무실을 판매·상업적 용도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 SR&ED를 이유로 청구인이 적용받은 ITC를 회수할 방침임
-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자본 성격의 지출은 SR&ED 세금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환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에 관하여 설명함

- 급여 또는 간접비와 관련한 지출에 관하여 받은 ITC는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기업이 SR&ED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개발비용으로 인건비, 재료비, 간접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재료를 처분하거나 상업 용도로 전환한 경우 재료비에만 환수 규정이 적용됨을 설명함
- ITC 적용을 받은 자산을 폐품으로 판매한 경우 판매수익이 자산 총비용의 10% 미만인 경우 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ITC 적용을 받은 자산을 상업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비적격 당사자에게 처분할 당시 공정시장

가치가 자산 총비용의 10% 미만인 경우 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특정 자산이 SR&ED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자본자산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상황에서 비정규 구매자(non-arm's length purchaser)에게 처분하는 경우 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캐나다 국세청(CRA)은 “non-arm's length”에 관하여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연결된 개인 간의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비정규적 관계는 개인과 파트너십 또는 기업 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⁷⁾
 - 자본자산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비정규 관계의 새로운 기업에 대한 SR&ED 자본자산의 처분을 허용함

■ 투자세액공제(ITC)로 적격 SR&ED 지출에 대해 최소 15%, 최대 35%의 공제율이 적용됨

- 기업(특정 CCPC 제외), 개인사업체, 파트너십의 파트너, 신탁의 수혜자는 15%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됨
 - 캐나다가 통제하는 민간기업(CCPC)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적격 SR&ED 지출에 대해 300만 캐나다달러를 한도로 35%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7) CRA, “Definition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definitions-letter-a-business.html#Nn_rms_lnght_tmsctn, 검색일자: 2022. 11. 8.

[아일랜드 - 2023년 예산안 발표]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2022년 9월 27일, 2023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8), 9)}
 - 전체 예산안은 총 110억유로¹⁰⁾이며, 이 중 41억 유로¹¹⁾ 규모의 일회성 조치(once-off measures)가 포함됨
 - 금번 예산안은 인플레이션 및 급격한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책과 대응조치가 주를 이룸
- (법인세) 법인세 측면에서는 에너지비용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¹²⁾
 - 법인세 속지주의(territorial system of corporation tax) 도입 가능성과 함께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함
 -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율을 50% 감면하는 지식개발박스(Knowledge Development Box)를 2027년

- 까지 4년 연장함
- TV,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의 일부를 공제하는 영상제작 세제혜택(film corporate tax credit)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직원 주주 프로그램(Key Employee Engagement Programme: KEEP)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¹³⁾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측면에서는 총 11억유로¹⁴⁾ 이상 규모의 소득세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⁵⁾
 - 개인소득세 관련 세액공제를 강화함
 - 소득 표준세율 구간을 미혼 개인의 경우 4만유로¹⁶⁾로, 외벌이 부부의 경우 4만 9천유로¹⁷⁾로 인상함
 - 개인 세액공제(personal tax credit)를 1,700유로¹⁸⁾에서 1,775유로¹⁹⁾로 인상하였으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credit) 환급한도를 1,700유로²⁰⁾에서 1,775유로²¹⁾로 인상함
 - 또한, 가정 간병인 세액공제(home carer tax

8) 아일랜드 정부, Budget 2023, 2022. 9. 27., <https://www.gov.ie/en/campaigns/budget/>, 검색일자: 2022. 10. 13.

9) Tax Notes International, Ireland Unveils €1.7 Billion Tax Plan To Ease Inflation Pressure, Volume 108, 2022, p. 87.

10) 2022년 10월 1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조 2,369억원임

11) 2022년 10월 1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조 6,788억원임

12) IBFD, "Ireland - Direct Taxes: 2023 Budget Would Affirm Commitment to Corporate Minimum Tax, Increase Standard Tax Bands for Individuals," 2022. 9.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8_ie_2.html, 검색일자: 2022. 10. 13.

13) 직원 주주 프로그램(KEEP)은 중소기업의 인재유치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취득시점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처분 시에만 과세하는 제도임

14)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5,463억원임

15) 아일랜드 정부, Statement by Minister Donohoe on Budget 2023, 2022. 9. 27., <https://www.gov.ie/en/speech/0ed8e-statement-by-minister-donohoe-on-budget-2023/>, 검색일자: 2022. 10. 18.

16)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23만원임

17)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89만원임

18)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9만원임

19)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0만원임

20)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9만원임

21)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0만원임



- credit)를 1,600유로²²⁾에서 1,700유로²³⁾로 인상함
- 외국인 및 해외근무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의 소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특정 외국인근로자 구제 프로그램(Special Assignee Relief Programme: SARP)²⁴⁾의 종료일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적격 소득수준을 현행 7만 5천유로²⁵⁾에서 10만유로²⁶⁾로 상향 조정함
 -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이거나, 해외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해외소득공제(Foreign Earnings Deduction: FED) 또한 2025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함

- 3월 1일부터 중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부가가치세율인 13.5%로 복귀(revert)될 예정임
- 2023년 1월 1일부터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9%에서 0%로 경감될 예정임
- 첫 부동산 취득 시 소득세 및 예금이자보유세(DIRT)를 환급하는 Help-to-buy 세제혜택은 2024년까지 현행 상태로 연장될 예정임
- 빈집세(Vacant Homes Tax)가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2개월 기간 동안 30일 미만으로 점유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빈집세가 적용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이희경 회계사>

■ (기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이외의 세목에 대해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⁷⁾

- 탄소세를 CO₂ 1톤당 7.50유로²⁸⁾ 인상하여 41유로²⁹⁾에서 48.5유로³⁰⁾로 인상될 예정임
 - 2022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 연료에 우선 적용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모든 연료에 적용함
- 환대(hospitality) 및 관광산업에 대해 임시적으로 적용되었던 9%의 부가세 경감세율을 2023년

[프랑스 - 2023년도 예산안 발표]

- 프랑스 정부는 2022년 9월 26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가구와 기업 지원, 고용 증진, 경제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함³¹⁾
-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조세정책은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22) 2022년 10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7만원임

23) 2022년 10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1만원임

24) 특정 외국인근로자 구제 프로그램(SARP)은 아일랜드에서 근무하는 특정 외국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

25) 2022년 10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22만원임

26) 2022년 10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163만원임

27) IBFD, "Ireland - Indirect Taxes: 2023 Budget Would Raise Carbon Taxes, Extend Help-to-Buy Scheme," 2022. 9.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8_ie_3.html, 검색일자: 2022. 10. 13.

28)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544원임

29)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640원임

30)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185원임

31)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0273_projet-loi#_Toc115111280, 검색일자: 2022. 10. 14.; IBFD, "Finance Bill for 2023 Phases Out Contribution on Added Value of Enterprises, Maintains Minimum Excise Duty Rates on Electricity," 2022. 9.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9-28_fr_1%23tns_2022-09-28_fr_1, 검색일자: 2022. 10. 14.

des Entreprises: CVAE) 인하, 전기에 대한 최소 소비세율 적용 기한 연장, 주요 스포츠 경기 조세 제도의 조정이 있음

-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의 점진적 폐지와 관련하여 2023년 기업의 최종 납부세액을 2023년에는 50% 감면하고, 2024년에는 전체를 폐지할 예정이다³²⁾
- 전기에 대한 최소 소비세율 적용 기한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함
- 국제 스포츠 대회 프랑스 조직의 경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요건인 자회사 규정을 개정하고³³⁾ 프랑스 원천 소득의 ‘지불 또는 지급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함³⁴⁾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은 물가상승률(5.4%)을 반영하여 인상함

■ 국회는 ‘초과이익(superprofit)’과 관련한 한시적 부담금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차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가적

인 조세정책을 포함함

- 정부의 초과이익과 관련한 최종안은 매출이 7억 5천만유로³⁵⁾를 초과하는 프랑스 법인의 프랑스 개인 거주자에 대한 배당액 및 자기주식취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2022년 및 2023년의 이익에 적용되는 세율을 33%로 함
 - 2022년 및 2023년의 배당액 및 자기주식취득액이 2017~2021년에 배당된 연평균 금액의 1.2배인 경우에 부과됨
 - 국회는 적용 세율로 35%를 제안하였으나, 정부는 33%를 제안하여 논의 중임³⁶⁾
 - EU는 2022년 10월 6일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하여 한시적인 연대 부담금을 승인하면서, 보충적인 국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정책은 이를 반영한 것임³⁷⁾
- 정부는 경감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이익 기준 인상, 자녀양육비용의 공제한도 인상, 코로나19 관련 재화에 대한 경감 부가가치세율 적용 기한 연장의 정책을 추가함³⁸⁾
 - 15%의 경감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소규모

32)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상품판매 및 용역제공) 및 추가소득(고정자산 양도소득 등)에서 생산비용 등 기타비용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2021년 세율을 1.5%에서 0.75%로 인하하였음

33) 프랑스 「상법」 제L233-1조(자본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는 자회사)의 국제 스포츠 대회의 프랑스 조직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예산안은 직·간접적인 보유도 자회사의 개념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함

34) 국제 스포츠 경기의 조직·운영을 담당하는 프랑스 기구에 대하여 경기 관련 소득(수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원천징수세 등 각종 조세를 면제하는 기존의 조항을 2024 파리 올림픽을 대비하여 개정함

35)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519억 5,750만원임

36) Assemblée nationale, “AMENDEMENT,”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amendements/0273A/AN/3486.pdf>, 검색일자: 2022. 11. 2.; IBFD, “National Assembly Votes for Increased Taxation of ‘Super-dividends’ from Large Companies,” 2022. 10.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4_fr_2%23tns_2022-10-14_fr_2, 검색일자: 2022. 11. 2.

3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2년 9월호, 2022, p. 17.; EUR-Lex, “Council Regulation(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2R1854>, 검색일자: 2022. 11. 2.

38) IBFD, “Government Pushes Adoption of First Part of Finance Bill for 2023,” 2022. 10.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20_fr_1.html, 검색일자: 2022. 11. 2.



기업의 이익 기준을 3만 8,120유로³⁹⁾에서 4만 2,500유로⁴⁰⁾로 인상함

- 비용의 50%가 소득에서 공제되는 자녀양육 비용의 최대 금액을 2,300유로⁴¹⁾에서 3,500유로⁴²⁾로 인상함
-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한 재화에 적용되던 5.5%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4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도록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사용자의 사회보장부담금은 물가 연동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1·2사분기에는 24.92%(고정요율과 임금변동요율을 합한 총부담률)에서 일시적으로 7.07%가 경감되고,⁴⁵⁾ 2023년 3·4사분기에 납부 예정인 부담금은 2025년까지 납부가 연장됨⁴⁶⁾

- 전기에 대한 6%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1사분기에도 적용될 예정임

[벨기에 - 2023/2024년도 예산안 발표]

■ 벨기에 정부는 2022년 10월 11일, 2023/2024년도 예산안에 합의함⁴³⁾

- 기업과 관련하여 결손금 공제 허용한도를 인하고, 사회보장부담금을 경감함
- 법인세와 관련하여 100만유로⁴⁴⁾를 초과하는 결손금 공제 허용금액을 70%에서 40%로 인하함. 이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

■ 특정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 분담금을 도입함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는 MWh당 180유로,⁴⁷⁾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MWh당 130유로⁴⁸⁾ 이상의 소득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 이 조치는 EU가 2022년 10월 6일 한시적인 초과이익 분담금 도입을 결의함에 따른 것임⁴⁹⁾

39)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344만원임

40)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59만원임

41)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2만원임

42)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0만원임

43) IBFD, "Government Proposes Loss Carry-Forward Restriction, Windfall Profits Tax in Multiyear Budget Agreement," 2022.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2_be_1.html, 검색일자: 2022. 10. 14.

44)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억 158만원임

45) Sécurité sociale/Entreprise, "Les cotisations," <https://www.socialsecurity.be/employer/instructions/dmfa/fr/latest/instructions/socialsecuritycontributions/contributions.html>, 검색일자: 2022. 11. 8.

46) premier.be, "Un pays qui protège," https://www.premier.be/sites/default/files/articles/20221011_begroting%202324%20FR.pdf, 검색일자: 2022. 11. 8.

47)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만원임

48)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만원임

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2년 9월호, 2022, p. 17.; EUR-Lex, "Council Regulation(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2R1854>, 검색일자: 2022. 11. 2.

- 입법안에 따르면 부과금액은 등록된 원유정제 기업은 수입원유 1톤당 6.9유로,⁵⁰⁾ 등록된 디젤·경유·휘발유 기업은 제품의 1입방미터(cubic meter)당 7.8유로⁵¹⁾임⁵²⁾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3.7%에서 3.8%로 0.1%p 인상함
- 남녀 공통 정년을 65세로 통일함

- 개정안을 통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2030년까지 국가연금에 대한 자금 조달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며,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스위스 - 부가가치세 인상을 포함하는 국가연금 개정안 승인]

- 스위스는 9월 25일 실시된 연방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연금 개정안(AHV 21)을 승인함⁵³⁾

- 해당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포함한 세제상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7.7%에서 8.1%로 0.4%p 인상함
 - 일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하된 부가가치세율(reduced VAT rate)을 기존 2.5%에서 2.6%로 0.1%p 인상함
 - 숙박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오스트리아 - 2023년 연방 예산 승인]

- 오스트리아 연방총리는 2022년 10월 12일 2023년 연방 예산안을 승인함⁵⁴⁾

- 해당 예산안은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및 생계비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에 대한 조정 등을 포함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23년 7월 1일부터 3만 1천유로⁵⁵⁾에서 6만 유로⁵⁶⁾ 사이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42%에서 40%로 인하함
 - 2023년부터 법인 소득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2024년 23%까지 인하함

50)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천원임

51)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원임

52) news.belgium, "Contribution de solidarité temporaire à charge du secteur pétrolier," <https://news.belgium.be/fr/contribution-de-solidarite-temporaire-charge-du-secteur-petrolier>, 검색일자: 2022. 11. 2.; IBFD, "Government Council Approves Proposal to Levy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 2022. 10.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31_be_1.html, 검색일자: 2022. 11. 2.

53) IBFD, "Swiss Voters Approve State Pension Reform and VAT Rate Increas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6_ch_1.html, 검색일자: 2022. 10. 16.

54) Bloombergtax, "Austria Cabinet Approves Draft Federal Budget Bill 202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7HBN70O000000?criteria_id=590512b607d53d59c0f5250e9a08ad2f&searchGuid=e3d42679-b8a2-43b8-a7c3-f8eb08ffc0d6&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 검색일자: 2022. 10. 16.

55)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228,630원임

56)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603,800원임



- 월 총소득 1,100유로⁵⁷⁾에서 1,800유로⁵⁸⁾ 사이의 근로자에게 생계비 전체에 대한 생계비 세액공제 청구를 허용함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에 대한 일부 공제 및 세액공제를 조정함
- 공제 가능한 취득 또는 생산 비용에 대한 자산 가치 한도를 800유로⁵⁹⁾에서 1천유로⁶⁰⁾로 높임
- 사업에 대한 지출과 관련하여 특정 자산과 관련한 취득 또는 생산 비용의 10%를 영업비로 공제하는 혜택을 도입하며, 환경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인 경우 취득 또는 생산비용의 15%를 영업비로 공제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포르투갈 - 2023년 예산법안 의회 제출]

- 포르투갈 정부는 2022년 10월 10일 2023년 예산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
 - 포르투갈은 해당 예산을 통해 원자재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국제무역의 제약,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⁶¹⁾
- 법인세와 관련한 공제가 신설되거나 일부 공제의 대상 기간 혹은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법인의 자동

차 취득과 관련한 세율이 변경됨⁶²⁾

- 일반 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2년이 적용되어 오던 세무상 결손금 공제 기한이 무제한으로 변경됨
 - 다만 일부의 경우 2023년부터 발생하는 결손금이나 공제가 연속적인 연도로 이어지는 결손금의 초년도 결손금에 대해서는 연간 공제 한도가 현행 70%에서 65%로 축소됨
 - 상기한 공제한도 축소는 상업 및 공업, 농업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나 회사 전환, 회사 구조조정 중 세무상 결손금의 이전, 조세중립 체제하에서 개인자산 형태의 자본기여 등에 대해 적용됨
- 대기업의 외국 고정사업장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경우, 그 고려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2년으로 확대함
 - 대기업의 외국 고정사업장이 기업 형태를 전환하는 경우 지분소득 면세와 회사청산 제도를 적용할 때 12년의 기준 기간을 고려하게 됨
- 세무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세대상 소득이 직전 3년 중 한 해에 발생하고 해당 소득이 3년 중 첫 해, 혹은 이후 2년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직전 2년간 적시에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2022년과 2023년 지자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에 대한 17%의 감면세율 적용 소득상한액

57)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69,403원임

58)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8,114원임

59)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41,384원임

60)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26,730원임

61) IBFD, "Individual Income Taxation: 2023 Budget Would Levy Up to 28% Tax on Crypto Gain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3, 검색일자: 2022. 10. 19.

62) IBFD, "Corporate Taxation: 2023 Budget Would Change Deduction of Corporate Tax Loss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2, 검색일자: 2022. 10. 19.

- 이 현행 2만 5천유로⁶³⁾에서 5만 유로⁶⁴⁾로 확대됨
- 2023년에서 2026년 사이 회사 구조 조정을 통해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 해당 세율을 2년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전년도에 발생한 전기 및 가스 비용의 초과액은 보조금을 차감한 후 2022년 과세소득에서 120% 공제가 적용됨
- 전기 또는 가스의 생산·이송·분배·거래나 정제된 석유제품의 생산, 혹은 폐기물 및 응집 연료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이 50% 이상 발생하는 회사는 제외됨
- 농업 기업은 기업 활동에 사용된 특정 상품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의 140%를 2022년과 2023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의 경우 현재 과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취득 비용이 6만 2,500유로⁶⁵⁾를 초과하는 경우 10%의 지자체 과세대상이 됨
- 반면 하이브리드 승용차와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세율은 2.5%, 7.5%, 15%로 인하됨⁶⁶⁾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일부 과세구간의 세율을 변경하였으며, 암호화자산의 과세 내용을 확정하고 일부 감면 및 공제사항을 확대함⁶⁷⁾

<표 3> 포르투갈 2022년 및 2023년 개인소득세 세율 비교

(단위: %, 유로)

2022년 ¹⁾			2023년 ²⁾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유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유로)
7,116유로 이하	14.5	-	7,479유로 이하	14.5	-
7,116유로 초과 10,736유로 이하	23	604.86	7,479유로 초과 11,284유로 이하	21	486.14
10,736유로 초과 15,216유로 이하	26.5	980.63	11,284유로 초과 15,992유로 이하	26.5	1,106.14
15,216유로 초과 19,696유로 이하	28.5	1,284.99	15,992유로 초과 20,700유로 이하	28.5	1,426.65
19,696유로 초과 25,076유로 이하	35	2,565.21	20,700유로 초과 26,355유로 이하	35	2,772.14
25,076유로 초과 36,757유로 이하	37	3,066.79	26,355유로 초과 38,632유로 이하	37	3,299.12
36,757유로 초과 48,033유로 이하	43.5	5,455.84	38,632유로 초과 50,483유로 이하	43.5	5,810.25
48,033유로 초과 75,009유로 이하	45	6,176.56	50,483유로 초과 78,834유로 이하	45	6,567.33
75,009유로 초과	48	8,426.51	78,834유로 초과	48	8,932.68

출처: 1) PwC World Wide Tax Summaries, Portugal: Individual - Taxes on personal income, <https://taxsummaries.pwc.com/portugal/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text=Residents%20in%20Portugal%20for%20tax,%25%20to%2048%25%20for%202022.>, 검색일자: 2022. 11. 9.

2) IBFD, "Individual Income Taxation: 2023 Budget Would Levy Up to 28% Tax on Crypto Gain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3, 검색일자: 2022. 11. 9.

63)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04만 9천원임

64)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009만 7천원임

65)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762만 2천원임

66) 현재 세율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경우 5%, 10%, 17.5%,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경우 7.5%, 15%, 27.5%임

67) IBFD, "Individual Income Taxation: 2023 Budget Would Levy Up to 28% Tax on Crypto Gain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3, 검색일자: 2022. 10. 19.



- 개인소득세 세율과 관련하여 각 소득구간의 금액이 2022년 예산안 대비 5.1% 인상되었으며, 두 번째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23%에서 21%로 인하됨
 - 암호화자산 소득의 경우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상업활동과 관련한 총소득의 85%를 순수익으로 간주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됨
 - 실제 상업활동이 없는 경우 매도가(판매일 현재 시장가치)와 취득액 사이의 차액을 양도 소득으로 결정하여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365일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가 면제됨
 - 고용 또는 자영업과 관련하여 청년 노동자의 최초 5년간 소득에 적용되던 감면율이 1, 2차 연도에는 50%(최대 12.5×SSI까지), 3, 4차 연도에는 30%(최대 7.5×SSI까지), 5차 연도에는 20%로 증가함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둘째부터 6세까지 적용되던 아동당 750유로⁶⁸⁾의 소득 공제가 900유로⁶⁹⁾로 확대됨
 - 아조레스 및 마데이라 제도는 소득공제 가능한 교육비 한도가 현행 800유로⁷⁰⁾에서 1천유로⁷¹⁾로 인상되며, 내륙 영토로 이사하는 경우 적용되는 임대비용 공제는 현행 502유로⁷²⁾에서 임대 첫해부터 3년간 1천유로까지로 인상됨
 - 추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101시간부터 50%가 감면되고, 비과세 거주자의 경우 현재 월 최저 임금자의 원천징수만 면제되고 있었으나 최초 50시간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면제됨
 - 자가 소비 목적 또는 소규모 생산 단위에서 생산된 잉여 에너지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연간 최대 1천유로까지 공제됨
- 일부 간접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석유 및 에너지 제품의 세금감면 혜택을 여객 운송 회사까지 확대함⁷³⁾
- 담배세와 차량유통세, 차량등록세, 그리고 알코올 음료 및 설탕이 첨가된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세금이 각각 4%p 가량 인상됨
 - 현재 담배세는 궐련 14%, 각련 15%, 시가류 25%, 물담배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알코올 음료는 종류 및 용량에 따라 8.34⁷⁴⁾~29.3유로⁷⁵⁾의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음⁷⁶⁾
 - 석유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금의 일부 감면 혜택이 여객운송 회사들로 확대되며, 해당 감면은 매 급유가 아닌 월 단위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예정임
-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68)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5만 1천원임

69)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6만 2천원임

70)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2만 2천원임

71)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0만 3천원임

72)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0만 4천원임

73) IBFD, "Indirect Taxes: 2023 Budget Would Hike Taxes on Tobacco, Vehicles, and Certain Alcoholic and Non-Alcoholic Beverag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2_pt_1%23tns_2022-10-12_pt_1, 검색일자: 2022. 10. 19.

74)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1,700원임

75)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만 1,080원임

76) 포르투갈 국세청, Estatísticas - "Imposto: 3 - IT - Imposto sobre os Tabacos" - "Taxas de imposto," <https://info-aduaneiro.portaldasfinancas.gov.pt/estatisticas/Pages/estatisticas.aspx>, 검색일자: 2022. 10. 28.

[노르웨이 - 2023년 예산안 발표]

- 노르웨이 정부는 2022년 10월 13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함⁷⁷⁾
 - 소득재분배, 가계경제 안정, 공공복지 보장, 녹색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안하며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 전반에 걸친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인세-직접세) 천연자원을 착취하는 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함⁷⁸⁾
 - 수력발전 생산자를 위한 자원 임대료에 대한 실효세율을 기존 37% 45%로 8%p 인상할 것을 제안함
 - 풍력 및 수력 발전에 대하여 전기 판매단가가 kWh당 0.70크로네⁷⁹⁾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23%의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⁸⁰⁾
 - 육상풍력 발전 생산자에 대하여 40%의 자원 임대료세를 도입함
 -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세 인하 조치를 중단함
 - 노르웨이 정부는 2016년 이후 가상화폐 채굴장(데이터 센터)에 전기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였음
 - 비배출권거래시스템(Non Emission Trading

System: Non-ETS)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

- (개인소득세) 소득세 누진세율 인하, 연금소득 소득공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음
 - 소득구간 3, 4, 5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0.1%p 인상함
 - 개인납세자의 기본 소득세율은 22%이고 소득구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됨
 - 노동조합 수당에 대한 공제액을 기존 5,800크로네⁸¹⁾에서 7,700크로네⁸²⁾로 1,900크로네 인상함
 - 연금소득에 대한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표 4> 노르웨이 2023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단위: 크로네, %, %p)

소득구간	구분	2022년	2023년	변화
1	소득기준	190,350	198,350	4%
	세율	1.7%	1.7%	-
2	소득기준	267,900	279,150	4%
	세율	4%	4%	-
3	소득기준	643,800	644,700	0.1%
	세율	13.4%	13.5%	0.1%p
4	소득기준	969,200	969,200	-
	세율	16.4%	16.5%	0.1%p
5	소득기준	2,000,000	2,000,000	-
	세율	17.4%	17.5%	0.1%p

출처: Norway - Individual Taxation sec. 1.10. Rates,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18 October 2022).

77) News IBFD, “2023 Budget: Government Promises Favourable Personal Income Taxation – Direct Taxes,” 2022. 10.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3_no_3.html, 검색일자: 2022. 10. 18.

78) News IBFD, “2023 Budget: Government Proposes More Taxes for Industries Exploiting Natural Resources – Direct Taxes,” 2022. 10.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3_no_2%23tns_2022-10-13_no_2, 검색일자: 2022. 10. 18.

79)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원임

80) PWC, “Increased taxation of income from natural resources - Onshore wind power and hydro power production,” 2022. 9. 29., <https://blogg.pwc.no/skattebloggen-en/increased-taxation-of-income-from-natural-resources-onshore-wind-power-and-hydro-power-production>, 검색일자: 2022. 10. 18.

81)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만원임

82)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4만원임



3만 3,400크로네⁸³⁾에서 3만 3,250크로네⁸⁴⁾로 150크로네 축소하고, 최소 표준공제 하한선을 폐지함

- (부가가치세)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운 재화를 추가함⁸⁵⁾
- 판매가 50만크로네⁸⁶⁾ 이상의 전기자동차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임
 - 초과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가가치세율인 25%의 세율이 적용됨
- 해외 원격배달서비스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임

- (재산세) 각종 재산가치 인정비율을 조정하고, 2천만크로네 이하 자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상함
- 재산세는 자산의 시장가치가 아닌 자산의 유형별로 특정 비율을 곱한 법정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각각의 유형별로 인정비율을 조정함⁸⁷⁾
 - 주식 및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기존 75%에서 80%로 5%p 인상함
 - 자가 소유 운용자산의 계산비율을 70%로 축소함
- 순자산 2천만크로네⁸⁸⁾ 이하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기존 0.95%에서 1%로 0.05%p 인상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핀란드 - 2023년 예산안 세부사항 발표]

- 핀란드 정부는 2022년 9월 19일 2023년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공개함⁸⁹⁾
 - 핀란드 재무부는 2022년 8월 5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세부사항은 9월에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린 바 있음
- 세법개정안은 기존 예정된 개정안을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액 인상안의 세부사항을 발표함

<표 5> 핀란드 2023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단위: 유로, %)

소득구간	종류	2022년	2023년	변화
1	과세소득	0 ~ 19,200	0 ~ 19,900	-
	세율	-	12.64%	12.64%p
2	소득기준	19,200 ~ 28,700	19,900 ~ 29,700	3.6%
	세율	6%	19%	13%p
3	소득기준	28,700 ~ 47,300	29,700 ~ 49,000	3.5%
	세율	17.25%	30.25%	13%p
4	소득기준	47,300 ~ 82,900	49,000 ~ 85,800	3.6%
	세율	21.25%	34%	12.75%p
5	소득기준	82,900 초과	85,800 초과	3.5%
	세율	31.25%	44%	12.75%p

출처: Norway ~ Individual Taxation sec. 1.10. Rates,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18 October 2022)

83)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53만원임

84)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5만원임

85) News IBFD, "2023 Budget: Government Proposes to Impose VAT on Sales of Some Electric Vehicles – Indirect Taxes," 2022. 10.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3_no_4%23tns_2022-10-13_no_4, 검색일자: 2022. 10. 18.

86)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88만원임

87)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person/skatt/hjelp-til-riktig-skatt/bolig-og-eiendeler/bolig-eiendom-tomt/eiendomsskatt/hva-er-eiendomsskatt/>, 검색일자: 2022. 10. 18.

88)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억 1,320만원임

89) News IBFD, "Government Presents Budget for 2023 to Parliament. 2022. 9.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0_fi_1.html, 검색일자: 2022. 10. 18.

- 개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기준액을 3~4% 인상하고, 서울도 기존 6~31.25%에서 19~44%로 크게 인상함
- 소득구간별로 기본소득세가 부과되고, 최저소득기준 초과액에 대해서는 구간별 누진세율이 추가 적용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중국 - 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 매수 시 소득세 환급]

- 중국 재정부와 국세청은 2022년 9월 30일, 주택 교환 구매 관련 개인소득세 지원 정책에 관한 공고인 [2022] No. 30을 발표함^{90), 91)}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유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를 환급함
- 중국은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통상 양도가액의 1%를 부과함⁹²⁾

-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반드시 동일 도시(同一城

市) 내에 위치해야 하고 기존주택의 소유주는 신규주택의 소유주이거나 공동소유주 중 한 명이어야 함

-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관할 세무당국에 매도·매수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당국은 승인 후 환급함
- 신규주택 매수가격이 기존주택 매도가격과 같거나 큰 경우 전액 환급함
- 신규주택 매수가격이 기존주택 매도가격보다 적은 경우 신규주택 매수가격이 기존주택 매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환급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정교 세무사>

[뉴질랜드 - 세계 최초로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에 과세하는 제안 발표]

-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10월 11일, 2025년까지 농가에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제안을 발표함^{93), 94), 95)}
- 이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림과 오줌을 포함하여 농장 동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을 발표한 것임

90) IBFD, "China Allows Relief for Purchase of New Residential Property,"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03_cn_1.html, 검색일자: 2022. 10. 12.

91) 중국정부, 「关于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거주자의 주택 교환을 지원하는 개인소득세 정책)」,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10/01/content_5715508.htm, 검색일자: 2022. 10. 12.

92)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3조

93) 뉴질랜드 정부, *Pragmatic proposal to reduce agricultural emissions and enhance exports and economy*, 2022. 10. 11., <https://www.beehive.govt.nz/release/pragmatic-proposal-reduce-agricultural-emissions-and-enhance-exports-and-economy>, 검색일자: 2022. 10. 14.

94) 뉴질랜드 정부, "Pricing agricultural emissions - Consultation document," 2022. 10., <https://environment.govt.nz/assets/publications/Pricing-agricultural-emissions-consultation-document.pdf>, 검색일자: 2022. 10. 14.

95) IBFD, "New Zealand Proposes World-First Agriculture Emissions Pricing Levy," 2022. 10.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3_nz_1.html, 검색일자: 2022. 10. 14.



-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이처럼 농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과세하는 것인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뉴질랜드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⁹⁶⁾
-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 낙농 수출국으로, 농축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 수준이나 됨⁹⁷⁾
- 뉴질랜드는 농장 동물의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10%, 2050년까지 최대 47% 줄일 방침임
- 동 조치는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되면 농부들은 메탄,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 아던 총리는 금번 조치를 통해 남태평양 국가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7년 수준보다 10% 낮추는 입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함
- 또한 부과금의 수익은 메탄 억제제와 같은 승인

된 완화 기술의 활용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임

- 현재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의견수렴은 2022년 11월 18일에 종료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OECD -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OECD는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함⁹⁸⁾
- 보고서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고용 확대를 구성됨
- 조세와 관련된 주된 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 사회보험과 조세의 관계, 고용 관련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내용이 있음
- 재정 안정성 위험 관리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외에도 조세 부담이 지속가능해야 하며 관련 조세정책의 급격한 변동은

96) Bloomberg Tax, “NZ to Tax Agriculture Emissions at the Farm in World First,” 2022. 10. 1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3ITQ20K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VzdWx0cy80ZmMyMDM0YzlhMGE3YmEwOGUyMGYyMjhiODc3ZDlxNyJdXQ—7e4bf066c6ce3efdad29c10a26a69d68f9a4e1c&criteria_id=4fc2034c9a0a7ba08e20f228b877d217&search32=EUPTECoua7aQgla8c8356g%3D%3DCHFqOq_VucvkH7gUQn5jYua8-01Mbvug2Bcws5wB5_mUPmskzw5W0xvAP0ekFur5SOYlpN82KU5axsYMD5OKKY-qxUVhyoLs31H24zSFM49sTj_-FzNCuqIgl5JEI0ANrG6oAbu6LvF5SgAqysUJzXadOBv1Cm0jih33wJ6MrAwYuOTygPOPBDV2fKBvDyDXP2l2_ICeQWyoZoW7K0h85-nSSKlRmH8bU8E35ykR2-4eLo_z269d06KS70_BgdRVnaYoW3KVN00UoBvQWo3fMjyVXHH1f-pjshdL1liiLabVelGsbHIWnInUtt2UA_qEauGZm4ACNQP4sgSbcYOAg%3D%3D, 검색일자: 2022. 10. 14.

97) 뉴질랜드의 인구가 500만명인 반면 소는 1천만마리, 양은 2,600만마리에 달함

98)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surveys-korea-2022_20bf3d6e-en, 검색일자: 2022. 10. 20.

- 지양하도록 권고함
- 재정정책 지원은 보다 구체적 대상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유류세 인하와 같은 일시적 정책 대안으로 정책적 혜택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함
- 출산·육아휴직의 재원을 사회보험 또는 일반 조세로 완전히 대체하는 정책 및 사회보험과 조세의 통합 징수의 도입 등을 제안함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이 고용 및 근로시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근로유인 향상, 불평등 및 빈곤 감소 목적 및 재정적 비용까지 고려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 보고서는 조세특례제도의 사용 및 체계, GloBE 규칙의 주요 내용, GloBE 규칙의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적용 및 그 설계, 정책 제안으로 구성됨
- 적격내국최저한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의 도입은 관할국이 저과세 소득에 대하여 즉시 과세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그 소득은 GloBE 규칙에 따라 다른 관할국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영향력은 제한되어야 함
-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신규 조세특례제도의 도입 및 신규 투자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하며, GloBE 규칙은 특례제도 및 납세자별로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OECD - 글로벌 최저한세와 조세특례 보고서 발표]

- OECD는 2022년 10월 6일, ‘글로벌 최저한세와 조세특례 보고서’를 발표함⁹⁹⁾
- 보고서는 OECD/G20 BEPS 프로젝트 필라2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다국적기업에 조세특례제도가 적용되어 관할국 내 실효세율(ETR)이 15% 이하가 되는 경우, 다국적기업은 GloBE 규칙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할 위험이 있음¹⁰⁰⁾

99) OECD, “Tax Incentives and the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https://www.oecd.org/tax/tax-incentives-and-the-global-minimum-corporate-tax-25d30b96-en.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the%20repor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06-10-2022&utm_term=ctp, 검색일자: 2022. 10. 14.

100) OECD/G20가 2021년 10월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두 필라 체계에 합의함에 따라, 필라2는 다국적대기업에 대하여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함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의회, 2023년 EU 예산결의안 가결(2022. 10. 20.)¹⁾

※ 집행위는 지난 6월 1,856억유로(승인기준) 규모의 2023년 EU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7월에는 이사회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²⁾

- (정책방향) 2023년 예산안은 ①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② 에너지와 기후 문제 해결, ③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을 강조
- (규모³⁾) 의회는 2023년 예산안 규모를 승인기준 1,873억유로, 지급기준으로 1,676억유로를 채택 - 이사회가 삭감한 예산(약 16억유로 규모) 대부분이 증액되어 집행위가 초기 제안했던 예산안 수준으로 편성

<표 1> 2023년 EU 예산안 규모

(단위: 십억유로)

구분	집행위 편성			이사회 채택			의회 채택		
	금액 (1)	금액 (2)	차이 (2)-(1)	금액 (3)	차이 (3)-(1)	차이 (3)-(2)			
승인기준 예산	185.6	184.0	-1.6	187.3	+1.7	+3.3			
지급기준 예산	166.3	165.7	-0.5	167.6	+1.3	+1.9			

출처: EU 집행위·이사회·의회외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2> 집행위 예산안 대비 증액 내역

(단위: 억유로)

구분	금액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 재건	8.5	학생 교류 프로그램(Erasmus+), 유럽연대 봉사단, 마리퀴리 연구지원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EU 이민통합기금, 국경관리와 비자정책, EU 남부 및 동부 지역의 근린국가 지원, 개발 및 국제협력(NDICI), 유럽방위기금, 군사이동성
에너지·기후	5.3	Horizon 유럽 연구 프로그램, 유럽횡단 운송 및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럽연결시설, 환경 및 기후 활동을 위한 LIFE 프로그램,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팬데믹 회복	2.5	EU 시민 보호 메커니즘(UCPM), 문화·창작 프로그램,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권리 및 가치 프로그램, 유럽 검찰청(EPPO)

출처: EU 의회, MEPs want EU budget for 2023 to focus on Ukraine, energy and pandemic, 2022. 10. 20.,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1014IPR43214/meps-want-eu-budget-for-2023-to-focus-on-ukraine-energy-and-pandemic>, 검색일자: 2022. 10. 21.

본이 증액되어 집행위가 초기 제안했던 예산안 수준으로 편성

- (주요 내용) 의회는 우선순위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자금지원을 늘림

■ EU 정상회의, 추가적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 필요성에 동의(2022. 10. 21.)^{4), 5)}

- (배경) 집행위는 10월 18일에 높은 가스 가격에

1) EU 의회, "MEPs want EU budget for 2023 to focus on Ukraine, energy and pandemic," 2022. 10. 20.,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1014IPR43214/meps-want-eu-budget-for-2023-to-focus-on-ukraine-energy-and-pandemic>, 검색일자: 2022. 10. 21.; _____, "EU budget 2023 - timeline & quick reference," 2022. 9. 29.,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929IPR41806/eu-budget-2023-timeline-quick-reference>, 검색일자: 2022. 10. 21.

2)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 7월호, 2022 참고

3) 승인기준(commitments)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 지급기준(payments)은 당해 연도에 실제 지출하는 예산을 의미

4) EU 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20-21 October 2022," 2022. 10. 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22/10/20-21/>, 검색일자: 2022. 10. 24.

5) 정상회의(10월 20-21일)에서는 에너지 대책 외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입장, 우크라이나 군사 및 재정지원, 주요 기반시설(송유관) 보호, 대중국 전략, 이란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합의

대응하고 겨울철 에너지 공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스 공동구매, 한시적 TTF⁶⁾ 가스 가격 상한제, 회원국 간 연대 조치, 투명한 인프라, 가스 수요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제안⁷⁾

- (논의 결과) 정상회의(10월 20~21일)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배급제 시행⁸⁾을 피하며 공급 안보 보장과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완전무결한 단일시장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
 - 집행위에 다양한 에너지원과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히 영향 평가를 포함한 구체적 결정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전력시장 구조적 개혁 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
- (주요 내용) 집행위가 제안한 다음의 주요 방안들을 의제로 논의
 - (자발적 공동구매)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로 15%의 가스 비축량을 공동구매
 - (새로운 LNG 가격지표) 현재 가격지표 역할을 하는 TTF는 LNG 시장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23년 3월까지 가스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벤치마크를 개발
 - (TTF 가격 변동폭 제도) 과도한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한시적 가격 변동폭 제도(temporary dynamic price corridor) 시행

-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 가스 소비 증가를 방지하고 자금 조달, 분배, EU 국경 너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발전용 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임시 프레임워크를 설계해야 하며, 비용편익분석 포함 요구
- (에너지 시장 기능 개선)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유동성 스트레스 완화, 가스 가격 변동성 요인 제거, 재무 안정성 유지 보장
- (허가절차 간소화) 재생에너지 및 그리드(grid)의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 (에너지 위기 대응 연대 기금) 국가, 지역 또는 EU 차원에서 가스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 간 가스 공유를 위한 에너지 연대 조치

■ EU 통계청, 2022년 2분기 재정통계 발표(2022. 10. 21.)⁹⁾

- (재정수지) 2022년 2분기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는 유로지역은 GDP 대비 -2.1%, EU 27개국은 GDP 대비 -1.8%로 전 분기 대비 적자폭이 감소

6) TTF(Title Transfer Facility)는 네덜란드의 천연가스 가상거래소로 영국 NBP(National Balancing Point)와 함께 유럽 2대 천연가스 거래 중심지이며, 네덜란드 TTF 가스선물 가격이 유럽 천연가스 가격지표 역할을 함

7) EU 집행위, "Commission makes additional proposals to fight high energy prices and ensure security of supply," 2022. 10. 1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225, 검색일자: 2022. 10. 20.

8) EU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위기 시 가스배급제 시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원리에 벗어난 가스배급제 시행은 경제 하방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함

9)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1% of GDP in the euro area and 1.8% of GDP in the EU," 2022. 10.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5131958/2-21102022-CP-EN.pdf/852930e9-0374-d456-b4d9-588cd689bd6e>, 검색일자: 2022. 10. 24.;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94.2% of GDP in euro area," 2022. 10.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5131955/2-21102022-BP-EN.pdf/eeb714b8-83c4-cd8c-56b8-e9aa7c5798a8>, 검색일자: 2022. 10. 24.



- 유로지역 및 EU의 GDP 대비 적자 감소는 총 수입 증가폭이 총지출보다 크고 GDP 규모가 증가한 것에 기인
-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대응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지난 분기보다는 약한 수준
- (재정채무) 유로지역의 2022년 2분기 말 GDP 대비 채무비율은 94.2%로 전 분기 95.2%에서

- 1.0%p 감소, EU 27개국은 전 분기 87.5%에서 86.4%로 1.1%p 감소
- 유로지역 및 EU의 정부 채무 수준은 꾸준히 증가세이나, GDP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감소
- 채무 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그리스(182.1%), 이탈리아(150.2%), 포르투갈(123.4%) 순이며, 채무 비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6.7%), 불가리아(21.3%), 룩셈부르크(25.4%) 순으로 집계

<표 3> 유로지역 19개국 및 EU 27개국의 2022년 2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Q2	2022 Q1 (잠정치)	2022 Q2 (잠정치)
유로지역 (EA19)	재정수지	-6.4	-2.5	-2.1
	정부수입	46.8	47.0	47.2
	정부지출	53.2	49.5	49.3
	정부채무	97.9	95.2	94.2
EU 27개국 (EU27)	재정수지	-5.7	-2.3	-1.8
	정부수입	46.5	46.4	46.5
	정부지출	52.2	48.6	48.4
	정부채무	90.5	87.5	86.4

주: 1. EA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달력조정·계절조정된 수치

출처: Eurostat,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1% of GDP in the euro area and 1.8% of GDP in the EU," 2022. 10.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5131958/2-21102022-CP-EN.pdf/852930e9-0374-d456-b4d9-588cd689bd6e>, 검색일자: 2022. 10. 24.; ____, "Government debt down to 94.2% of GDP in euro area," 2022. 10.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5131955/2-21102022-BP-EN.pdf/eeb714b8-83c4-cd8c-56b8-e9aa7c5798a8>, 검색일자: 2022. 10. 24.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추가 인상(2022. 10. 27.)¹⁰⁾
- ECB 정책 위원회는 정책금리(기준금리 1.25%, 한계대출금리 2.25%, 수신금리 1.5%)를 각각 0.75%p 인상하기로 결정
- 이미 지난 7월과 9월에 두 차례 정책금리를 인상¹¹⁾한 바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2022년 11월 2일 이후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가 각각 2.00%, 2.25%, 1.50%로 발표
- 유로지역 인플레이션(9월 기준, 9.9%)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속 정책금리 인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철회하고 정책금리를 적시에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2%)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목표
- 목표물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III)¹²⁾의 금리를 ECB 금리와 연동되도록 설정하고, 은행들에 자

10)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 10. 27.,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1027-df1d778b84.en.html>, 검색일자: 2022. 10. 28.

11)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7월호, 9월호, 2022. 참고

12) 유동성 공급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을 제공

발적인 조기 상환 날짜를 추가 제공하기로 결정



IMF

■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2022. 10. 11.)^{13), 14)}

- (동향) 글로벌 경제활동은 수십 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고 급격한 경기 둔화를 겪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긴축 재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유행 장기화가 전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경제전망) 세계 경제는 2021년 6.0% 성장에서 2022년 3.2%, 2023년 2.7%로 둔화될 전망
 - (선진국) 미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및 금융과 재정 긴축 따라 2022년 1.6% 성장으로 대폭 하향 조정, 유럽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2023년 성장률이 0.5%까지 침체될 전망
 - (신흥국) 중국은 제로 코로나 봉쇄정책 및 부동산 부문의 침체를 감안하여 하향 조정, 러시아는 원유 수출 및 강력한 부양정책으로 상향 조정
- (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2년 8.8%(7월 전망 대비 +0.5%p)로 오른 뒤 2023년

6.5%(7월 전망 대비 +0.8%p)로, 2024년 4.1%로 완화될 전망

- 4분기 기준 예상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2년 3분기 9.5%를 정점으로 2023년 4분기에는 4.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
- (위험) 고물가, 고환율, 높은 불확실성 등 취약성 증가로 높은 경기 하방위험
 - 과잉·과소 통화정책 위험, 국가별 정책 여건으로 인한 달러 강세 지속과 국가 간 긴장 증가
 -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충격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흥국 부채 취약성, 유럽 가스 공급 중단
 -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전염병 재확산, 중국 부동산 문제 악화, 세계 경제 분절화 및 국제 협력 약화 등
- (정책권고)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통화 및 재정 정책 추진
 - (통화정책) 실업 증가 및 임금 하락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각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강력하고 일관된 긴축 통화정책 추진
 - (재정정책)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으로 현금 이전 지원하되 광범위한 가격 상한 또는 식품 및 에너지 보조금은 지양, 인플레이션 완화를

13)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2/10/11/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2>, 검색일자: 2022. 10. 12.

14) 본 재정동향에 실린 내용은 보고서의 제1장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의 원문 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의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참고



<표 4> 세계 경제 전망

(단위: 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 변화)

구분	2021	전망		2022년 7월 전망 대비 차이		2022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세계 경제	6.0	3.2	2.7	0.0	-0.2	-0.4	-0.9
선진국	5.2	2.4	1.1	-0.1	-0.3	-0.9	-1.3
미국	5.7	1.6	1.0	-0.7	0.0	-2.1	-1.3
유로지역	5.2	3.1	0.5	0.5	-0.7	0.3	-1.8
독일	2.6	1.5	-0.3	0.3	-1.1	-0.6	-3.0
프랑스	6.8	2.5	0.7	0.2	-0.3	-0.4	-0.7
이탈리아	6.6	3.2	-0.2	0.2	-0.9	0.9	-1.9
스페인	5.1	4.3	1.2	0.3	-0.8	-0.5	-2.1
일본	1.7	1.7	1.6	0.0	-0.1	-0.7	-0.7
영국	7.4	3.6	0.3	0.4	-0.2	-0.1	-0.9
캐나다	4.5	3.3	1.5	-0.1	-0.3	-0.6	-1.3
한국	4.1	2.6	2.0	0.3	-0.1	0.1	-0.9
신흥시장 및 개도국	6.6	3.7	3.7	0.1	-0.2	-0.1	-0.7
신흥시장 및 개도국 아시아	7.2	4.4	4.9	-0.2	-0.1	-1.0	-0.7
중국	8.1	3.2	4.4	-0.1	-0.2	-1.2	-0.7
신흥시장 및 개도국 유럽	6.8	0.0	0.6	1.4	-0.3	2.9	-0.7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6.9	3.5	1.7	0.5	-0.3	1.0	-0.8
중동 및 중앙 아시아	4.5	5.0	3.6	0.2	0.1	0.4	-0.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3.6	3.7	-0.2	-0.3	-0.2	-0.3
유럽연합	5.4	3.2	0.7	0.4	-0.9	0.3	-1.8
저소득 개도국	4.1	4.8	4.9	-0.2	-0.3	0.2	-0.5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10.1	4.3	2.5	0.2	-0.7	-0.7	-1.9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¹⁾	65.9	41.4	-12.9	-9.0	-0.6	-13.3	0.4
비연료	26.3	7.3	-6.2	-2.8	-2.7	-4.1	-3.7
소비자 물가							
선진국 ²⁾	3.1	7.2	4.4	0.6	1.1	1.5	1.9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³⁾	5.9	9.9	8.1	0.4	0.8	1.2	1.6

주: 실질실효환율은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19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1)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 파테(Fateh),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 평균 가격. 2021년 평균 유가는 배럴당 69.42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22년 98.19달러, 2023년은 85.52달러

2) 2022년, 2023년 인플레이션은 각각 8.3%, 5.7%(유로지역), 2.0%, 1.4%(일본), 8.1%, 3.5%(미국)

3)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2022, Table 1.1.

한국 수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2022, Table A2를 참고하여 재계산

위해 재정적자 축소, 긴축 재정 기조 유지 및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 (금융정책) 환율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인 외환시장개입, 자본흐름관리(CFM) 등 활용,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 경계
- (미래 대비) 어린이 돌봄, 근로장려세제(EITC), 이민제도 개편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기후대응 탄소가격 설정, 친환경 에너지·인프라 투자
- (국제협력) 취약국 백신 공급, 경제 분절화 경계, 자유무역기조 강화 등 다자협력

■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2022. 10. 12.)^{15), 16)}

- (동향) 많은 국가에서 지난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저물가·저금리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 상승과 이자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표면화되고 지정학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력이 고갈되고 채무국을 중심으로 위기 시 적자재정을 통한 정책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가계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의 위험을 높임
- (재정적자)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선진국은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등 2019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지출 반영, 신흥시장국은 세입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힘
- 석유 수출국은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재정 흑자를 예상하였으나, 반대로 중국은 2022년에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면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저소득 개발도상국 중 상대적으로 팬데믹 대응 재정정책이 적었던 국가의 재정적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부채) GDP 대비 세계 정부부채는 2022년 GDP의 9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팬데믹 수준보다 약 7.5%p 높은 수준
 - 글로벌 금융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예산제약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많은 신흥시장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은 2022년 스프레드 확대에 직면해 있음
 - 부채가 안정화되더라도 GDP 대비 이자비용은 향후 몇 년 동안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변동이 커지면 투자자는 장기 채권에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여 차입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음
 - 저소득국의 60% 가까이가 이미 부채가 과도한 상태거나 고위험에 처해 있어 채무 구제를 위한 강력한 공통 프레임워크가 필요
- (정책권고) 팬데믹 이후를 위한 일관된 중기 재

15)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2/10/09/fiscal-monitor-october-22>, 검색일자: 2022. 10. 13.
 16) 본 재정동향에 실린 내용은 보고서의 제1장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의 원문 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의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참고



〈표 5〉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총채무

(단위: GDP 대비 %)

구분	일반정부 재정수지			총채무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선진국	-6.4	-3.8	-3.6	117.9	112.4	111.3
미국 ^{1), 2)}	-10.9	-4.0	-5.7	99.6	94.7	96.9
유로지역	-3.9	-3.6	-2.9	95.3	93.0	91.3
프랑스	-5.2	-4.6	-4.8	112.6	111.8	112.5
독일	-3.1	-3.0	-1.8	69.6	71.1	68.3
이탈리아	-5.1	-5.7	-3.6	150.9	147.2	147.1
스페인 ³⁾	-4.3	-4.5	-4.2	118.5	113.6	112.1
일본	-6.3	-7.3	-3.2	262.5	263.9	261.1
영국	-7.1	-4.3	-1.7	95.3	87.0	79.9
캐나다 ²⁾	-4.4	-2.4	-1.2	112.9	102.2	98.7
한국	0.2	-1.6	0.3	51.3	54.1	54.4
신흥국	-3.5	-4.3	-3.3	64.4	65.1	68.5
아시아	-5.0	-6.9	-5.3	71.2	75.4	80.8
중국	-5.2	-7.9	-6.1	71.5	76.9	84.1
인도	-4.9	-4.6	-4.6	84.2	83.4	83.8
유럽	-0.9	-2.1	-1.6	35.8	31.6	31.9
러시아	1.1	-2.0	-1.7	17.0	16.2	16.9
라틴아메리카	-1.0	0.0	-0.4	72.2	68.0	68.1
브라질 ⁴⁾	0.7	0.8	-0.8	93.0	88.2	88.9
멕시코	0.0	0.8	0.3	57.6	56.8	58.7
중동·북아프리카	-2.0	1.7	1.2	48.0	40.6	39.5
사우디아라비아	-2.1	5.8	4.2	30.0	24.8	25.1
저소득 개도국	-2.7	-3.1	-2.6	48.6	48.8	48.8

주: 1)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미적립연금채무(unfunded pension liabilities)에 대한 이자 및 근로자 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제외했으며, 미국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08 SNA를 적용 중인 국가들(호주, 캐나다, 홍콩, 미국)의 미적립연금채무(unfunded pension liabilities)를 제외함

3) 금융부문 지원을 포함

4) 비금융 공공부문 부채

출처: IMF, *Fiscal Monitor*, 2022 Table A1, A7, A10, A15, A18, A21을 참고하여 재구성

정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장기간 지속되는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을 가격 통제, 보조금 또는 감세를 통해 제한하려는 시도는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꾸준한 재정 긴축이 필요
- 또한 선별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어 저소득 가구를 대규모 실질 소득 감소로부터 보호하고 식품과 에너지 등 필수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

■ IMF, 유럽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2022. 10. 13.; 2022. 10. 24.)¹⁷⁾

- (동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은 가계 구매력을 악화시키고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새로운 보조금 지원도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일부 상쇄하는 데 그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었고 광범위한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망) 유럽 전망은 상당히 어두워졌으며, 성장률은 급격히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선진국 및 신흥유럽국(분쟁국 및 튀르키예 제외) 성장은 2022년 각각 3.2% 및 4.3%에서

17)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The Fog of War Clouds the European Outlook October,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EU/Issues/2022/10/12/regional-economic-outlook-for-europe-october-2022>, 검색일자: 2022. 10. 14.; 2022. 10. 25.

2023년 0.6% 및 1.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22년 7월 전망보다 0.7%p, 1.1%p 하락)

- (위험) 인플레이션 및 유럽 일부 지역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경기 침체는 유럽 전역에서 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제일 큰 위험은 에너지 공급의 차질로 계절적 요인이 더해져 가스 부족, 추가 에너지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더 심한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인플레이션 또한 식품 가격,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더 오래 지속되어 사회적 긴장도 커질 우려가 있음
- (정책권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긴축 정책 기조가 필요
 - (재정정책) 재정 여력을 재건하고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 충격을 관리해야 함
 - (통화정책)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하며, 선진국에서는 더 빠른 인상이 요구

됨. 중기 인플레이션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임금-가격의 순환 상승을 저지하는 것임

- (미래 대비)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탄력성을 강화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형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정책, 차세대 EU 프로그램 실행 등은 중기적으로 성장을 높이고 가격 압력을 완화하는 데 필수



미국

[예산·결산 등]

- 미 의회예산처(CBO), 2022 회계연도(2021. 10. 1. ~2022. 9. 30.) 잠정 결산 발표(2022. 10. 11.)¹⁸⁾
 - (재정수지) FY2022 재정적자는 전년(2.78조달

<표 6> 미국 재정(실적) 추이

(단위: 십억달러, %)

구분	실적										잠정 202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8	2019	2020	2021	
수입	2,524	2,105	2,163	2,303	2,450	3,330	3,463	3,421	4,047	4,896
지출	2,983	3,518	3,457	3,603	3,527	4,109	4,447	6,554	6,822	6,273
재정적자 (GDP 대비)	459 (3.1)	1,413 (9.8)	1,294 (8.7)	1,300 (8.4)	1,077 (6.7)	779 (3.8)	984 (4.7)	3,132 (15.0)	2,775 (12.4)	1,3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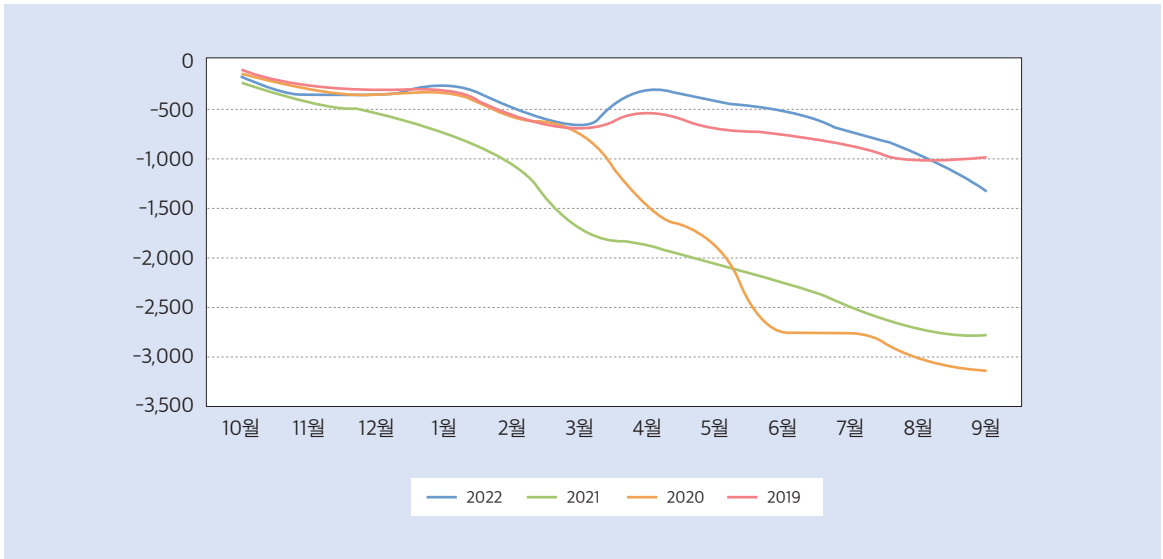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for September 2022," 2022. 10. 11.; OMB,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Historical Tables), 2022. 3. 28.

18)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2," 2022. 10. 11., <https://www.cbo.gov/publication/58493>, 검색일자: 2022. 10. 19.



[그림 1] FY2019~FY2022 월별 누적 재정적자 추이

(단위: 십억달러)



주: 트럼프 정부 코로나19 부양책 입법(2020. 12. 27.) → 미국 구조계획법 의회 통과(2021. 3. 10.)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for September 2022," 2022. 10. 11.

러) 대비 50.4%(1.4조달러) 감소한 약 1.38조달러 예비 추정

- (세입) 전년 대비 21%(8,500억달러) 증가한 4조 8,960억달러 예비 추정

- 주요 세입 항목인 개인소득세(29%), 법인세(14%) 및 사회보험급여세(13%) 수입 모두 전년 대비 증가(기타 수입도 증가)

- (개인소득세)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높아진 임금·급여로 인한 수입 증가가 부분적인 영향을 끼쳐 전년 대비 29%(5,930억달러) 증가한 2조 6,370억달러
- (사회보험급여세) 사회보험급여세 유예 및 분할 지급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1,650억달러) 증가한 1조 4,790억달러

- (법인세) 전년 대비 14%(530억달러) 증가한 4,250억달러

- (세출) 전년 대비 8%(5,480억달러) 감소한 6조 2,730억달러 예비 추정

- (감소 분야) 주요 지출 감소 항목으로는 팬데믹 대응 관련 지출과 관련한 환급성 세액공제, 실업급여, 중소기업청(SBA)의 대출 프로그램, 코로나 재정지원 자금 등으로 구성

- (환급성 세액공제) 전년 대비 62%(4,860억달러) 감소한 2,920억달러
- (실업급여) 코로나19 시기에 확대된 실업급여 정책은 2021년 9월에 종료됨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도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90%(3,590억달러) 감소한 38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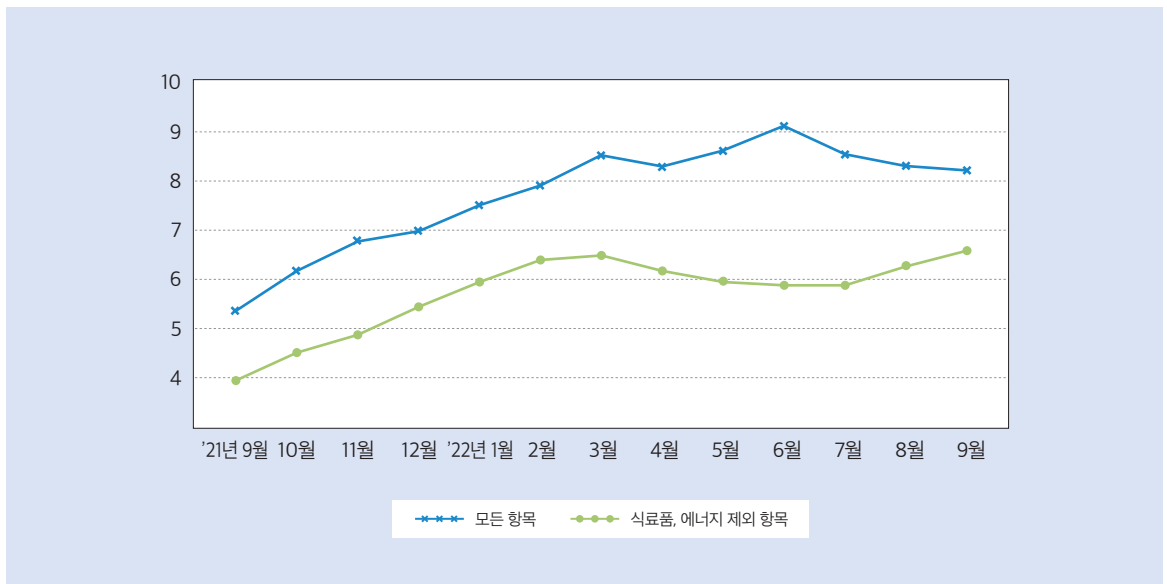
- (중소기업청 대출) 급여 보호 프로그램¹⁹⁾ (PPP²⁰⁾을 통해 이행된 대출 및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93%(3천억달러) 감소한 230억달러
- (코로나 재정지원 자금) 주/지방 및 하위 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 재정지원 자금은 전년 대비 56%(1,380억달러) 감소한 1,060억달러

[기타]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2. 10. 13.)²¹⁾
 -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2%로 8월(8.3%)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으나,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6.6%로 지난 4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주거, 식료품, 의료

[그림 2]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CPI-U) 변화

(단위: %)



출처: BLS, Consumer Price Index-September 2022, p. 2, Chart 2, 2022. 10. 13.

19)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설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3월 2호, 2020. 참고

20)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21)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September 2022, 2022. 10. 13.,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 10. 17.;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Joe Biden on the September Consumer Price Index Report, 2022. 10. 1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0/13/statement-by-president-joe-biden-on-the-september-consumer-price-index-report>, 검색일자: 2022. 10. 17.



서비스 항목의 상승에 기인하여 0.4% 상승하였으며, 전월 대비 근원 인플레이션은 0.6%로 집계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물가상승률 발표가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언급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물가상승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²²⁾을 통해 의료보험료, 가계 에너지 비용 등을 낮출 것이라고 언급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 10. 19.)²³⁾

- (전반적인 경제활동) 9월 이후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되었으나 산업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향후 경제성장은 더욱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
 - 전체적으로 9월 이후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되었으나, 4개 지역(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시카고)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개 지역(뉴욕, 세인트루이스)은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

으로 인해 수요가 둔화

- (노동시장) 고용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했고 여러 지역에서 임금인상률이 완화되었으나, 향후 임금 인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 여러 지역에서 임금인상률이 완화되었지만, 일부 기업들은 물가상승 및 생활비 상승, 노동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승 압력 등에 기인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언급
- (물가) 일부 지역에서 완화가 언급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향후 물가상승은 완만할 전망이다

■ 미 상무부(BEA), 2022년 3분기 GDP(속보치) 발표(2022. 10. 27.)²⁴⁾

- 2022년 3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6% (연율, 속보치)로 1, 2분기 연속 하락세(2022년 1분기 -1.6%, 2022년 2분기 -0.6%)에서 상승세로 전환
 - 수출(14.4%), 개인 소비 지출(1.4%), 비주거 고정 투자(3.7%), 정부 소비 지출 및 총투자(2.4%)의 증가에 기인하여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상승세로 전환
 - 반면 주거 고정 투자(-26.4%)는 감소하였으며, 개인 소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

22)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 H.R. 5376): 지출 총규모 4,370억달러의 정책으로 사회 안전망, 기후변화 대응, 보건정책(처방약가 인하 등), 최저법인세율 신설 등 포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8월호, 2022, p. 22. 참고(<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769>)

23) Fed, *Beige Book - October 2022*, 2022. 10. 1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10.htm>, 검색일자: 2022. 10. 25.

24) BEA,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2022(Advance Estimate)*, 2022. 10. 27., <https://www.bea.gov/news/2022/gross-domestic-product-third-quarter-2022-advance-estimate>

[그림 3] 실질 GDP 추이

(단위: 전 분기 대비 % 변화, 계절조정, 연율)



출처: BEA,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2022(Advance Estimate), 2022. 10. 27.

 **일본**

[예산·결산 등]

- 기시다 총리, ‘제10차 새로운 자본주의²⁵⁾ 실현 회의’를 통해 종합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중점사항을 발표(2022. 10. 4.)²⁶⁾
- 올해 10월 중 발표할 종합 경제 대책을 위해 기

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과제 중 인적 투자와 스타트업 지원 측면의 중점사항을 언급

- (인적 투자·분배) 단기적 임금 인상과 중장기적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임금 인상 추진
 - (임금 인상) 내년 봄 임금 협상(춘투²⁷⁾)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임금 인상을 목표로 각 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노사 논의를 촉구
 - (노동 이동) 성장 분야로 노동 이동을 위해 재교육 지원, 민간 전문가 이직 상담, 연공제에서

25) 지난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시장원리와 규제 완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각종 병폐를 야기했다는 인식하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세제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개혁을 위한 인적 자본, 과학기술 혁신, 스타트업,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투자에 관한 개혁과제를 발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 2022, pp. 34~37 참고(<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728>)

26) 수상관저, 『新しい資本主義実現会議』, 2022. 10. 4.,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210/04shihon.html, 검색일자: 2022. 10. 5.; 내각부, 『第10回新しい資本主義実現会議議事要旨』, 2022. 10. 4.,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kaigi/dai10/gijiyousi.pdf, 검색일자: 2022. 10. 25.

27) 춘투(春闘), 일본에서 매년 봄(2월)부터 열리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조건 개선을 협상하는 노동운동



직무급으로의 전환 등 기업 간·산업 간 노동 이동의 원활화 추진

- (인적 투자) 현재 3년간 4천억엔 규모의 인적 투자 정책에서 5년간 1조엔 규모의 정책 패키지로 인적투자를 확대

- (스타트업 지원) 5년 후 스타트업 기업수 10배 증가를 목표로 올해 말 5개년 계획 발표 예정

- 경영 부진을 겪고 있는 기존 기업이 동 사업 철수 후 경영 자원을 높은 성장성 및 수익성 전망 사업에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스타트업 등과 연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 스타트업 창업 5년 이내에 개인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신용보증제도를 창설할 예정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2. 10. 28.)²⁸⁾

- (전망)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해외 경제 둔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코로나19와 공급 제약 완화로 경제는 회복되고,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가계) 정규직 고용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대면형 서비스 재개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예상되며, 노동 수급 개선이 임금 상승률 증가로 이어져 소득의 완만한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기업) 공급 제약 완화로 수출과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입국 제한 조치의 해제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수익 하강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지연되었던 수요의 해소와 경제활동 개선에 따라 낮은 환율의 이점 등을 통해 수익 증가 예상

- (물가)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식료품, 내구재 등 가격상승으로 2022년 3%의 높은 물가성장률이 예상되고 2023년과 2024년 1%대 중반의 물가상승률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동향, 우크라이나 정세, 에너지 가격 동향, 대내외 코로나감염 동향과 영

<표 7> 2022~2024 정책위원 대세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구분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신선식품·에너지 제외
2022년	+1.8~+2.1 <+2.0>	+2.8~+2.9 <+2.9>	+1.8~+1.9 <+1.8>
7월 시점 전망	+2.2~+2.5 <+2.4>	+2.2~+2.4 <+2.3>	+1.2~+1.4 <+1.3>
2023년	+1.5~+2.0 <+1.9>	+1.5~+1.8 <+1.6>	+1.5~+1.8 <+1.6>
7월 시점 전망	+1.7~+2.1 <+2.0>	+1.2~+1.5 <+1.4>	+1.2~+1.4 <+1.4>
2024년	+1.3~+1.6 <+1.5>	+1.5~+1.9 <+1.6>	+1.5~+1.8 <+1.6>
7월 시점 전망	+1.1~+1.5 <+1.3>	+1.1~+1.5 <+1.3>	+1.4~+1.7 <+1.5>

주: 1. '대세 전망'은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씩을 제외한 범위로 예측오차를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2.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하고, 장래 정책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출처: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2年 10月), 2022. 10. 28., p. 10,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210a.pdf>, 검색일자: 2022. 10. 28.

28)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2年 10月), 2022. 10. 28.,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210a.pdf>, 검색일자: 2022. 10. 28.

향 등 일본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환율시장 동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

- (금융정책) 2%의 ‘물가안정 목표’ 실현을 목표로 필요한 시점까지 장·단기 금리 조정을 통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지속
 -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 실적치가 2%를 안정적으로 초과할 때까지 확대 방침을 유지(<표 7> 참조)



독일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2 가을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2) 발표

(2022. 9. 29.)^{29), 30)}

* 독일의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연2회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을 발표하며, 2022년 가을 보고서에는 5개 경제연구소(DIW, ifo Institut, IfW Kiel, IWH, RWI)가 참여

- (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그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위기로 독일 경제가 눈에 띄게 침체되고 있음
- (경제전망) GDP 증가율 전망치는 2022년 1.4%, 2023년 -0.4%, 2024년 1.9%
 - 봄 공동경제전망³¹⁾과 비교하여 크게 하향된 전망치이며 이는 에너지 위기의 정도를 보여줌
 - 특히 2023년 GDP 증가율은 봄 공동경제전망에서 3.1%로 예상하였으나 -0.4%로 낮아짐
- (소비자 물가) 2022년 물가상승률은 평균 8.4%로 연방 공화국 수립 이후 최고 수준
 -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평균 8.8%를 기록

<표 8> 2022년 가을 공동경제전망

(단위: %, 천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1.1	-3.7	2.6	1.4	-0.4	1.9
취업자 수(천명)	45,277	44,915	44,980	45,557	45,567	45,657
실업자 수(천명)	2,267	2,695	2,613	2,413	2,564	2,479
실업률	5.0	5.9	5.7	5.3	5.5	5.3
소비자물가	1.4	0.5	3.1	8.4	8.8	2.2
일반정부 재정수지(십억유로)	53.2	-147.6	-134.3	-72.5	-51.2	-41.5
(GDP 대비 %)	1.5	-4.3	-3.7	-1.9	-1.3	-1.0
경상수지(십억유로)	262.9	238.7	265.0	165.7	172.9	193.5
(GDP 대비 %)	7.6	7.0	7.4	4.3	4.2	4.5

출처: ifo INSTITUT, "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2," 2022. 9. 29.

29) ifo Institut, "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2: Energiekrise: Inflation, Rezession, Wohlstandsverlust," 2022. 9. 29., <https://www.ifo.de/fakten/2022-09-29/gemeinschaftsdiagnose-herbst-2022-energiekrise-inflation-rezession>, 검색일자: 2022. 10. 14.

30) Gemeinschaftsdiagnose, "Stellungnahme der Projektgruppe Gemeinschaftsdiagnose zur Herbstprojektion 2022 der Bundesregierung," 2022. 10. 12., <https://gemeinschaftsdiagnose.de/2022/10/12/stellungnahme-der-projektgruppe-gemeinschaftsdiagnose-zur-herbstprojektion-2022-der-bundesregierung/>, 검색일자: 2022. 10. 14.

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4월호, 2022,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2년 봄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2) 발표" 참고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는 2%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재정적 조치들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조치들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
 -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2년 725억유로, 2023년에는 512억유로, 2024년에는 415억유로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연방 정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결과에 대응하는 경제적 보호막' 발표(2022. 9. 29)^{32), 33), 34), 35)}

- 연방정부는 경제안정화기금(Wirtschaftsstabilisierungsfonds: WSF)을 통해 2024년까지 2천억유로를 제공하여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계획
- (경제안정화기금의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2022년 6월 만료)했던 경제안정화기금을 재활성화 및 재편성하여 사용할 계획

-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2천억 규모의 차입을 승인할 예정

- (가스 및 연료 가격 상한제) 2022년 10월 10일 전문가위원회는 가정 및 중소기업, 산업계를 위한 가격 상한제에 대하여 구체적 제안³⁶⁾
 - (가정 및 중소기업) 2022년 12월에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여 개별 사용량의 80% 수준까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 (산업계 대규모 소비자) 2021년 연간 사용량의 70%를 기준으로 가격 상한을 두고, 이 용량에 대하여 자체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 대책)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소비 축소, 초과이윤세 도입, 가스 판매세율 인하, 관료주의 억제 등의 대책을 발표
 -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소비 축소 대책: 신재생 에너지 확대 가속화, LNG 터미널을 통한 수입구조 개발, 2023년 봄까지 원자력 발전소 운영 연장 등

32) 연방 재무부, "Wirtschaftlicher Abwehrschirm gegen die Folgen des russischen Angriffskrieges," 2022. 9. 2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2022-09-29-abwehrschirm-gegen-folgen-des-russischen-angriffskrieges.html>, 검색일자: 2022. 10. 24.

33) 연방 정부, "Finanzierung des 200-Milliarden-Euro-Abwehrschirms gesichert," 2022. 10. 2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wsf-kreditermaechtigung-2132830>, 검색일자: 2022. 10. 24.

34) 연방 재무부, "Gemeinsame Pressekonferenz zur Energieversorgung in Deutschland," 2022. 9. 2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Video/2022/2022-09-29-pressekonferenz-zur-energieversorgung/2022-09-29-pressekonferenz-zur-energieversorgung.html>, 검색일자: 2022. 10. 24.

35) 연방 재무부, "Wirtschaftlicher Abwehrschirm und Gaspreisbremse: mit Entschlossenheit durch die Energiekrise," 2022. 10. 2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2/10/Inhalte/Kapitel-2b-Schlaglicht/2b-mit-entschlossenheit-durch-die-energiekrise.html>, 검색일자: 2022. 10. 24.

36) 연방 경제기후부, "Sicher durch den Winter - Zwischenbericht der ExpertInnen-Kommission Gas und Wärme," 2022. 10. 18., <https://www.bmwk.de/Redaktion/DE/Dossier/Gas-Kommission/zwischenbericht-expert-innen-kommission-gas-waerme.html>, 검색일자: 2022. 10. 24.

- 연방 통계청, 2022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 잠정실적 발표(2022. 10. 11.)³⁷⁾
 - 2022년 상반기 공공부문의 지출은 소폭 감소하고 수입은 크게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329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
 - (수입) 2022년 상반기 공공부문 수입은 세입과 부담금의 증가가 크게 기여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총 8,414억유로로 나타남
 - (지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지출이 감소하여 2022년 상반기 공공부문의 지출은 1.0% 감소한 8,743억유로

- 2022년 GDP 성장률은 1.4%, 2023년에는 -0.4%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경제가 회복되어 2.3%로 전망
 - 봄 경제전망⁴¹⁾에서는 2022년 2.2%, 2023년 2.5%로 전망하였으나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산업 생산에 큰 타격을 입고 민간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가을 경제전망에서 하향 조정
- 소비자물가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22년

〈표 9〉 2022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 수입 및 지출

(단위: 억유로)

구분	지출		수입		재정수지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합계	8,743	8,832	8,414	7,521	-329	-1,311
연방정부	2,649	2,844	2,197	1,887	-452	-957
주정부	2,500	2,454	2,678	2,364	178	-90
지방자치단체	1,510	1,414	1,494	1,357	-16	-57
사회보험	3,997	3,941	3,957	3,733	-39	-207

주: 2022년 상반기 잠정실적
출처: 연방 통계청, Pressemitteilung Nr. 432 vom 11. October 2022, 2022. 10. 11.

- 연방 경제기후부, 2022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 (2022. 10. 12.)^{38), 39), 40)}

〈표 10〉 2022년 가을 경제전망 주요 수치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2.6	1.4	-0.4	2.3
명목 GDP 성장률	5.8	7.0	5.3	4.7
가계 최종 소비	0.4	4.3	-0.9	2.4
정부 최종 소비	3.7	2.8	-0.8	0.8
총고정자본형성	1.2	-0.6	0.3	3.9
설비	3.5	1.0	3.6	5.8
건설	0.0	-2.2	-2.1	2.9
내수	1.9	3.1	-0.5	2.4
수출증가율	9.7	1.4	2.0	3.5
수입증가율	9.0	5.4	1.9	3.6
소비자물가지수	3.1	8.0	7.0	2.4
실업률(연방고용청 기준)	5.7	5.2	5.4	5.2

주: 2021년 잠정치, 2022~2024년 전망치
출처: 연방 경제에너지부, "wirtschaftliche-entwicklung," 2022. 10. 12.,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herbst-2022.html>

37) 연방 통계청, "Finanzierungsdefizit des Öffentlichen Gesamthaushalts auf 32,9 Milliarden Euro gesunken," 2022. 10. 11.,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10/PD22_432_711.html, 검색일자: 2022. 10. 19.
38) 연방 경제기후부, "Bundesregierung legt Herbstprojektion vor," 2022. 10. 12.,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10/20221012-bundesregierung-legt-herbstprojektion-vor.html>, 검색일자: 2022. 10. 21.
39) 연방 정부, "Drohende Rezession wegen Gaslieferstopp," 2022. 10. 1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herbstprojektion-2133766>, 검색일자: 2022. 10. 21.
40) 연방 경제기후부, "Herbstprojektion 2022," 2022. 10. 12.,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herbst-2022.html>, 검색일자: 2022. 10. 21.
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2022, "연방 경제기후부, 2022년 봄 경제전망 발표(2022. 4. 27.," 참고



8.0%, 2023년에는 7.0%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음

■ 연방 재무부, 2023년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발표(2022. 10. 17.)⁴²⁾

* EU 규정에 따라 유로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들은 매년 EU집행위원회에 내년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⁴³⁾ 독일은 7월 발표한 2023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현재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업데이트하여 제출

- (재정수지)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21년의 -3.7% 대비 나아진 -3.5%로 전망되고, 이는 2022년 안정화 프로그램⁴⁴⁾에서 예상한 -3.75%보다 개선된 수치

<표 11> 2021~2026 독일 중기재정계획 주요 지표 변화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정부 재정수지 (2022. 10.)	-3.7	-3.5	-2	-2	-1.5	-1
일반정부 재정수지 (2022. 4.)	-3.1	-3.25	-1.5	-1.25	-0.25	0
구조적 재정수지 (2022. 10.)	-2.5	-3	-2.25	-2	-1.5	-1
구조적 재정수지 (2022. 4.)	-2.1	-3.5	-2.25	-2	-	0.5
국가채무 (2022. 10.)	68.6	67.75	66.75	66	65.75	65.25
국가채무 (2022. 4.)	69.3	66.75	65.75	65.75	65	64.5

주: 1. 2022년 4월 자료는 안정화 프로그램 2022(Stabilitätsprogramm 2022) 기준
 2. 2021년 10월 전망 자료는 2022. 9. 28. 기준으로 작성됨
 출처: 독일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2022. 10. 17.

- 세입이 2022년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예상한 GDP의 45.5%보다 더 증가한 46.5%로 예상되고, 반면 지출은 GDP의 49.25%에서 50%로 비교적 덜 증가했기 때문
-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전망한 것과 같이 -2%로 나타남
- (중기재정목표: MTO)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3%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6년에는 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4~2026년 기간 동안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0.5%p 줄이는 벤치마크 요건을 평균적으로 준수할 계획
- (국가채무)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마스트리히트 기준)는 67.75%이고, 2023년에는 66.75%로 예상되며 꾸준히 감소하여 2026년에는 65.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신규 차입의 감소와 명목 GDP의 성장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2023년 녹색예산(budget vert) 발

42)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3," 2022. 10. 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3.html, 검색일자: 2022. 10. 21.
 43) European Commission, "Draft budgetary plans,"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2_en, 검색일자: 2022. 10. 25.
 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2022, "연방 정부,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22(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채택(2022. 4. 27.)" 참고

표(2022. 10. 12.)⁴⁵⁾

- 2023년 예산법안에 포함된 총지출 5,694억유로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총 594억유로
 - 2023년 예산법안에서 6가지 환경 목표 중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398억유로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연구,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지원 등
 -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합비용은 23억유로
 -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196억유로이며, 에너지 개발 시설 및 도로 건설 관련 지출 포함

[기타]

- 프랑스 재무부,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s) 발표(2022. 10. 15.)⁴⁶⁾
 - (경제전망)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6.8%를 기록하며 강력한 경제회복세를 보인 후 2022년 2.7%, 2023년 1.0%로 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될 전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경제 회복에 악영향
 - (물가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정부

의 에너지 가격 상승 제한 정책으로 EU 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5.3%를 기록하고, 2023년 4.2%로 다소 안정될 전망

- (재정수지)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2~2023년 5%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27년 3% 이하 기록 전망
 - 2021년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
 - 2022년 코로나19 관련 지원 조치의 점진적 폐지에도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의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5%로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2023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으로 재정적자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재정지출 증가 억제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7년 3% 이하로 감소 전망
- (국가채무) 재정적자의 악화로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1년 112.8%까지 상승했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 (재정전략) 2027년 재정수지 3%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해 2022~2027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을 0.6% 이하로 제한
 -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 부문을 포함한 모든 정부 범위에서 지출 증가 억제 노력 필요

45) 프랑스 재무부, "Budget vert 2023: 4,5 milliards d'euros supplémentaires pour l'environnement," 2022. 10. 12., <https://www.economie.gouv.fr/budget-vert-2023-45-milliards-deuros-supplementaires-pour-l'environnement>, 검색일자: 2022. 10. 25.

46) EU 집행위, "France draft budgetary plan 2023,"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2-10/2023_dbp_fr_en.pdf



<표 12> 프랑스 2023 재정계획안 주요 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정수지	-6.5	-5.0	-5.0	-4.5	-4.0	-3.4	-2.9
구조적 재정수지	-5.1	-4.2	-4.0	-3.7	-3.4	-3.1	-2.8
국가채무	112.8	111.5	111.2	111.3	111.7	111.6	110.9

출처: EU 집행위원회, France draft budgetary plan 2023, 2022. 10. 15.

- 지출 증가 억제 노력은 친환경 부문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와 병행 필요



영국

■ 신임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 주요 감세정책에 대한 철회 결정 발표(2022. 10. 17.)⁴⁷⁾

- (최근 경과) 감세정책을 담은 ‘2022년 성장계획’⁴⁸⁾이 발표(9월 23일)된 후 금융시장 혼란(국채 금리 급등,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⁴⁹⁾되자 영국 정부는 일부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
 -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안(45→40%)을 철회(10월 3일)
 - 트러스 전 총리, 법인세율 인상(19→25%, 2023년

4월) 취소안에 대한 철회 의사 발표(10월 14일)

- (주요 내용) 10월 17일,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경제 안정을 보장하고 재정규율 관련 정부 약속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2년 성장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중기재정계획 발표 예정일보다 앞당겨 발표
 - (감세정책 추가 철회) 10월 17일, 정부가 ‘성장계획’에 담긴 다수의 조세정책을 추가 철회함에 따라 앞서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 유지, 소득세 최고세율 유지까지 고려 시 조세정책 변경을 통해 연간 약 320억파운드를 확보할 전망
 -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20→19%, 2023년 4월)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득세율 인가가 가능해질 때까지 현행 20%의 세율을 유지
 - 배당세율 1.25%p 인상 취소 계획을 철회
 - 2017년 및 2021년의 IR35⁵⁰⁾ 규정 개혁을 폐지(2023년 4월)하는 계획을 철회
 - 해외여행객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쇼핑 제도 도입 계획을 철회
 - 당초 2023년 2월부터 1년 동안 시행 예정이던 주세 동결 계획을 철회
 - 다만 ‘성장계획’에서 발표한 국가보험기여금 기여율 인상 중단 및 의료 및 사회적 돌

47) HM Treasury, “Chancellor brings forward further Medium-Term Fiscal Plan measures,” 2022. 10. 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brings-forward-further-medium-term-fiscal-plan-measures>, 검색일자: 2022. 10. 18.

48)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9월호, 2022. 참고

49) 감세 계획의 여파로 퀴지 콰텡(Kwasi Kwarteng) 전 장관 사퇴 후 제레미 헌트(Jeremy Hunt) 신임 재무장관이 임명(10월 14일)되었고, 리즈 트러스(Liz Truss) 전 총리도 사임함에 따라 리시 수낙(Rishi Sunak) 신임 총리가 취임(10월 25일)

50) 기업-근로자 간 직접 고용이 아닌 중개업체를 통한 서비스(근로) 제공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R35(off-payroll working rules) 규정을 도입.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면 직접 고용과 동일하게 소득세 및 국가보험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2017년, 2021년 개혁 이후 해당 근로자의 IR35 규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책임 주체가 클라이언트인 공공기관과 중대형 민간기업이 되었으나, 개혁 폐지 시 결정·책임 주체가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되어 기업 부담을 절감

<표 13> 주요 조세정책 변경의 영향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법인세율 인상(19%→25%) 취소 결정을 철회	+2.3	+12.4	+16.6	+17.6	+18.7
소득세 기본세율 1%p 인하 계획을 철회	0	+5.3	+5.9	+5.8	+5.9
소득세 최고세율 하향조정 계획을 철회	+2.4	-0.6	+0.8	+2.2	+2.1
배당세율 1.25%p 인상 철회 결정을 취소	0	+1.4	-1.0	+1.1	+0.9
IR35 개혁 폐지 방침을 철회	0	+1.1	+1.4	+1.7	+2.0
부가세 면세 소핑 도입 계획을 철회	0	0	+1.3	+2.0	+2.1
주세 1년 동결 계획을 철회	+0.1	+0.5	+0.6	+0.6	+0.6
합계	+4.7	+20.1	+25.4	+30.9	+32.3

주: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2022 Spring Statement' 추계(2022 성장계획의 조정) 기준) 외의 정책 비용은 '2022년 성장계획'에서 제시
출처: HM Treasury, "Chancellor brings forward further Medium-Term Fiscal Plan measures," 2022. 10. 17.

- 불 부담금 도입 취소, 주택 거래 인지세 감세, 연간 투자 공제 확대, 투자 관련 조세 개혁 등은 계속 추진 예정
-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 검토) 정부는 내년 4월 전까지 제공하는 에너지 요금 부담 지원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고 2023년 4월 이후의 지원 방안에 대해 재무부 주도의 검토에 착수
 - 에너지 가격 보장(Energy Price Guarantee)의 지원 기간을 당초 계획인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에는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추진을 검토
 -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는 신규 방식을 검토하고 기업 지원은 가장 영향을 받는 기업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 효율 제고도 고려
- (경제자문위원회 신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 독립·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Advisory Council)를 운영
 -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가 영국 및 국제 경제 및 금융시장 관련 자문을 수행하며 재무장관, 재무부의 수석 경제 고문도 회의에 참석
 - (향후 일정) 정부는 중기 채무 비율 감축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발표 예정일을 11월 23일에서 10월 31일로 앞당겼으나(10월 10일), 이를 11월 17일로 다시 연기하고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⁵¹⁾ 형식으로 변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10월 26일)
 -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전망 발표일도 11월 17일로 연기
- 영국 재무부, 에너지 요금 부담 지원과 중앙은행 자

51) 가을보고서는 최신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정부의 경제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참고: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news/what-is-the-autumn-statement>, 검색일자: 2022. 10. 27.)



산매입기구 자금 지급을 위한 FY2022-23 중앙정부 특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출(2022. 10. 18.)⁵²⁾

※ '특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은 촉박하게 긴급 추가 지출이 요구되어 통상적인 세출예산 과정을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 허용⁵³⁾

- (규모) FY2022-23 특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본세출예산 대비 약 714억파운드 증액되어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은 9,684억파운드, 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⁵⁴⁾은 7,891억파운드로 편성

(의결(voted) 예산 기준)

- 본세출예산 대비 부처별 지출한도(DEL)⁵⁵⁾는 1억 7,600만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⁵⁶⁾은 711억 7,500만파운드 증가

- (변경 요인) 에너지 요금 부담 지원 패키지와 중앙은행 자산매입기구(Asset Purchase Facility)에 자금 지급을 위해 재무부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세출예산을 증액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가계 '에너지 가격

<표 14> FY2022-23 특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개요(의결 예산 기준)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FY2022-23 현재 계획 (a)	FY2022-23 조정 규모 (b)	FY2022-23 수정 계획 (a)+(b)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	451,270	176	451,446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	360,661	71,175	431,836
총 순예산(Total Net Budget)	811,931	71,351	883,282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	85,124	-	85,124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897,055	71,351	968,406
현금주의 조정(Resource to cash adjustments)	-179,306	-	-179,306
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	717,749	71,351	789,100

출처: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2-23 - 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 2022. 10. 18., Table 1.

52)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2-23 - 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 2022. 10. 1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11612/E02808483_HMT_Out-of-turn_supplementary_estimates_Accessible.pdf, 검색일자: 2022. 10. 19.; Philip Brien, Pete Brook, Matthew Keep, Alex Knight, and Stephen Morffew, "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 relating to HM Treasury and BEIS," House of Commons Library, 2022. 10. 21.,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DP-2022-0169/CDP-2022-0169.pdf>, 검색일자: 2022. 10. 24.

53) 이는 본 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 전년도 봄 발표)에서 확정된 지출 권한을 수정하는 일반적인 추가경정 세출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매년 2월 발표)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편성된다는 차이가 있음

54) 예산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에서 필요한 현금 규모의 합계를 의미

55)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DEL):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56) Annually Managed Expenditure(AME): 사회복지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 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보장(310억파운드 증액) 및 기업 ‘에너지 요금 경감(290억파운드 증액)’ 지원을 위해 자원 AME를 600억파운드(108%) 증액, 북아일랜드 에너지 요금 지원으로 자원 DEL을 1억 7,600만파운드(1%) 증액

- (재무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축소, 국채 보유 관련 자본 손실 등으로 재무부가 중앙은행 자산매입기구에 보전하는 자금 지급을 위해 자본 AME를 111억 7,500만파운드(793.6%) 증액

재정포럼

2022년 11월호 통권 제317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22년 11월 15일 발행 / 제26권 제11호(통권 제31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희망

2020. 05. 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